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87-000026-01

위탁
의료기관용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발간등록번호

11-1790387-000026-01

위탁
의료기관용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지침 안내문

- 본 지침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안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안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민원상담 사례집’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으로 통합 발간하여 시·도 및 보건소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사업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발간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오류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예방접종관리과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침내용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의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7~8399, 이메일: nip01@korea.kr)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세부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2세 이하 아동(2007. 1. 1.이후 출생자) * HPV 백신은 2007~2008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2세 이하 아동(2008. 1. 1.이후 출생자) * HPV 백신은 2008~2009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p. 5																									
지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01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8,520원, DTaP-IPV/Hib 혼합백신은 38,0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8,830원, DTaP-IPV/Hib 혼합백신은 38,440원 	p. 33																									
비용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불가 비용상환 기준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허가기준 이외 사용 시 비용상환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제품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허가범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용상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보령디티에이피 아이피브이 (보령바이오파마)</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후 2,4,6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접종 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테트락심 (사노피)</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후 2,4,6개월 및 4~6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 및 추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 및 추가</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판릭스IPV주 (gsk)</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후 2,4,6개월 및 4~6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 및 추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 및 추가</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기초접종용으로 허가된 백신을 추가접종에 사용한 경우 비용상환 불가, 2020.7.1.접종부터 시행 중</p>	제품명	허가범위	비용상환		보령디티에이피 아이피브이 (보령바이오파마)	-생후 2,4,6개월	기초	○	-기초접종 용	추가	X	테트락심 (사노피)	-생후 2,4,6개월 및 4~6세	기초 및 추가	○	-기초 및 추가			인판릭스IPV주 (gsk)	-생후 2,4,6개월 및 4~6세	기초 및 추가	○	-기초 및 추가			<p style="font-size: 2em;">〈좌동〉</p>	p. 31
제품명	허가범위	비용상환																										
보령디티에이피 아이피브이 (보령바이오파마)	-생후 2,4,6개월	기초	○																									
	-기초접종 용	추가	X																									
테트락심 (사노피)	-생후 2,4,6개월 및 4~6세	기초 및 추가	○																									
	-기초 및 추가																											
인판릭스IPV주 (gsk)	-생후 2,4,6개월 및 4~6세	기초 및 추가	○																									
	-기초 및 추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암치료자의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 기간 - (추가) HPV 사업 대상자가 지원 연도에 항암 치료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지원연도 시작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지원 * 단,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3차시기 접종 지원 ※ 면역저하자는 HPV 백신 3회 접종 필요 	p. 29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실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p. 193												
	<table border="1"> <tr> <td>접종백신</td> <td>2-3차 최소접종간격</td> <td>3-4차 최소접종간격</td> </tr> <tr> <td>IPV¹³⁾</td> <td>4주¹³⁾</td> <td>6개월¹³⁾</td> </tr> </table>	접종백신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IPV ¹³⁾	4주 ¹³⁾	6개월 ¹³⁾	<table border="1"> <tr> <td>접종백신</td> <td>2-3차 최소접종간격</td> <td>3-4차 최소접종간격</td> </tr> <tr> <td>IPV¹³⁾</td> <td>6개월¹³⁾</td> <td>-</td> </tr> </table>	접종백신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IPV ¹³⁾	6개월 ¹³⁾	-
	접종백신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IPV ¹³⁾	4주 ¹³⁾	6개월 ¹³⁾													
접종백신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IPV ¹³⁾	6개월 ¹³⁾	-													
<p>⑬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할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6개월 이상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p>	<p>⑬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2차와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p> <p>* 주석 설명 보완 및 최소접종간격 표기 수정</p> <p>** 위 기준은 신규 추가나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p>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2세 여성 청소년 (2007. 1. 1. ~ 2008. 12. 31. 출생자) * 2007년생의 경우 2020.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접종 지원 가능 - 2차 접종 지원 기간(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 1차 접종 완료일 기준 2005년생은 2018년까지, 2006년생은 2019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시기 접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2세 여성 청소년 (2008. 1. 1. ~ 2009. 12. 31. 출생자) * 2008년생의 경우 2021.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접종 지원 가능 - 2차 접종 지원 기간(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 1차 접종 완료일 기준 2006년생은 2019년까지, 2007년생은 2020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시기접종 지원 	p. 41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2세 이하 아동(2007.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해당아 임신 중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2세 이하 아동(2008.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해당아 임신 중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p. 63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예방치치일정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예방치치일정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 2021년부터 다국어(12개 언어) 문자서비스 시행 	p. 71

4.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어르신(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용하며, 65세 이상에서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어르신(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용하며, 65세 이상에서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p. 81
접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2020. 6. 22.부터 민간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p. 81
계약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작성(서면계약서, 참여확인증, 통장사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작성(위탁계약서, 참여확인증, 통장사본 등) ※ 2021.3.2. 이후 가능 	p. 83
교육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교육 ※ 2021.3.2. 이후 온라인교육 운영 	p. 83

국가예방접종 용어



- 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 IR(Immunization Registry): 예방접종 전산등록
- VIS(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예방접종안내문
- HBIG(Hepatitis B Immunoglobulin):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대상 감염병	두문자어	백신명
결핵	BCG(피내용)	Intradermal Bacille Calmette-Guérin vaccine
B형간염	HepB	Hepatitis B vaccine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Td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dsorbed
	Tdap	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and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폴리오	IPV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conjugated vaccine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and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conjugated vaccine
폐렴구균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수두	VAR	Varicella vaccine
A형간염	HepA	Hepatitis A vaccine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Inactiv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LJEV(약독화 생백신)	Live-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인플루엔자	IIV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목 차

I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3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표 및 전략	4
3) 사업 내용	5
4) 기관별 역할	7
5)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8
<hr/>	
2. 사업관리체계	13
1) 사업 추진 체계	13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13
3) 비용상환 체계	14
<hr/>	
3.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16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16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17
3) 예방접종 시행	19
4)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27
5)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28
6)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34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35
8)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35
9) 귀국 자녀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36

II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1. 사업 개요	39
2. 법적 근거	39
3. 사업 추진실적	40
4. 사업 내용	41
5. 사업 참여 방법	45
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	47
7. 비용상환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52
8. HPV 예방접종 기록 등록	55
9. 백신 공급 및 관리	55
10. 위탁의료기관 점검	57

III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 사업 개요	61
2. 법적 근거	62
3. 사업 추진실적	62
4. 사업 목표	63
5. 사업 내용	63
6. 사업 참여 방법	66
7. 예방처치 일정	68
8. 비용상환 기준	72
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전산등록	73
10. 위탁의료기관 점검	76

IV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1. 사업 개요	79
2. 사업 추진실적	80
3. 사업 목표	80
4. 사업 내용	81
5. 기관별 역할	82
6. 사업 참여 방법	83
7. PPSV23 백신 공급 관리	85
8.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86
9. 예방접종 시행	87
10.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88
1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91
12. 위탁의료기관 점검	91

[별첨자료]

I 주요서식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95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97
〈별첨 I-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98
〈별첨 I-4〉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99
〈별첨 I-5〉 예방접종 예진표	100
〈별첨 I-6〉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101
〈별첨 I-7〉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102
〈별첨 I-8〉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102
〈별첨 I-9〉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	103
〈별첨 I-10〉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104
〈별첨 I-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5
〈별첨 I-12〉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확인증	106
〈별첨 I-13〉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107
〈별첨 I-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08
〈별첨 I-15〉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114
〈별첨 I-16〉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의료기관)	114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방법	117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23
3.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5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7
5.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41
6.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46

Ⅲ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 아나필락시스 정의	151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51

[부록]

I 관련 법령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57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160
3.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167

Ⅱ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1.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171
2.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171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172
4. 백신 보관 및 취급 계획 수립	174
5.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175
6. 백신 보관 온도 관리	177
7. 백신 보관 장비에서의 백신 배치 및 표시	179
8. 백신 보관 시 점검 사항	181
9. 백신 보관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	182
10.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183
11. 백신의 폐기	183
12. 백신 보관 시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치	184
13. 기타	185

III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2021)	189
2. 백신 접종법	190
3. 각 백신간의 최소 접종간격	192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193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194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195
7.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197
8.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198
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별 허가내용	199
10.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200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201
1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202
13.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020. 10. 기준)	203
14.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206

IV 민원상담 사례집

1. 국가예방접종사업	209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41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248
4. 이상반응 관리	251

I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3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표 및 전략	4
3) 사업 내용	5
4) 기관별 역할	7
5)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8
2. 사업관리체계	13
1) 사업 추진 체계	13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13
3) 비용상환 체계	14
3.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16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16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17
3) 예방접종 시행	19
4)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27
5)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28
6)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34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35
8)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35
9) 귀국 자녀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36

1 사업 개요

0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과거 예방접종비용이 보건소 이용자에게 한정적으로 지원되어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용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 예방접종 장애요인은 높은 예방접종비용(83%), 의료기관과의 거리(28%), 예방접종횟수, 시기에 대한 지식부족(26%)임(예방접종인식조사, 2008. 7월)
- ▶ 이에,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까지 확대 지원함

● 추진경과

- ▶ 시범사업 실시(2005~2006년)
 - 2005년 민간의료기관 필수접종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7~12월, 대구, 군포)
 - 2006년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실시(1~12월, 강릉, 연기, 양산)
- ▶ 근거 법령 제·개정(2006~2007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12. 29.) 개정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2007. 10.)
- ▶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사업 실시
 - (지원비용) 백신비(2009. 3월) → 백신비 및 시행비 일부(2012년) → 예방접종비용 전액(2014년)
 - ※ 2012년 본인부담금 5,000원 → 2014년 본인부담금 폐지(전액 무료접종)
 - (지원항목) 8종*(09. 3. 1.) → 9종(11. 10. 6. DTaP-IPV 추가) → 10종(12. 1. 1. Tdap 추가) → 11종(13. 3. 1. Hib 추가) → 13종(14. 2. 14.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5. 1. 폐렴구균 추가) → 14종(15. 5. 1. A형간염 추가) → 16종(16. 6. 20. HPV, 10. 4. 인플루엔자 추가) → 17종(17. 6. 19. DTaP-IPV/Hib 추가)
 - * 8종: BCG(결핵, 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VAR(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02 사업 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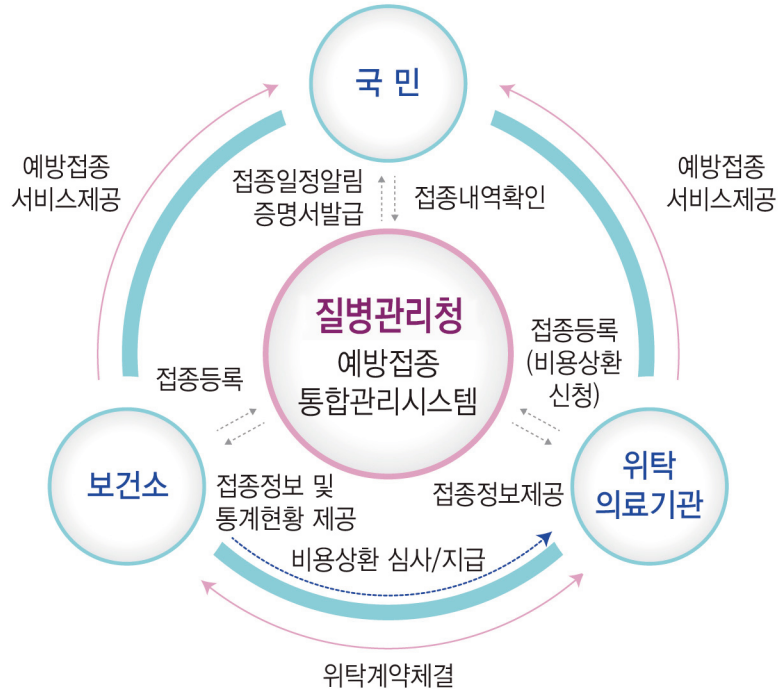
- **목표: 예방접종을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 **전략 1. 공공기능 강화**
 - ▶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강화
 -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 ▶ 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
- **전략 2. 대국민 서비스 강화**
 - ▶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보호자에게 자녀의 다음접종 및 누락접종 안내 서비스 제공
 - ※ 문자서비스는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 수신 동의한 경우 제공함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등을 통해 올바른 전문정보 제공
 - ▶ 예방접종내역 조회 및 예방접종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국·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무료발급서비스 제공
- **전략 3. 예방접종 인프라 강화**
 - ▶ 예방접종 관련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행정안전부(주민정보):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자 정보 공유
 - 교육부(학생정보): 초·중학교 입학생의 인적정보 및 접종정보 공유
 - 보건복지부(보육시설 아동정보 등): 어린이집 입소자의 인적정보 및 접종정보 공유, 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장애아동의 정보 공유
 - 건강보험공단(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접종정보 공유
 -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의 과거접종정보 공유

03 사업 내용

- ▶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8. 1. 1. 이후 출생자)
 - 사업대상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적용 원칙
 - ※ 단,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지원
 - ※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로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변경
 -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은 연령, 신규 도입된 백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 연령을 제한
 - BCG(피내용)는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Hib, 폐렴구균: 건강한 소아의 경우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만 5세 이상에서도 지원)
 -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참조
 - A형간염: 2012. 1. 1. 이후 출생자
 - HPV: 2008~2009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조(p37)
 -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만 12세
 - * 기타 세부사항은 '2021-2022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등을 지원하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 지원내용: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 ▶ 지원백신: 17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IV)

▶ 사업체계





04 기관별 역할

구분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	위탁의료기관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사업 관리지침 개발 · 사업효과 평가 및 정보 환류 · 미접종자 관리방안 마련 · 예방접종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운영 ·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시·군·구 예방접종 계획 점검 및 지원 · 시·도 의사회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시·군·구 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미접종자 관리 방안 마련 · 예방접종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 지역주민 대상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지역 의사회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사업 시행 · 지역사회 미접종자 관리 · 예방접종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관리 · 관내 지역주민 대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 기본/보수 교육 이수
예방 접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 · 접종률 분석 등 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사전알림 · 비용상환 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현황 모니터링 · 관내 지역주민 대상 홍보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분석 · 시·군·구 비용상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실시기준 숙지 · 예방접종실시 · 접종기록 등록·관리 · 접종 현황 모니터링 · 관내 육아보육시설 및 학교 대상 예방접종사업 홍보 · 예방접종 사전알림 실시 ·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접종환경 구비 · 예방접종 실시기준 숙지 · 예방접종실시 전 과거력 확인 후 접종 시행 · 예방접종실시 · 접종기록 등록·관리 · 예방접종 사전알림 관리 · 접종 비용상환 신청
백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수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수급 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구매 및 수급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관리 철저
위탁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할 위탁의료기관 현황 모니터링 · 위탁의료기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 실시 · 위탁의료기관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체결 · 자율점검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 업무협조체계 유지
예방 접종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지원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반응 발생 보고 ·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 · 예방접종 피해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 · 시·군·구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기초조사)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
개인 정보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05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91호, 2020. 10. 13. 일부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9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 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 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 필수예방접종 다음접종 사전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예방접종기록 보고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성명
 -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예방접종 명칭
 - 나. 예방접종 차수
 - 다. 예방접종 연월일
 -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 마. 예진 의사 및 접종 의사의 성명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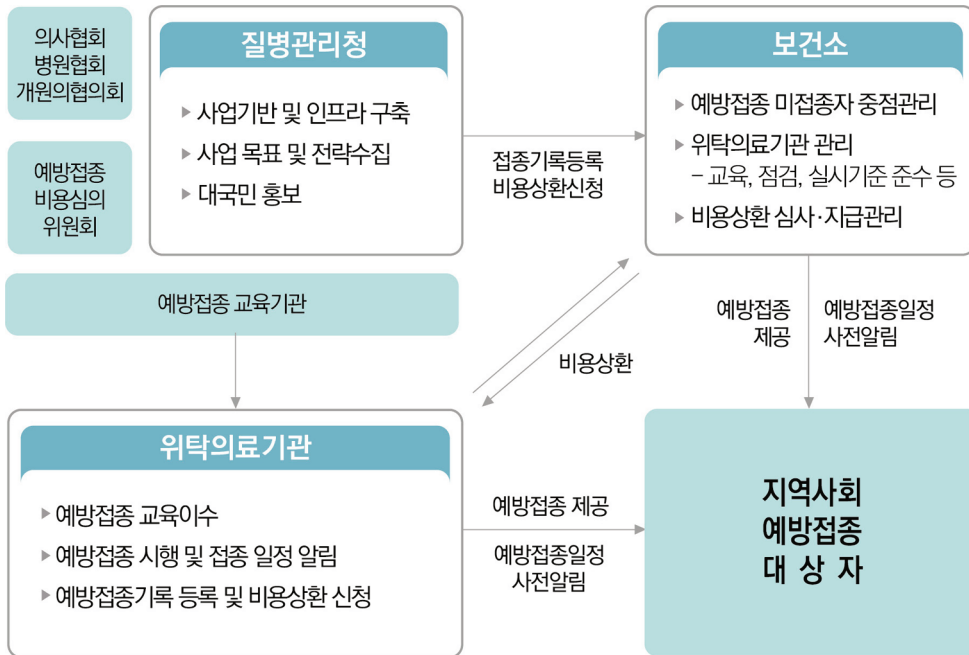
- ▶ 예방접종 실시 장소, 접종 의료인 숙지내용,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
-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 ▶ 예방접종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 예방접종비용 심의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관리체계

01 사업 추진 체계



02 위탁계약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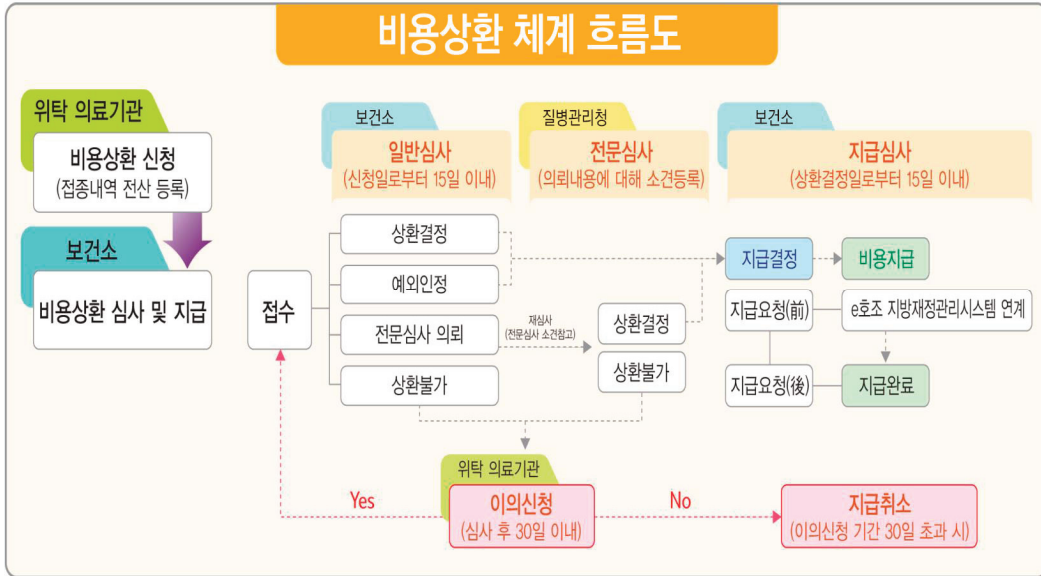
1. 예방접종 교육 이수(의료기관)

 - 사업 참여 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을 통해 기본교육과정 이수
 - ※ 위탁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계약체결(보건소, 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보건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날인하여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보건소에서 교부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수령 및 비치
3. 위탁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위탁의료기관 공고

03 비용상환 체계



- ▶ (지자체)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상환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비용 지급 심사(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심사) 후 비용지급
- ▶ (위탁의료기관) 피접종자 본인 여부, 과거 접종력 등을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내역은 가급적 당일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 전산 조회시 과거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¹⁾ 반드시 보호자로부터 접종력 및 이중인적(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관리번호) 여부 확인 후 권장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
 - 1) 접종력 전체 또는 대부분 미확인인 경우 이중인적 사례가 간혹 있음, 이중인적 여부 또는 과거 접종력 미확인 등으로 불필요한 접종 시행 시 비용상환이 제한될 수 있음
 - ※ 등록된 접종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비용상환 신청이 안되므로 정확하게 등록
 - ※ 출생신고 전 신생아는 출생신고 이후 접종기록 통합 및 신속한 비용 상환업무를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
 - ※ 보호자는 모(母)의 인적정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호자를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참조하여 보호자 본인확인 필요
 - ※ 1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보건소에서 발급)로 접종기록 등록
 - ※ B형간염 2차 또는 BCG 접종 시 B형간염 1차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차 접종 완료여부 반드시 확인(보호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인적정보 통합 관리



- ▶ (보건소) 신청내역 접수 및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비용지급
 - 예방접종 실시기준, 비용상환 기준을 참조하여 상환신청내역의 지급 심사
 - ※ 보건소 심사결과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정기적으로 심사결과의 적정성 점검 실시
 - 보건소에서 지급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전문심사 의뢰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심사 및 비용지급 실시
 - ※ 접종기록 및 상환심사내역은 신청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전송됨(약 1일 소요)
 - 출생신고 전 신생아 임시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로 등록된 접종내역은 주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환 관리 후 지급처리
 - 의료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심사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이 가능하며, 일반심사(당초 심사)를 시행한 보건소에서 이의심사 시행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예방접종비용지급 별도 관리

▶ 비용상환 업무처리 기한

구분	내용	처리 기한	처리 기관	법적근거
비용 상환	신청	비용상환 신청기한(접종 후 30일 이내) 폐지(2015년) 단,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접종 당일에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 등록한 기관에 비용지급 ※ 접종 전 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과거 접종력 반드시 확인	의료 기관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신생아 제외) ※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완 자료 제출에 소요된 기간 (10일)은 제외됨	보건소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제8조(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비용 지급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보건소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 기관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 법적근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3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01 예방접종 교육 이수

○ 예방접종 교육 이수

- ▶ (교육과정) 위탁계약 체결 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계약을 위해서는 매 2년 마다 보수교육과정 이수가 반드시 필요
- ▶ (교육대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재계약하고자 하는 기존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
 - ※ 의료기관의 모든 예방접종 시행 의사는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업무 관계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 교육내용
 - (기본교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백신의 보관과 취급,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 (보수교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변경사항,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처법, 백신의 보관과 취급,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 교육 이수 방법

- ▶ (교육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관리 User(학습자)’ 신청. 이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 로그인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선택 후 온라인(e-learning) 교육 신청
 - ※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추가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과정 이수 필요
 - 보수교육 과정명: [보수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 ※ 각 과정은 2021. 3. 2. ~ 2022. 2. 28.까지 운영되므로 학습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 필요
- ▶ (수료증 출력) 교육시스템의 ‘수료증출력 → 수강종료과정’에서 수료 확인 및 수료증 출력

0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신규계약 체결)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 체결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 국가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 예방접종 기본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 위탁계약 체결 전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예방접종 시행 의사는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 교육과정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최근 2년 이내 수료한 기본교육과정을 인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국가예방접종사업용 통장 사본 필요
 -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은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표기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서류는 p45 참조
- ▶ 기존 계약된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관할 보건소 등)가 변경된 경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체결
 - ※ 관할 보건소는 동일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정보에서 주소지 수정
 - ※ 의료기관 폐업 시 폐업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 참여 백신 구비
 -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모든 백신에 대해 참여함
 - ※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는 백신 중 일부 백신만 선택적으로 참여 불가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백신 표기
 - ※ 참여백신만 비용상환 되며, 의료기관별 참여백신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일반인에게 안내되므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실시간 현행화 필요
 - 의료기관은 제출한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에 표기된 백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함. 참여백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
 -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현행화 누락 시 비용상환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 계약된 참여백신 구비 여부, 백신 보관 관리, 유효기간 경과백신 처리 등 관리 철저

-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게시(별첨 I-2 서식 참조)
 - 관할 보건소에서 교부한 지정서는 의료기관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재계약(계약 갱신)

- ▶ 위탁계약기간(5년)이 만료시점 1개월 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후 재계약 체결
 - ※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기 도래 1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으로 안내
 -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비용신청 불가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 갱신 후 비용신청 가능

○ 계약 해지

- ▶ 위탁의료기관에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해지 신청서(별첨 I-11)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
 - 서면으로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
 - 전자로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로 계약해지 신청
 - ※ 계약해지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예정

- ▶ 위탁의료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자동 폐업 처리되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소멸
 - ※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 완료
 - ※ 폐업 이후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기록 추가 비용청구 불가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 해지 가능

03 예방접종 시행

예방접종 절차

• 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 전 보호자에게 예진표 작성 안내(예진표 보관 기간 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과거 접종내역 확인(접종내역 조회 동의 확인)

접종대상자 예진 및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동의 확인

예진 결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및 다음 예방접종일정 안내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관

- ▶ 예방접종 예진표(별첨 I-5)를 비치하고, 예방접종 전 보호자에게 작성 안내 후 보관
 - ※ 예방접종 예진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5년)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접종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예방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정확한 접종을 위해 접종 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후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과거 접종내역을 반드시 확인

- ※ 생후 1개월 이내 접종(B형간염 1차, BCG)이 전산등록 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 전 신생아번호로 접종 가능하므로 신생아번호(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종내역을 확인함
- ※ 전산등록 되지 않았으나, 보호자를 통해 접종을 확인한 경우 접종기관(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본인 확인

- 신생아의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인적) 및 보호자(모(母) 원칙)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
- 모(母)의 인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모(母)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 한하여, 기타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정보 확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후 등록
 -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예방접종기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호자 인적정보 필요
 - ※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보건소에서 발급)'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확인
 -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보건소 방문 안내
 - ※ 임시관리번호 발급은 접종 대상자의 보건소 방문이 원칙(유선발급 불가)

○ 예방접종 실시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접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유의사항]

-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 준수**
 -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접종함(p192 참조)
 - 5일 이상 이르면접종은 무효이며, 해당 접종이후 다음접종과의 접종간격 확인 후 재접종
- **약독화 생백신간 접종간격 준수**
 - 수두, MMR,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간 동시 접종이 가능하나 각 약독화 생백신을 따로 접종할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 준수(4일 이하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
- **권장하지 않는 교차접종 지양**
 - 1. 우발적인 교차접종의 경우 접종력은 인정되는 접종(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 DTaP, DTaP-IPV 기초접종의 교차접종(기초 3회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
 - PCV10 및 PCV13 백신의 교차접종
 - HPV2, HPV4, HPV9 백신의 교차접종
 - 2. 교차접종 시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접종**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 **권장하는 접종 연령 준수**
 - 1. DTaP 백신은 만 7세 미만에서 접종, DTaP 백신 접종을 미완료한 만 7세 이상에서는 Tdap 백신으로 접종**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연령에서 Tdap 백신으로 접종(만 11~12세 추가 접종 시 Tdap 백신 접종 가능)
 - * 2018. 10. 1.부터 Tdap 백신 변경된 실시기준 적용
- **불필요한 추가접종 지양(지연접종시 추가접종 생략)**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IPV: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 단,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 필요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후 만 12세에 접종
 -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Hib: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다르므로 주의
 - Hib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 접종	추가 접종
PRP-T 또는 HbOC	생후 2~ 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14개월	1회	2개월 후 1회
	생후 15~59개월	1회	-



• Hib 지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접종 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생후 12개월 미만 1차 접종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만 필요
	8주(마지막 접종): 생후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에 하고 2차 접종을 생후 15개월 미만에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후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전 접종을 생후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 PCV: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다르므로 주의

•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접종 연령	기초 접종	추가 접종
PCV10	생후 2~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59개월	2회	-
PCV13	생후 2~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개월	2회	-
	생후 24~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개월(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	2회	-

• PCV 지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접종 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생후 12개월 미만 1차 접종한 경우	4주: 현재 생후 12개월 미만이며 이전 접종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 또는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 받은 고위험군
	8주(마지막 접종): 건강한 소아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1차 접종을 PCV13으로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단, PCV10으로 접종한 경우 8주 간격으로 접종(마지막 접종))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

백신	이식 후 첫 접종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횟수	최소접종간격	
불활성화 백신				
B형간염 ¹⁾	6~12개월	3	(0, 1, 6개월)	-
DTaP/Tdap/Td ²⁾	6개월	3	4주	-
폴리오	6~12개월	3	4주	-
폐렴구균 ³⁾	(3)~6개월	3	4주	이식 후 12개월
Hib	6~12개월	3	4주	-
인플루엔자 ⁴⁾	(4)~6개월	1	-	매년
A형간염	6~12개월	2	6개월	-
일본뇌염 ⁵⁾	6~12개월	2	4주	두 번째 접종 후 6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⁶⁾	6~12개월	3	(0, 1, 6개월-HPV 2가; 0, 2, 6개월-HPV 4가)	-
약독화 생백신				
MMR ⁷⁾	24개월	2	4주	-
수두 ⁸⁾	24개월	13세 미만: 1 13세 이상: 2	13세 미만: - 13세 이상: 4주	-

¹⁾B형간염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0, 1, 6개월 일정으로 접종한다.

²⁾나이에 관계없이 DTaP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1회 접종 후 Td 2회 접종(0, 1, 6개월)으로도 가능하다.

³⁾폐렴구균에 대한 기초접종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하며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3개월 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폐렴구균 다당백신으로 접종하되 이식면대속주병이 있으면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한다.

⁴⁾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을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 4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1회 더 접종하여야 한다. 이식 후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받는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는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매년 접종하여야 한다.

⁵⁾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6~12개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되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기초접종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 3차 접종한다. 이후의 추가접종은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일반적인 접종 일정을 따른다.

⁶⁾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6~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11~26세의 여성에게 0, 1, 6개월(HPV 2가) 또는 0, 2, 6개월(HPV 4가)의 일정으로 접종한다.

⁷⁾MMR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하여야 하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추천한다.

⁸⁾수두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한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p24 참조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대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별첨II 참조)
 - 자체 전산시스템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기록 등록 (가급적 당일 접종기록 등록 권장)
- ▶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준수
 - 접종기록은 순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지연접종으로 다음차수가 생략된 경우라도 생략된 차수 칸을 비우지 않고 순차적으로 등록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및 유의사항]

- DTaP-IPV, DTaP-IPV/Hib 혼합백신
 - DTaP-IPV 4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한 경우 'DTaP-IPV 1~3차'에 등록
 - DTaP-IPV/Hib 5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한 경우 'DTaP-IPV/Hib 1~3차'에 등록
 - ※ DTaP-IPV, DTaP-IPV/Hib 혼합백신과 DTaP, IPV 단독백신을 중복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
 - ※ DTaP 4차시기는 단독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에 등록
 - ※ DTaP 기초 접종은 동일제조사인 백신으로 접종
 - DTaP 4차, IPV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만 4~6세 아동이 DTaP-IPV 혼합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한 경우 'DTaP-IPV 추가(4차)'에 등록
 - ※ DTaP-IPV 추가(4차) 접종 전 DTaP 4차 단독백신 접종력 확인
 - ※ DTaP-IPV 추가(4차) 접종은 DTaP 5차, IPV 4차 접종과 동일
- Td/Tdap 백신
 - DTaP 5차까지 완료한 이후 만 11~12세 Tdap(또는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Tdap 6차(Td 6차)'에 등록
 - DTaP 4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하여 5차가 생략되고 만 11~12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Tdap 6차(또는 Td 6차)'에 등록
 - DTaP 5차를 만 6세까지 접종하지 않아 만 7세에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Td(그 외) 1차'에 등록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Tdap 6차'에 등록 (만 11~12세 추가접종 시 Tdap 백신 사용 가능하며 이때 'Tdap 6차'에 중복 등록)
 - DTaP 기초접종을 하지 않고 만 7세 이상에서 Td 백신으로 기초 3회 접종(1차는 Tdap 접종 권고)한 경우 'Tdap 접종은 Tdap 6차'에 등록하고, 'Td 접종은 Td(그외) 1,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
 - ※ Td 3회 기초접종 시 1~2차는 4주, 2~3차는 6개월의 접종간격을 준수

- Hib, PCV 백신
 -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회수가 달라지더라도 1차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 MMR 백신
 - 홍역 유행으로 생후 6~11개월 영아에게 접종한 경우 'MMR 1차'에 등록(의학적 소견 등록)
 - 생후 12개월 이전 1차 접종하고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접종한 경우 'MMR 1차'에 중복등록(의학적 소견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선택·입력)
 - 일본뇌염 백신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9세에 실시(4차 접종 생략)하고 만 12세에 접종한 경우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에 등록
 -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에 등록
- ※ 이후 접종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완료하고 등록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및 예방접종 안내문 제공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 귀가 후 3시간 이상(최소 3일) 자녀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고열과 경련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며, 접종 당일과 다음 날에는 과격한 신체활동 금지

▶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 예방접종 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내려 받도록 안내한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안내문' 검색) 다운로드

04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 ▶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 안내 개요
 - 내용: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하고,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누락접종을 알리는 서비스
 - 필수예방접종 종류: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
 - 사전알림 주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
-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절차
 - 보호자가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고, 접종기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서비스 제공
 - 보호자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한 경우 예약일 2일 전에 접종기관명의로 문자 발송
 - 다음접종일자를 사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른 접종시기 시작일에 시·군·구청장 명의로 문자 발송
 - ※ 지자체장 명의로 발송 시 발신자번호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번호로 발송됨
 - 다국어* 다음접종 사전알림 안내 서비스(2016. 7. 시행)를 희망할 경우 접종기관에서 휴대전화번호 및 희망언어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
 - * 다국어 제공(12종): 네덜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주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 사전알림 공고
 - 지자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 공고를 통해 사전알림 공고
 -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필수예방접종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지연접종 안내
 - 2013년 출생아부터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록 및 문자수신 동의자에게 질병관리청명(예방접종관리과 전화번호)으로 문자 발송

05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 주민등록 발급자의 비용상환 기준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8. 1. 1. 이후 출생자)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용 지원
 -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실제 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수정(의료기관은 생년월일 수정 불가)
- 백신별 지원대상자
 - BCG(피내용)는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검사 음성인 경우)
 - * BCG 피내용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실제 사용한 백신 수량에 대해서만 백신을 공급하므로 백신 개봉 후 첫 접종에 대해서만 백신 청구, 비용상환 기준 미준수 시 환수될 수 있음을 주의 (예) 1vial 개봉 후 5명 접종 시 **백신은 최초 접종 건만 비용상환 인정**(시행비는 접종 건당 지급)
 - Hib, 폐렴구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고위험군 소아는 만 5세 이상에서도 지원)
 - A형간염은 2012. 1. 1. 이후 출생아 지원
 - B형간염의 경우 만 10세 이하는 0.5ml, 만 11세 이상은 1.0ml 백신비 지원
 - * 출생 체중 2kg 미만 미숙아(산모의 HBsAg 음성)의 경우 1차 접종은 생후 1개월이나 생후 1개월 이전이라도 의학적으로 안정되고 체중 증가가 잘 이루어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실시하도록 하며, 의학적 소견 입력창에 주치의의 소견을 기입하도록 함(타 접종기관에서 이전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여 1차 중복접종 방지)
 - 일본뇌염 벡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만 3세 미만은 0.4ml(0.25ml 접종), 만 3세 이상은 0.7ml(0.5ml 접종) 백신 사용 시 비용지원
 - HPV는 2008~2009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조(p37)
 -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 ~ 만 12세 지원
 - * 기타 세부내용은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비용지원 기간 예외적용

-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 **조혈모세포 이식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지원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접종은 만 12세까지 지원. 다만, 만 11~12세 사업대상자가 지원기간 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다시 시작하는 접종일정 완료를 위하여 조혈모세포 이식 후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로 지원기간 연장 적용
 - (예) 2008년생 대상자가 2021. 2. 1.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2024. 1. 31.까지 지원
 - (예) 2012년생 대상자가 2021년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는 만 12세까지 지원
- 항암치료 대상자: HPV 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지원 연도에 항암치료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지원연도 시작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지원
 - (예) 2008년생 대상자가 2021. 2. 1. 항암치료 받은 경우 2022. 12. 31.까지 지원
 - 2008년생의 HPV 1차 접종 지원 시작 연도는 2020. 1. 1.부터이므로 이 시기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 기한 적용. 단, 2차 접종을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완료한 경우 3차시기(지원 연도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접종 지원
 - * 면역저하자의 경우 HPV 백신 3회 접종이 필요(건강상담은 1, 3차 접종 시에만 시행)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비용상환 기준

- 신생아의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인적)와 함께 보호자(모(母) 원칙)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 모(母)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 된 기타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생성) 이후, 출생신고 전 접종정보를 통합하여야 비용청구 접수(지급)됨. 단, 3개월 이상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보건소에서 출생신고 지연사유 확인 후 비용 지급 처리
 -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예방접종기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호자 인적정보 필요
- 신생아 비용상환 신청가능 접종(출생 후 1개월 이내): B형간염 1차, BCG
 - ※ 생후 1개월 이내 전산 등록 시 비용청구 가능

◆ B형간염 1차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 시 주의사항

- ▶ B형간염 1차 접종은 대부분 신생아 임시번호(생년월일 및 성별)로 등록되므로, 2차 접종 시 1차 접종이 미등록된 경우 반드시 피접종자의 보호자 인적정보로 비용상환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비용상환 기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보건소로 안내, 피접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 ※ 여권 등으로 대상자 확인 필요, 여권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의 여권 등을 지참하도록 안내

○ **비용상환 신청**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내역 등록시 비용상환 신청(별첨II 참조)
 - 예방접종기록 등록 시 자동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이 ‘비용상환 신청비용’ 생성되므로 신청금액 확인 후 등록
 -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비용신청 불가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 갱신 후 비용신청 가능

○ **비용상환 신청 결과 조회**

- ▶ 비용상환은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심사함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등록
 - ※ 등록된 접종정보가 불완전할 경우(백신정보 누락 등) 비용상환 신청이 안되므로 정확하게 등록
- ▶ 비용상환 심사결과는 ‘상환결정’, ‘예외인정’, ‘상환불가’, ‘전문심사의뢰’, ‘인증오류’로 분류

심사결과	세 부 내 용
상환결정	사업 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완료시 심사결과에 ‘지급완료’로 표시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지연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상환불가	- 중복접종,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또는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지연접종으로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일본뇌염 교차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예외인정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등
전문심사의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전문심사를 의뢰한 접종
인증오류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접종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불가 ※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정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심사불가



- (상환불가) '상환불가 사유'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가능
- (예외인정)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중복접종 또는 이른접종 등 비용상환이 가능한 접종으로 반드시 의학적소견 등록 필요
 - ※ 예외인정 접종의 전산등록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의학적소견/기타 사유'의 '사유입력' 버튼 클릭 후 대분류/소분류 항목을 선택하여 등록
 - * 직접 작성한 기타 사유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심사하므로 주의 필요

1) 상환불가 접종

- ▶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2009. 3.~)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된 자료 기준으로 중복접종인 경우
 - ※ 중복접종이 등록된 경우 접종일 칸이 노란색으로 표시됨. 만약, 이전 접종차수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이전 접종력 확인(차수 등록오류, 유효여부 등) 필요
- ▶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이른접종(2012. 7.~)
 - ※ 이른접종 여부는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함.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출생증명서류 확인 후 보건소에서 변경
- ▶ 최소접종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이른접종(2013. 10.~)
 - ※ 이른접종은 무효접종으로,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재접종 필요(비용상환 가능)
 - ※ (예외) 4일 이하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
 -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간 1, 2차 최소접종간격 7일
 - ② 서로 다른 약독화 생백신간 최소접종간격 4주(MMR ↔ 수두, MMR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등)
- ▶ 불필요한 추가접종(2014. 8.~)
 - 자연접종으로 다음접종이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2014. 8.~),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2015. 5. 1. ~ 2017. 1. 31.)
- ▶ DTaP 1~5차 완료자(5차 생략자 포함)가 만 7~10세에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2020. 1. 1.~)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허가기준 이외 사용 시 비용상환 불가

구분	제품명	용법·용량	허가범위	비용상환	상환불가 시행일
DTaP-IPV	보령디테이피아이피브이 (보령바이오파마)	기초: 1회 용량 0.5ml씩 생후 2,4,6개월에 3회	기초접종	기초 ○ 추가 X	2020. 7. 1.
	테트라심 (사노피파스퇴르)	- 기초: 1회 용량 0.5ml씩 생후 2,4,6개월에 3회 - 추가: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접종	기초 및 추가 ○	-
	인판릭시PV주 (gsk)	- 기초: 1회 용량 0.5ml씩 생후 2,4,6개월에 3회 - 추가: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접종	기초 및 추가 ○	-

※ 기초접종용으로 허가된 백신을 추가접종에 사용한 경우 비용상환 불가, 2020.7.1. 접종부터 시행 중

2) 의학적조건이 타당하여 예외 인정된 접종의 비용상환 신청

- 의학적조건 입력창에서 의학적 조건 대분류/소분류 항목을 선택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통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이전 접종 최소접종연령 미준수 · 이전 접종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자	-
	· 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	· 상세사유작성	-
B형간염	· 2.0Kg 미만, 미숙아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 · HBsAg 상태를 알 수 없는 산모	· 출생체중
	· 고위험군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의 출생아 ·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의 가족 · 혈액제제 수혈 환자 · 혈액 투석 환자	-
DTaP	· 권장접종연령을 미준수한 우발적 접종(유효접종에 해당되는 경우)	예) 만 7세 이상에서 DTaP 접종 시	-
Tdap 6차	· DTaP 기초접종 1~3차 미완료자	예) 만 7~10세 Tdap 백신으로 기초 접종 시	-
	· DTaP 추가접종 미완료자 (단, 접종지연으로 5차 접종 생략자 제외)	예) 추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10세 연령에서 접종 시	-
	· 만 11~12세 추가접종	예)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Tdap 백신 접종 후 만 11~12세 추가 접종 시 선택	-
일본뇌염	·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	-	-
Hib	· 고위험군 접종	· 상세사유작성	-
폐렴구균	· 고위험군 접종	· 상세사유작성	-
MMR	·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 홍역 확진 환자 접촉자 (국내 유행상황 시, 확진자 명단확인) ·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 (국내 유행상황 시) · 홍역 유행 국외지역 여행 (출국일, 국가명 등 기재)	-

※ 직접 작성한 기타 사유의 경우 의학적 조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심사 실시

- (전문심사의뢰) 피접종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보건소에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에 전문심사 의뢰 및 회신결과에 따라 상환여부 결정
- (인증요류)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로,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확인할 수 없어 비용상환 신청내역 접수 및 심사 불가
 - ※ 오류 정보는 정확한 인적정보 확인 및 수정 필요하며, 정보 수정 시 접수 가능

○ 비용지급 결과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 메뉴에서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가 지급한 비용 확인 가능(p129 참조)
 - 지급된 비용에 대해 기간별, 접종내역별, 보건소별로 검색가능

○ 예방접종비용

-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대한민국 전자관보,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25,590
B형간염	HepB	0.5mℓ	3,000
		1.0mℓ	5,2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10,190
	Td		12,680
	Tdap		20,090
폴리오	IPV		10,2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9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1,92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7,44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1,510
	PCV(단백결합) 10		52,950
	PPSV(다당질)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수두	VAR		13,020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유래0.4mℓ	11,450
		베로세포유래0.7mℓ	17,790
	IJEV(약독화 생백신)		11,520
A형간염	HepA		15,11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550
	HPV 4		63,280
인플루엔자	IIV 4	만 12세 이하 어린이	10,410
		만 13~18세	9,870

* 2020. 9. 14. 공고가 기준이며, 2021년 보건소 백신의 조달 계약이후 변경 예정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2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28,8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 백신비 등 변경사항은 인터넷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전자관보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cda.go.kr>) ‘공고/공시’에서 확인 가능

06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 ▶ (점검주기) 상·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연 2회 반드시 실시 및 전산등록
 - 상반기: 2021. 1. 1. ~ 2021. 6. 30.
 - 하반기: 2021. 7. 1. ~ 2021. 12. 31.
 - ※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점검 및 보고를 해야 함
- ▶ (점검방법)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여부, 백신관리사항 등을 점검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 메뉴의 계약·점검관리/자율점검 등록관리 '자율점검표 항목'에 해당내용 표시 후 제출
- ▶ 점검내용 (별첨 I-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참조)
 - (일반사항)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게시, 계약 체결한 백신 사전 구비 등
 - (예방접종 실시) 예진표 작성, 과거접종력 확인,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 설명, 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정확한 접종부위·접종용량·접종방법에 따른 접종, 접종 후 20~30분 정도 관찰, 예방접종기록의 전산등록, 비용상환 신청기한 준수 등
 - (백신관리) 백신 보관·관리 전용냉장고 구비,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구입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수령 및 보관, 백신 외 검체, 의약품 등 동시보관 금지, 백신보관 적정온도 2~8℃ 유지, 일 2회 이상 온도 기록지 기록, 백신 유효기간 확인 등
- ▶ 관할 시·군·구의 방문점검 협조(연 1회 이상)
 - 관할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수시점검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협조
 - ※ 점검기간 내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가능

0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접종 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부록 III-6 참조)
-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법(별첨 III 참조)
 - 접종 후 접종기관에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리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 이상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기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범위: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부록I 참조)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일 경우

08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의 기록은 피접종자의 누락접종과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전 과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간 공유
 - 접종기관 간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위탁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방접종 위탁계약서'에서 명기한 위탁계약조건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09 귀국 자녀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 ▶ 해외 장기체류 예정자에게 귀국 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안내
 -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증명서 필요
 - 국내에서 어린이집 입소 또는 초·중학교 입학 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 아기수첩은 보호자가 아기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으로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서명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대체 불가
 - ※ 다만, 국가에서 예방접종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의 접종기록은 인정

〈관련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 안내
 -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 (Official Signature or Stamp)된 서류’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 전산등록 요청하도록 안내
 -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와 이동통신 앱에서 확인 가능

Ⅱ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1. 사업 개요	39
2. 법적 근거	39
3. 사업 추진실적	40
4. 사업 내용	41
5. 사업 참여 방법	45
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	47
7. 비용상환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52
8. HPV 예방접종 기록 등록	55
9. 백신 공급 및 관리	55
10. 위탁의료기관 점검	57



1 사업 개요

○ 배경

- ▶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인생의 전환기인 여성 청소년에게 전문 의료 상담과 진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춘기 여학생의 약 59%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생리를 시작하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약 4.6%는 성경험이 있음(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 추진경과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실시(2016. 6. 20. ~)

2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6호)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98호)

3 사업 추진실적

▶ 참여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건)

구분	참여의료기관 수	비용상환 신청건수	상담건수
2016년	9,513	220,304	211,672
2017년	9,306	383,122	368,492
2018년	8,656	311,873	303,467
2019년	8,442	328,264	320,300
2020년 11월	8,265	316,589	309,846

* 2020.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누적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대상자수	1차접종		2차접종	
		접종건수	접종률	접종건수	접종률
2003년생	236,817	146,934	62.0	128,303	54.2
2004년생	228,040	166,550	73.0	147,703	64.8
2005년생	210,144	184,054	87.6	163,287	77.7
2006년생	216,905	193,006	89.0	162,104	74.7
2007년생	240,736	206,576	85.8	151,345	62.9
2008년생	226,914	104,750	46.2	19,802	8.7

* 2020.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전체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대상자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여성청소년

4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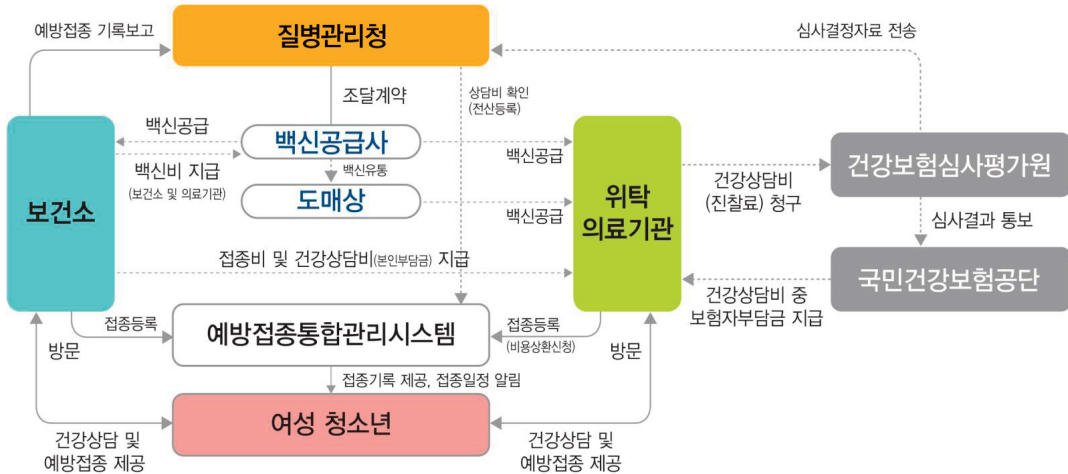
- ▶ 사업대상: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09. 12. 31. 출생자)
 - ※ 사업기간 내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2차 접종 비용지원
예) 2007년생이 HPV 1차를 2019. 2. 21 접종 → 2차 접종은 2021.2.20.까지 접종 지원

- ▶ 사업내용: 표준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HPV 예방접종) 제공, 6개월 간격으로 각 2회 무료지원
 - ※ 건강상담비(진찰료)는 초진진찰료 기준금액 지원
 - ※ 건강상담비 중 공단부담금 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공단 심사결정자료 확인 후 지급
 - ※ 백신을 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함에 따라 백신비는 백신공급 협약기관에 지급
 - ※ 건강상담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에서만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가능

- ☞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제공
-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시행 가능
 -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에서만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시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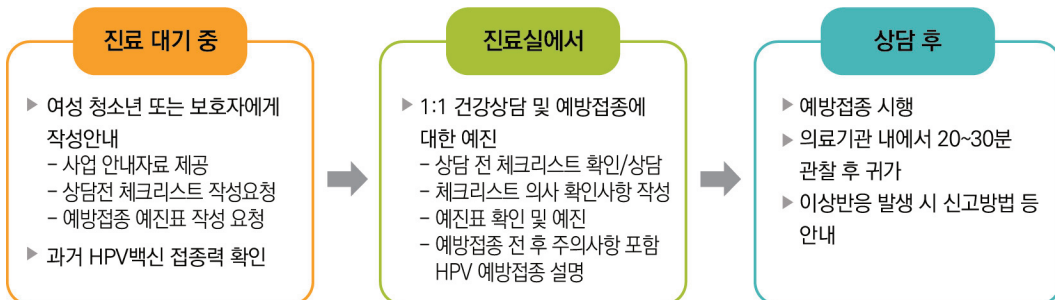
- ▶ 지원백신: HPV 2가, HPV 4가
 - ※ HPV 9가 백신은 미지원

▶ 사업체계



- (보건소) 지자체장이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상환 신청 내역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심사 후 비용지급
 - ※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 지급, 백신비는 조달계약업체에 지급
 - ※ 건강상담비 중 공단부담금 외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청구 심사결정 후 위탁의료기관에 지급
- (위탁의료기관)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비용상환 신청, 건강상담비(진찰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의료기관이 청구한 건강상담비에 대해 심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위탁의료기관에 건강상담비 중 보험자부담금 지급

▶ 서비스 제공 절차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질병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총괄 - 관련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HPV 백신 예방접종 및 상담 비용지원 관리(건강상담비 지급 관리 포함) - 백신수급 및 조달계약업체에 백신비 지급 관리 - HPV 예방접종 교육·홍보 -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진찰료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심사 및 지급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안내 및 시스템 이용법 안내 • 위탁의료기관 신규계약 및 재계약 관리(5년마다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계약서,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사업 참여 확인증, HPV 백신공급 협약서 * 제출된 서류 모두 보건소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 위탁의료기관 점검관리(연 2회(상·하반기) 자율점검, 연 1회 이상 방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확인 - 사업 대상자 예방접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일정 안내 및 미접종자 관리 - 건강상담비(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및 예방접종 비용상환 관리 - 백신 수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사용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량 확정 및 관리 -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에 백신비 지급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피해보상 접수 및 피해조사 실시
위탁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확인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제출 - 건강상담 전 점검표 및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안내

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HPV 예방접종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문진 또는 예방접종수첩 상 과거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안내, 접종한 백신 종류(접종일) 확인 후 건강상담 및 접종 실시함 - 상담 체크리스트 확인 및 표준 상담 업무 흐름도에 따라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완료 후 점검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5년 보관) - 상담 후 부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전문의 진료 안내 - 예진표를 토대로 예진 실시 및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설명 - 접종 백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부위에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 시 극도의 긴장이나 접종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접종 후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접종은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을 권장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 역할 지정 및 숙지 - 2차 접종 및 건강상담 일정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예방접종일 등록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예방접종 예진표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후 귀가 안내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전산등록(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요양청구 프로그램에 상담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기록은 가급적 접종 당일에 순차적으로 등록 * 접종 당일 전산등록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접종 발생 시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이상반응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실시 및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 -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 백신 보관 및 관리 - 여성청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사업 안내자료 제공

5 사업 참여 방법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신청(위탁계약 체결)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전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 필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이수
- ▶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기관
 - 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확인증
 -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 ③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미참여 기관(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약 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가능)
 - ①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 ② 통장사본
 - ③ 2019년 이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 ④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확인증
 - 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 ※ 제출된 서류는 모두 보건소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완료 시 계약 유효
- ▶ 기존 계약된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관할 보건소 등)가 변경된 경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체결
 - ※ 관할 보건소는 동일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정보에서 주소지 수정
 - ※ 의료기관 폐업 시 폐업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재계약(계약 갱신)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관리
 - 위탁계약기간(5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후 재계약 체결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기관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추가로 참여한 경우, 이전 유지 중인 위탁계약일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계산
 - ※ 보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교육시기 도래 1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으로 안내
 - ※ 보수교육 미이수 및 재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 불가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 갱신 후 비용신청 가능

○ 계약 해지(참여 철회)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 제출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만 참여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전체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에서 계약해지 신청서 등록
 - 다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는 유지하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만 철회할 경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확인증 정보’의 ‘해지 신청’ 버튼을 눌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수정 작성하여 제출
 - ※ 계약해지 시 비용상환 미신청 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바라며, 계약해지 후 비용상환 미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불가함
- ▶ 참여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참여 철회 같음

☞ (참고)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의료기관 정보 연계

-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 폐업 처리(위탁계약 해지 같음)
- 폐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므로 예방접종 기록 등록이 누락된 내역에 대해 추가 등록 불가(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 기록 등록 완료)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위탁 계약 해지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해지 가능

- ▶ 참여 의료기관이 건강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상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 참여 해지 가능

☞ (참고) 주요 위반 사례 예시

- 참여 의료기관에서 피접종자에 대한 건강 상담 시행을 거부하는 경우
- 참여 의료기관이 건강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상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사업 참여 제한

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

○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원칙

- 건강상담과 예방접종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
- 상담 전 사춘기 성장발달 및 초경에 관한 안내 자료, 예방접종 안내문 제공
- 건강상담 전에 반드시 과거 HPV 예방접종력(접종일, 백신종류) 확인
-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예진 시행
-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대기하도록 안내
- 다음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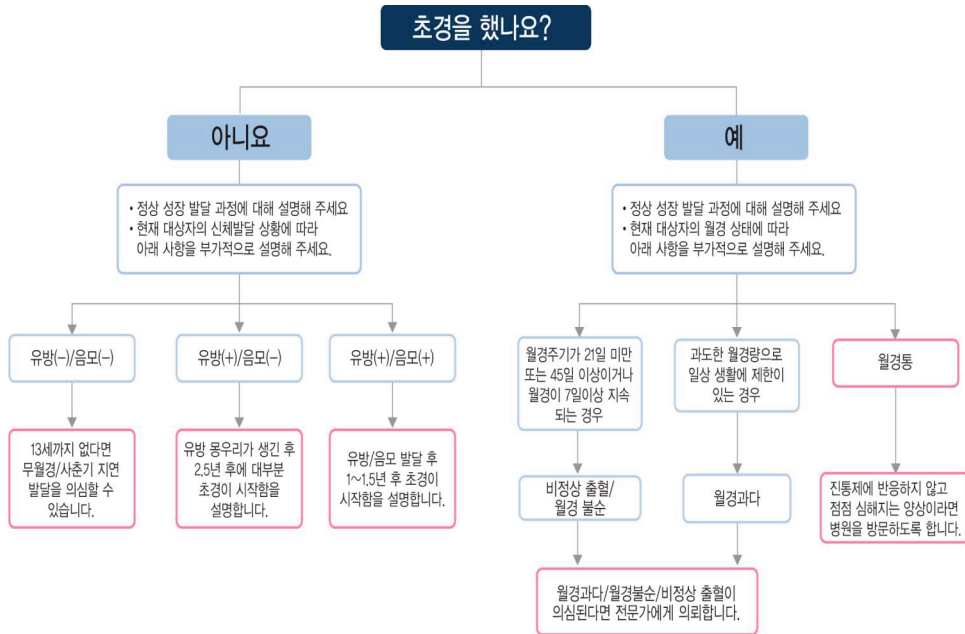
☞ (참고) 예방접종 시 접종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 동의서 및 예진표를 구득하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유선 상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접종 시행
 - * 청소년 HPV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서식 다운로드 가능
 - * (서식 다운로드)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HPV 예방접종 동의서식 모음’

○ 건강상담 내용 및 과정

- ▶ 상담 내용: 사춘기 성장발달 및 초경 관련 건강상담
 - ※ 건강상담은 대상자가 작성한 점검표(별첨서식 1-9) 내용을 토대로 제공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매뉴얼’에 게재되어 있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의료인용 상담 교육자료’를 숙지하고 활용
 -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진료 대기 시 사업 안내 자료(보호자용 리플렛,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HPV 예방접종 안내문)를 제공하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 ※ 접종 시 작성하는 예진표와 같이 작성하도록 하고, 예진표와 함께 5년간 보관
 - 상담은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대상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의사 확인사항을 작성하고,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장발달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상담을 시행 (달력형 상담도구 등을 활용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 ※ 사춘기 성장발달 개요와 대상자의 성장발달 상황, 여성청소년에게 흔한 부인과적 질환(무월경, 월경통, 월경 이상)에 대한 설명과 질환의 유무 확인 등
 - ※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전문가에게 의뢰 등의 조치
 - ※ 추가 검사나 진료에 대한 비용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지원내용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 시 보호자 설명 및 동의 필요
 -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백신 안전성과 권장 접종 시기 등 보호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상담 과정: 1차·2차 상담 시 동일한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에 따라 진행



〈 여성 청소년 대상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Flowchart) 〉

●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

▶ 접종실시기준: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참고) 백신별 2회 접종 가능 연령: (HPV 4가) 만 9~13세, (HPV 2가) 만 9~14세

- 1차 접종을 만 12세에 시작한 경우 두 번째 접종이 15세 이후에 접종되더라도 총 2회 접종으로 완료
- 2회 접종 간 권고되는 최대 접종간격은 없지만, 접종 간 간격이 12~15개월보다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험 시작 전에 접종 완료를 위해서 제안됨(WHO, 2014)

- 2회 접종 시 권장 접종간격보다 일찍 접종될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 권장 접종간격보다 이르게 접종하여 총 3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3차 접종 비용지원
- (HPV 4가) 1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2차 접종 시 두 번째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3차 접종(1차와의 간격 6개월 유지)
- (HPV 2가) 1차 접종 후 5개월 이내에 2차 접종 시 두 번째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3차 접종(1차와의 간격 6개월 유지)

- 2회 접종이 허가된 이후 연령에서 1차 접종을 시작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 국가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HPV 4가) 만 14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0, 2, 6개월 간격)
 - (HPV 2가) 만 15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
- **면역저하자의 경우 백신별 권장 간격에 따라 총 3회 접종 필요**

※ 사업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3회 접종 모두 비용지원

- ▶ **접종용량 및 방법:** 1회 0.5ml, 상완 삼각근 근육주사
- ▶ **동시접종 및 교차접종**
 - (동시접종) 다른 약독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 동시접종 시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 권장
 - (교차접종) HPV 2가, 4가 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 단, 이전에 사용한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국내에 해당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참고) HPV 9가 백신 유통에 따른 세부 안내사항(2017년 제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 (교차접종) HPV 2가, 4가 백신과 9가 백신의 교차접종은 안전성, 면역원성, 효능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권장하지 않음
- (기존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기존 HPV 2가, 4가 백신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9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므로 국가 권장여부는 추가 근거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함
- (동시접종) Tdap 등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함

- ▶ (금기 및 주의사항)
 - 이전 백신 접종 후 또는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있었던 경우
 - 급성 중증 열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 및 관찰

○ HPV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주의사항

▶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및 예방법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 부어오름, 발적 등
 - * 접종부위 통증이 비교적 흔하게 보고(약 80%) 되며,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약 6%에서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수일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
- (전신반응)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두드러기 등
 -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은 극히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영유아 백신과 비교하여 특별히 빈도가 높지 않음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하고 피접종자의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신속 대응, 평소에 대처법 숙지

☞ 예방접종 후 일시적인 실신에 대한 주의 필요

- 청소년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시 긴장이나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가 있으며,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필요
- 실신은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 가능하며 주로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단체 예방접종 시 발생
- 의료기관 주의사항
 - 접종은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을 권장
 -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 및 관찰

▶ HPV 예방접종 안전성 관련 보호자 커뮤니케이션

- 예진 시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호자와 피접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되, 대부분 일시적인 반응으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내
- 예방접종 후 일시적 실신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후 앉거나 누워서 경과를 관찰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보호자와 피접종자에게 설명
-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 전암병변을 예방하는 효과(이득)*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
 - * 고위험 HPV 유형인 16, 18형 감염, 백신 유형과 관련된 자궁경부 상피내암(0기암, carcinoma in situ) 및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종(Adenocarcinoma in situ)에 대해 높은 예방 효과(>90%)를 보임
 - * 이상반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미루는 것보다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암 예방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큼

- 일본 등 해외의 이상반응 사례 보고들로 보호자들이 가지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 외국의 이상반응 사례들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례들임을 알리고, 백신 안전성에 대해 발표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
 - ※ (WHO) 국제백신안전성지문위원회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2006년 허가를 받은 이후 2017. 7월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2억 7천 도즈가 접종되었으며,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안전하다고 발표함(2017. 7월까지 안전성에 대해 총 7회 검토 및 발표)
 - ※ (일본) 복합국소통증(5사례)에 대한 일본 후생성 조사 결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힘들고, 심리 불안반응으로 잠정결론(2014. 2월, 7월), 일본 전문학협회 17개 단체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예방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2016년)
 - ※ (국내) 국가예방접종 도입이후 2020. 11. 30.까지 약 170만 건 접종함. 현재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116건(0.007%) 중, 심인성 반응으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60건, 51.7%)이 가장 많았고, 신고된 건에 대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현재까지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증이상반응 사례군은 확인되지 않았음

7 비용상환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

▶ 건강상담비용

■ 건강상담비(진찰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적용기준) 건강상담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며, 1회당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수가 적용
 - * 2021년도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건강상담비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하고, 청구 명세서의 특정내역구분(MT002)에 F012를 기재하여 청구
 - * 같은 날 동일 의사에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 따른 상담 이외 별도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은 진찰료 1회 청구, 건강상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나, 검사, 처치 등의 다른 진료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필요(명세서 각각 작성)
 - * 상담절차 및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 건강상담비(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지원
 - * (건강상담비 본인부담금 지급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완료 자료를 받아 검토 →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본인부담금을 반영 후 지급요청 →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 본인부담금은 무료 지원되므로, 대상자로부터 동 상담 비용(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 금지



▶ 예방접종비용

■ 예방접종 비용

- (신청 및 지급)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전산등록 시 자동 청구되며,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 후 시행비용 지급
- (백신비 및 시행비용) HPV 4가 63,280원, HPV 2가 56,550원, 시행비는 접종 당 19,010원
 - *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는 도매상에 지급하며, 2021년 예방접종비용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 건강상담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시행비와 별도 지급

▶ 비용상환 기준

- (상환가능) 지원기간동안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시행된 내역 2회 지원

☞ (참고) 2차 접종 지연 시 비용지원 기간

- 1차 접종 후 24개월 하루 전까지
(예) 2006년생이 2019. 12. 31.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021. 12. 30.까지 지원 가능

- (상환불가)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 ※ '상환불가' 접종의 백신비는 의료기관에서 부담(백신공급 도매상에게 직접 반납)
 - ※ 건강상담을 제공했다라도, 잘못 시행된 접종의 경우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비용 지급 불가

☞ (참고)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사례

- (중복접종) 동일 차수 접종을 중복으로 시행한 경우
 - * 예방접종기록 등록 지연 등으로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
- (이른접종)
 - ① 2021년 사업 대상 연령보다 이른 연령(예: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접종한 경우
 - ② 2차 접종이 최소접종간격보다 일찍 접종된 경우
 - * 2차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이며, 이른접종으로 추가 시행된 3차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예외인정) 면역저하자에게 3회(HPV 4가: 0, 2, 6개월 간격/ HPV 2가: 0, 1, 6개월 간격)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비용 상환 인정

☞ (참고) 예외인정자에 대한 비용지원

- 항암치료 대상자: HPV 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지원 연도에 항암치료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지원연도 시작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지원**
 - *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3차시기(지원 연도 시작일로부터 3년이내) 접종 지원
- 면역저하자에게 HPV 백신 3회 접종 시 건강상담은 1차, 3차 접종 시에만 시행(0, 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하고 건강상담비 청구 가능
 - * 2차 접종 시 의학적 사유 선택/입력해야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상담은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 재접종 시 해당 차수 기록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접종기록을 추가 등록하고, 의학적 사유 선택/입력해야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가능

▶ 비용상환 신청 및 이의신청

- (비용신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자동으로 신청
-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재접종자의 비용 신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화면 하단의 '의학적 소견/기타 사유'에 해당 사유 입력
 - * (예)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을 시행한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선택 → '이식일자' 입력
- (이의신청) 비용상환 심사결과, 상환불가 판정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 ※ 이의신청 기간: 상환불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이의신청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p127) 참조

▶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 접종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신청내역에 대한 적합성 심사
 - ※ 지자체장(보건소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 요청 가능. 해당 기간 내 보완 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 통보 및 비용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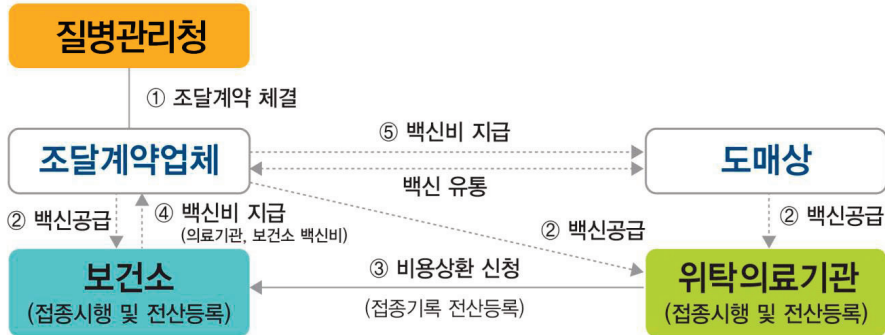
8 HPV 예방접종 기록 등록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HPV 예방접종 기록 등록
- ▶ 예방접종 기록은 가급적 접종 당일 등록
 - ※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됨
- ▶ 예방접종 기록은 순차적으로 등록
 - 건강한 아동의 경우 순차적으로 2회 등록(1차 → 2차)
 - 면역저하자의 경우 순차적으로 3회 등록(1차 → 2차 → 3차)
 - ※ 접종 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면역저하 사유) 등록
 - 단, 과거 접종력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이전 접종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다음 차수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재접종한 경우 해당차수(기존 접종 날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접종내역 추가 등록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동일 차수에 재접종 등록 시 의학적소견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항목 선택 후 이식일자 추가입력

9 백신 공급 및 관리

- ▶ 계약방식: 보건소 및 의료기관 사용량에 대한 총액계약
- ▶ 기관별 백신 공급방법
 - (보건소) 질병관리청에서 분기별 사용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량 확정, 조달계약업체에서 백신 공급
 - (위탁의료기관)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을 통해 직접 백신 확보,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백신을 공급한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사용 백신의 백신비 지급절차 및 기관별 역할



〈 백신 공급 및 비용 지급 절차 〉

☞ (위탁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로 비용상환 신청(전산등록)
 ☞ (보건소) 지급심사 후 상환결정된 건에 대해 백신비는 조달계약업체로, 시행비는 의료기관으로 상환
 * 다만, 조달계약업체 외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 백신은 조달계약업체가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 등록 시 비용상환 신청
 - ※ 조달계약 업체(또는 도매상)에게 백신비가 지급되기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후 반드시 보건소 승인 필요
 - (보건소)
 -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내역 심사 후 비용 지급결정
 - 조달계약업체 청구건에 대해 백신비 지급
 - (조달계약업체)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공급, 비용상환 심사결과 지급결정 건에 대하여 해당 보건소로 백신비 청구, 지급된 백신비는 실제 백신을 공급한 도매상에게 전달
 - (도매상)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공급, 조달계약업체에 백신비 청구
- ▶ HPV 예방접종 오등록 시 백신 등록 처리 방법
- 도매상에서 백신비 지급요청(또는 지급완료) 후에는 비용상환 접수취소, 접종내역 삭제가 불가하므로 도매상과 백신문제 처리를 위해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백신 담당자(☎ 043-719-6818)와 통화 후 조치 필요
 - ※ 잘못 등록한 접종내역에 대한 삭제, 접종일자 변경 시 건강상담 실시내역 등을 확인하고, 비용지급 보건소(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 요청

▶ 협조 및 참고사항

- (보건소) 분기별 수요조사 시 과도한 수요제출 지양, 최근 접종률과 의료기관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요 제출
- (위탁의료기관) 국가사업 외 백신은 보건소에서 비용지급이 불가하므로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백신 확보
 -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된 접종의 백신, 접종자 과실로 오염된 백신,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 등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지급
 - 백신공급업체 변경 시, 변경된 업체와 작성한 협약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관할 보건소에 승인요청 필요
 - ※ 보건소의 승인 이후 전산등록된 건에 대해 변경된 업체로 백신비 지급, 이전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이 남아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지급
 - ※ 기존에 협약된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을 소진한 후 협약업체 변경
 -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은 참여 의료기관과 조달계약 업체(또는 도매상) 간 자체적으로 관리(백신 구매 및 대금 지급 등)

10 위탁의료기관 점검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 ▶ 위탁의료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전자문서) 제출
 - ※ 위탁의료기관의 점검표 작성·제출은 예방접종실적 등과 관계없이 매년 시행해야 함
-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작성·제출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확인 및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하면 제출 완료
 - 제출한 자율점검표의 수정을 원할 경우, 기 제출된 점검표를 삭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점검표 확인 및 승인

○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

- ▶ 위탁의료기관별 연 1회 이상 보건소 방문점검 실시
 - 예방접종 및 상담시행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방문점검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 점검기간 내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가능
 - ※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 시 수시점검 가능

Ⅲ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 사업 개요	61
2. 법적 근거	62
3. 사업 추진실적	62
4. 사업 목표	63
5. 사업 내용	63
6. 사업 참여 방법	66
7. 예방처치 일정	68
8. 비용상환 기준	72
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전산등록	73
10. 위탁의료기관 점검	76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이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감염 가능성은 산모의 B형간염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65~93%, B형간염 e항원이 음성인 경우는 19~25%임¹⁾
- ▶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불현성 감염 후 90% 이상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가 되며 40~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화증으로 이행됨
- ▶ 주산기감염 위험이 높은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이 가능함²⁾
-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함

○ 추진경과

- ▶ 정부·의료계가 공동으로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2002. 6. 26.)
-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 시작(2002. 7. 1.)
-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에서 한국 B형간염 관리 성과 인증(2008. 9. 22.)
- ▶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B형간염 관리 성과인증' 선정(2011. 6. 15.)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수행 방식 변경(2014. 1. 1.)
 -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수록)' 발급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비용청구 방식으로 변경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2014. 6. 5.)

1) Kwon SY, Lee CH.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Korean J Hepatol. 2011 Jun;17(2):87-95. J Hepatol. 2011 Dec;55(6):1215-21

2) Y. Ghendon. WHO strategy for the global elimination of new cases of hepatitis B. Vaccine 8(supl);129-133

2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 사업 추진실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2002 (7~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1.
대상자 추계	237,712	7,857	16,678	16,074	14,791	15,237	15,782	14,909	14,235	15,045	14,138	14,537	12,657	12,192	11,837	10,562	8,944	7,844	7,273	7,119
신규 등록자	229,165	5,475	14,715	15,524	14,492	15,109	16,547	15,346	14,635	14,876	15,031	14,631	12,778	12,120	11,657	10,169	8,235	7,065	6,096	4,664
등록률	96.4	69.7	88.2	96.6	98.0	99.2	104.8	102.9	102.8	98.9	106.3	100.7	101.0	99.4	98.5	96.3	92.1	90.1	83.8	65.5

* 자료 : 2020.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등록자 수 기준 : 사업 대상자 수첩 발행년도 기준

※ 대상자 추계 = 연도별 출생아 수 X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2002~2006 : 3.4%, 2007~2010 : 3.2%, 2011~2017년 3.0~2.5%(매년 0.1%p 감소), 2018~2.4%

○ 항원·항체 검사결과(2002. 7. 1. ~ 2020. 11. 30.)

구분	항원·항체 검사결과	명	비율(%)
	사업종료 대상자	142,622	100.00
성공 (97.5%)	HBsAg (-) /Anti-HBs (+)	138,824	97.3
	HBsAg (-) /Anti-HBs (-)	98	0.1
실패 (2.5%)	HBsAg (+) /Anti-HBs (-)	3,442	2.4
	HBsAg (+) /Anti-HBs (+)	258	0.2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 참여 상태가 종료인 대상자(1~3차 검사결과 포함) 전산등록 현황으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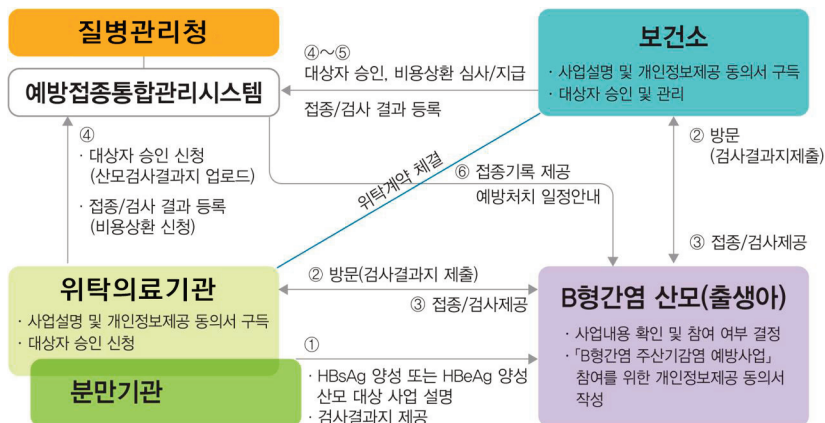
4 사업 목표

- ▶ 10세 미만 소아의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률 0.1% 미만으로 유지
 - ※ Regional Action Plan for Viral Hepatitis in the Western Pacific 2016-2020 : 2020년까지 5세 미만 영유아 표면항원(HBsAg) 양성률 1%미만, B형간염의 주산기 전파율 2%미만 달성

5 사업 내용

- ▶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8. 1. 1. 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발급면제자)는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지원 가능,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지원 가능(단, 항원·항체 검사에 한하여 위탁의료기관 이용 가능)
 - ※ 7자리 신생아번호(생년월일-성별)는 비용상환 접수 불가, 13자리 번호로 보완 후 접수 가능
-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 B형간염 기초접종(1~3차) 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최대 3차까지)

▶ 사업체계



- (보건소) 지자체장은 관내 의료기관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 대상자 승인·관리 및 위탁의료기관이 비용상환 신청한 내역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심사 후 비용지급
- (위탁의료기관) 보호자(산모)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B형간염 1차 예방처치(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접종) 후 대상자등록(산모검사결과 입력, 결과지 업로드 등) 및 처치내역 전산등록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득한 기관에서 5년간 보관
- (B형간염 산모(출생아)) 산전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검사 실시,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제출
 - ※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확인 방문이 필요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접종/검사는 비용지원
 - ※ 검사기관과 분만기관이 다를 경우 검사결과지를 분만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참여 요청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질병관리청	지침 마련, 관련 고시, 법 개정 근거 마련, 교육 운영, 홍보, 현황 모니터링 등 사업 총괄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 운영 계획 및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예방접종 담당자 전문교육과정 이수 - 위탁계약 관리 (사업설명, 신규 참여 독려, 계약체결(갱신), 의료기관 점검, 교육이수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 - 사업 대상자 승인처리 및 대상자(미완료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대상자관리에서 대상자(신규 및 중간참여) 승인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자리 신생아번호와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인적 정보 통합관리 • 과거 수첩(쿠폰) 대상자 전환 승인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 전환요청 필요 • 접종 및 검사 미완료 대상자 관리(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비 접종/검사 시행한 경우에도 검사결과에 따른 사업종료처리 또는 대상자 추적 관리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접종내역/검사결과 전산 등록(결과지 업로드)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기 관	역 할
분만/접종/검사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시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전자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 동 사업 참여 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시행 필수 - 예방접종(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포함) 교육 이수 - (산전진찰기관/분만기관) 산모 B형간염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지 발급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및 대상자 참여 독려(리플렛 배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 - 예방처치 중요성 및 권장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안내 - 대상자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신청) 시스템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 후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및 보관(보관기간: 5년) ※ 전산등록 시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입력 및 결과지 제출(시스템 업로드) 필수 ※ 검사안내 문자수신 동의여부 확인 및 등록 * 2019. 8.부터 예방처치일정 도래 시 문자수신동의자에 한하여 문자 발송 시행 • (과거 쿠폰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보건소에 전환승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검사 미완료한 과거 쿠폰 대상자(2013년 이전 대상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지속 지원 가능하며, 동의서 구득 후 보건소 유선연락 필요 (방법) 구득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 보건소에서 시스템에서 전환 → 시행 기관에서 접종/검사 내역 전산등록(검사결과는 파일 업로드) - 접종/검사 실시 및 내역 전산등록(비용상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후 12시간 내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및 전산등록 • B형간염 항원·항체 정량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원·항체 검사 결과지 제출(시스템 업로드) 필수 ※ 자비 접종/검사 시행한 경우에도 검사결과에 따른 사업종료처리 또는 대상자 추적 관리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접종내역/검사결과 전산 등록 - 권장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정량검사법) 실시 -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재접종/재검사 또는 사업 종료 안내 - 검사결과 감염자(항원양성, 항체음성)에게는 감염자관리 안내문 및 관련 정보 제공 - 연 2회 자율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자율점검표 제출(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점검 양식 적용 - 보건소 방문점검 등 사업운영 사항 협조 -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기록은 피접종자의 중복접종 및 접종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종기관 간 공유하며,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탁계약조건 제6항에 따라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사업 참여 해지

6 사업 참여 방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신청(위탁계약 체결)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전 사업 관련 교육 이수 필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 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이수
 - ▶ 기존 계약된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관할 보건소 등)가 변경된 경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체결
 - ※ 관할 보건소는 동일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정보에서 주소지 수정
 - ※ 의료기관 폐업 시 폐업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기관
 - 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B형간염 예방접종은 필수값)
 - 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미참여 기관(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약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가능)
 - ①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 ② 통장사본
 - ③ 2년 이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 ④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B형간염 예방접종은 필수값)
- ※ 제출된 서류는 모두 보건소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시 계약 유효



○ 재계약(계약 갱신)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관리
 - 위탁계약기간(5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후 재계약 체결
 - (전자계약) 전자계약은 보건소 승인 시 승인일 기준 자동 갱신일 반영
 - ※ 교육시기 도래 1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으로 안내
 -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비용신청 불가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 갱신 후 비용신청 가능

○ 계약 해지(참여 철회)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 제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만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
 - 다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는 유지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만 철회할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의 시행여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수정하여 제출
- ▶ 참여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참여 철회 같음

☞ (참고)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의료기관 정보 연계

-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 폐업 처리
- 폐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므로 예방접종 기록 등록이 누락된 내역에 대해 추가 등록(비용상환 신청) 불가
 -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 기록 등록을 완료하도록 함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위탁 계약 해지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해지

7 예방처치 일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일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예방처치 일정

1차 접종 → 2차 접종 → 3차 접종 → 1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검사

※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및 검사 진행여부 결정(p70 참조)

※ 접종 및 검사에 대한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내용을 전산등록 하도록 안내하고, 누락된 접종 또는 검사기록을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다음 접종 또는 검사에 대한 비용청구 가능

▶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일정: 생후 0, 1, 6개월

- ※ 첫 접종은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HBIG, 0.5mL)과 함께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 ※ 면역글로불린 투여 지연 시 늦어도 생후 7일 이내 실시

- 접종용량: 만 10세 이하 0.5mL, 만 11세 이상 1.0mL

- ※ 영유아는 대퇴부 전외측에 근육주사

접종 및 검사		접종 및 검사 권장 시기	접종부위	최소연령	최소간격
기초 접종	1차 접종 (백신, 면역글로불린)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대퇴 전외측	-	-
	2차 접종(백신)	생후 1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4주	1차 접종 후 4주
	3차 접종(백신)	생후 6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24주	2차 접종 후 8주 & 1차 접종 후 16주
1차 항원·항체검사		생후 9~15개월	-	생후 9개월 이상	-

▶ 미숙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일정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 미숙아는 출생 직후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미숙아 재접종 1개월 후에 2차 접종*, 2차 접종 4개월 후에 3차 접종으로 표준접종일정은 총 4회(생후 0-1-2-6~7개월)

- ※ 예방접종등록화면의 전산등록 순서: 1차 → ‘미숙아 재접종’ → 2차 → 3차 접종

* 미숙아 재접종의 경우 신생아의 몸무게가 2kg이 넘지 않을 경우 전문의 판단 하에 접종일정 조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항원·항체검사

- 적정검사 시기는 생후 9~15개월이며, 접종이 지연된 경우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 반드시 비용지원이 가능한 권장검사법으로 실시
 - ※ 권장 검사시기가 생후 9~15개월인 이유는 HBIG에 의한 수동항체가 아닌. 예방접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
 - ※ 지연접종 시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지켜야 하며,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 이후 검사 진행(지연접종이 아닌 경우, 가급적 권장 검사 시기를 준수하여 시행)
- 권장검사의 종류(비용지원 가능한 검사법, 자문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표면항원 및 항체 검사방법 중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권장

권 장 검 사 방 법(항체가 확인 가능)	인정
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 EIA)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 MEIA) 형광효소면역측정법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 FEIA)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 * EIA는 RIA와 비슷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항체량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함	○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 CIA,CLA,CLIA) * CLIA는 고형물로 크기가 작은(microparticle) 자석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음	○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 EC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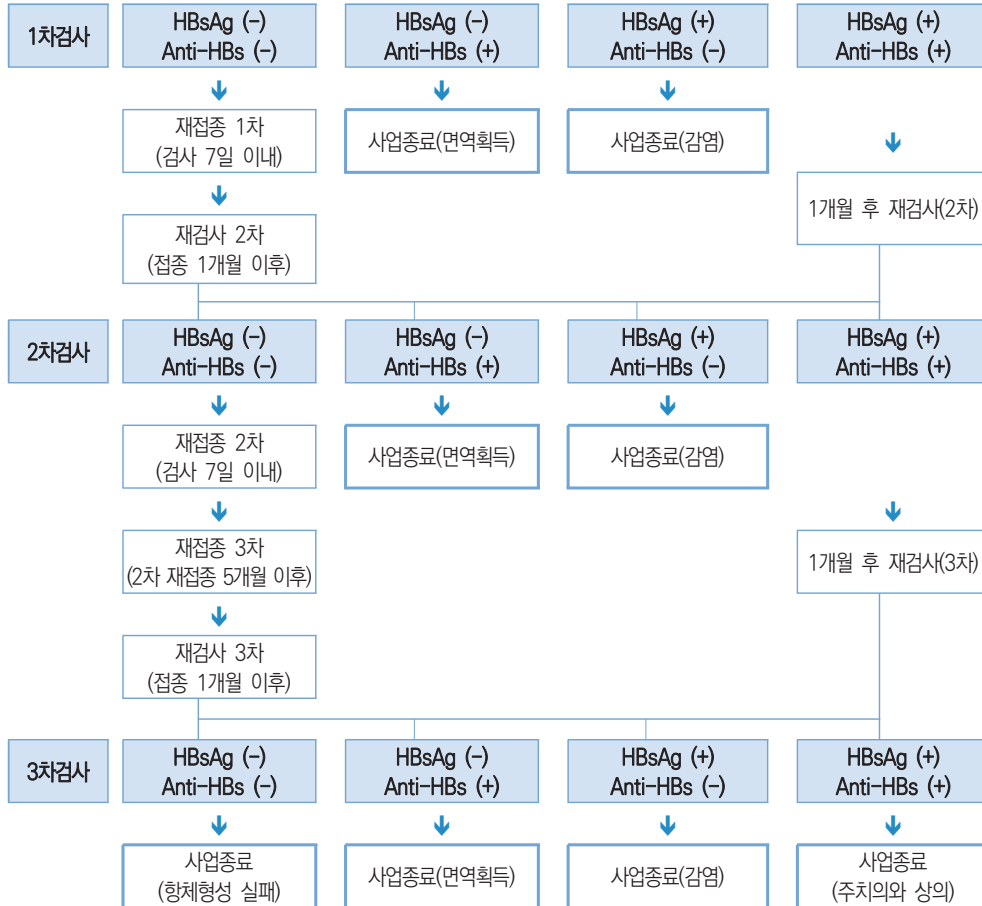
※ 비권장검사(비용지원 불가): 항체가의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검사 예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 RIA) * 효소 대신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지자로 이용하여 반응시킴으로써 항원 및 항체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항체가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단계가 필요함	X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 assay : ICA) * 현장검사 시약은 검사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단히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X
수동혈구응집법 (Passive hemagglutination : PHA) * 민감도가 EIA나 RIA보다 1,000배 정도 낮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X

- 검사결과 전산등록 및 결과지 파일 업로드
 - 모든 항원·항체 검사결과(양, 음)와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입력
 - ※ 업로드 파일의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기
- 항체가의 정량 검사결과 판독 기준
 - 예방 가능한 ‘항체가’는 10 mIU/mL 이상
 - 항원이 음성이고 항체가 음성(항체가가 10 mIU/mL 미만)일 경우 재접종 필요
 - ※ 주의: 시험 기기별로 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 기준에 준하여 판독
- ▶ 재접종 및 재검사 일정: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 B형간염 1차 재접종
 - 대상: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 방법: 1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
 - B형간염 2차, 3차 재접종
 - 대상: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 방법: 2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재접종하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 재접종 시 최소접종간격
 - 2차 재접종: 1차 예방접종 후 1개월 이후
 - 3차 재접종: 2차 예방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16주 이후

○ 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 처치 일정

▶ 기초접종 3회(1~3차)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른 일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일정 알림

▶ 예방처치 일정 사전알림 및 미완료알림 문자 발송

※ 기초접종 이후 항원·항체 검사일정부터 발송(기초접종은 전체 사업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안내 중)

기초 접종 3회(1~3차) 접종 완료 → 1차 검사 안내(생후 9개월 도래시 또는 3차 접종 후 1개월경과 시(3차 접종 연령이 생후 9개월 이상일 경우)) → 검사 결과에 따른 재접종 또는 재검사 안내(재접종은 검사일 기준 7일 내 접종 미등록 시(단, 3차 재접종은 2차 재접종 후 5개월 도래 시), 재검사는 검사일 기준 1개월경과 시)
 ※ (미완료자 알림문자) 전산 미등록자 대상 권장기간으로부터 1개월경과 시 재안내 문자 발송

8 비용상환 기준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접종 및 접종비용 지원 범위
 - 기초접종 3회(1차~3차) 및 1차 예방처치 시 면역글로불린 1회 접종 지원
 - 항원·항체 검사 3회(1차~3차): 추가 검사필요 시 총 검사 3회까지 비용지원
 - ※ 항원·항체검사는 반드시 정량검사법(EIA, ECL, CIA 등)으로 시행
 - ※ 정성검사 또는 항원·항체 중 한 가지만 검사한 경우는 비용상환 불가하며 재검사 필요
 - 추가접종 3회(1차~3차 재접종): 추가접종 필요시 재접종 총 3회까지 비용지원
 - ※ 접종 및 검사 진행 순서는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예방처치일정(실시기준)에 따르며, 진행 순서가 다른 경우 비용상환 불가
 - ※ 접종/검사 등록 시 이전 단계 시행내역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는 전산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상환 신청 불가(이전 내역 시행기관에서 전산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요청하도록 안내)
 - ※ 접종/검사 지연 시 2007. 1. 1. 이후 출생아의 경우 비용지원 가능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비용: 64,130원
 - 2차 및 3차 예방접종 비용: 26,210원
 - 항원·항체 검사 비용: 57,550원

구 분	2021년 비용		비고
계	174,100원		※ 2021년 백신 조달계약 이후 지원비용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HBIG & 1차 접종	64,130원	37,920원	
		26,210원	
2차 접종	26,210원		
3차 접종	26,210원		
항원·항체 검사	57,5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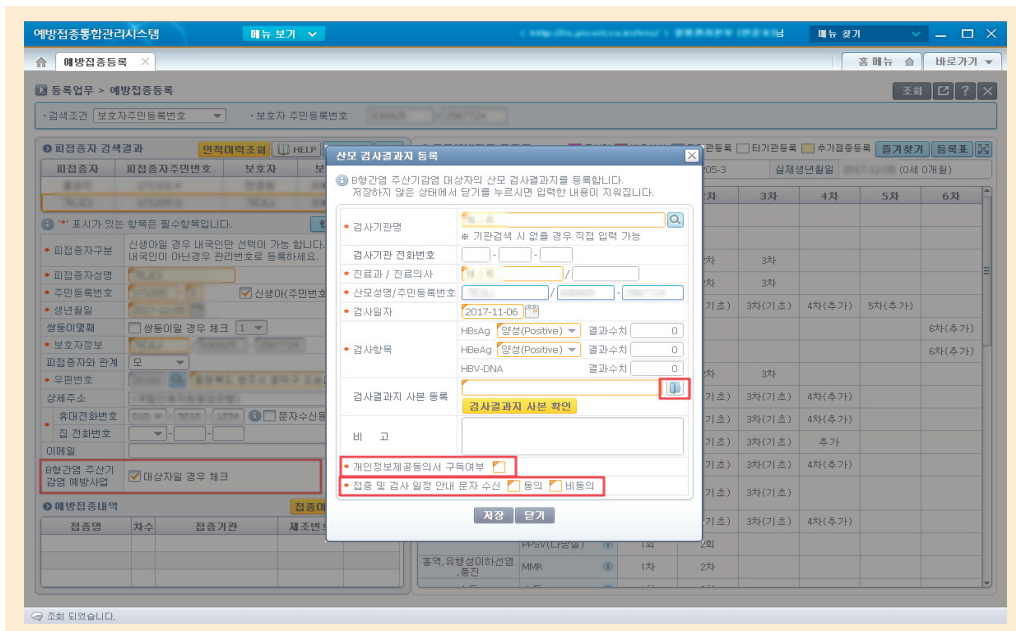
- ※ HBIG 투여비용에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등 포함
- ※ B형간염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등 포함
- ※ 예방접종 비용은 2021년 보건소 백신 조달 계약 이후 변경예정으로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 ※ 항원·항체 검사 비용에는 검사료 및 검사 상담료(진찰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검사와 검사결과 상담이 동일한 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추가 비용 청구 불가
- ※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및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

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전산등록

● 접종/검사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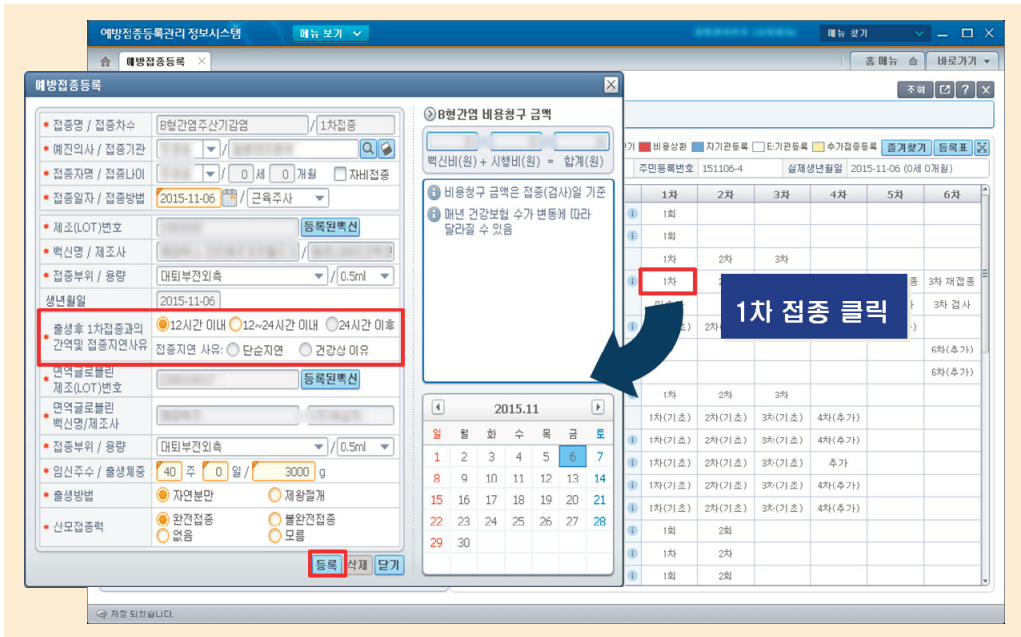
▶ 신규대상자 등록(승인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클릭
- 대상자 인적정보 조회 화면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산모검사결과 입력, 결과지 업로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여부 체크, 문자수신 동의여부 등을 체크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 검사 항목에서 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대상자 등록 가능
 - ※ 검사결과지 파일 업로드 필수(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기)
 - ※ 문자수신동의자의 경우 항원·항체 검사일정 도래 시 사전 안내
- 저장 시 우측 표준예방접종 등록표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일정에 맞게 자동 변경



▶ 예방접종 및 검사결과 등록

- 1차 접종의 경우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접종정보 등록
 - ※ 접종시간, 분만주수, 출생 시 체중, 출생 방법, 산모 예방접종력 정보 등 입력
 - ※ 1차 접종 등록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완료 시 다음 접종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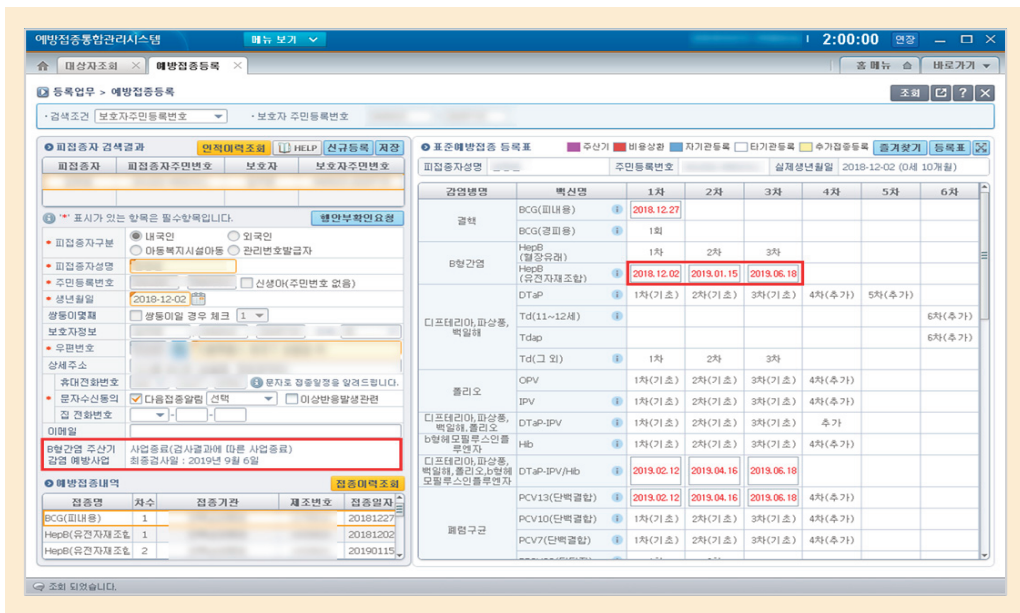
- 미숙아(출생 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 출생)의 경우 1개월 후 접종은 '미숙아 재접종' 칸에 등록
 - ※ 미숙아 재접종의 경우 피접종자의 '접종 시 체중' 항목 추가 입력 필요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접종 및 검사는 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등록
 - ※ 기초 1~3차 접종 후 1차 항원·항체 검사(정량검사법)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검사 →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검사



- 항원·항체 검사 결과 등록 시 검사일자, 검사항목, 정량검사결과(항체가 포함)를 정확히 입력하고, 검사결과지 파일 시스템에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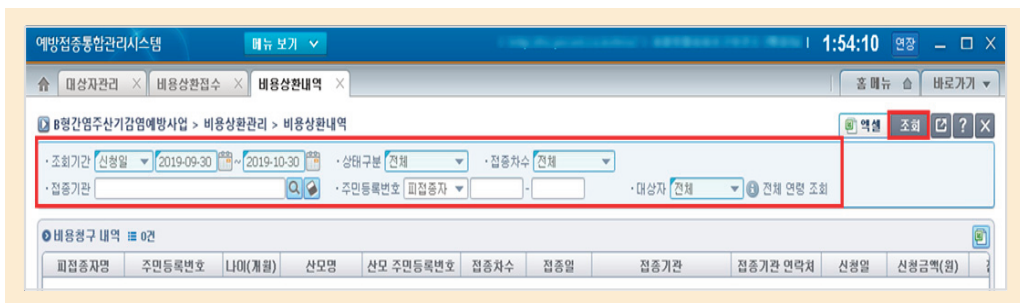
▶ 사업 종료 시

- 사업 종료 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체크란이 공란으로 표시되며,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상 보라색 박스, 검사 입력칸 자동 변경
 - ※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가 생성된 경우 결과 입력(저장) 시 사업 종료 처리
 - ※ 관리 종료자인 경우 보건소에서 종료여부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종료자가 아닌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후 관리재개 조치 가능



▶ 비용상환내역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상환관리 → 비용상환내역에서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비용상환 내역 조회 가능



10 위탁의료기관 점검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 ▶ 위탁의료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전자문서) 제출
 - ※ 위탁의료기관의 점검표 작성·제출은 예방접종실적 등과 관계없이 매년 시행해야 함
-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작성·제출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확인 및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하면 제출 완료
 - 제출한 자율점검표의 수정을 원할 경우, 보건소 승인 전 기 제출된 점검표를 삭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점검표 확인 및 승인

○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

- ▶ 위탁의료기관별 연 1회 이상 보건소 방문점검 실시
 - 예방접종 및 상담시행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해야 함
 - ※ 점검기간 내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가능
 - ※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수시점검 가능

Ⅳ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1. 사업 개요	79
2. 사업 추진실적	80
3. 사업 목표	80
4. 사업 내용	81
5. 기관별 역할	82
6. 사업 참여 방법	83
7. PPSV23 백신 공급 관리	85
8.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86
9. 예방접종 시행	87
10.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88
1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91
12. 위탁의료기관 점검	91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릅니다
-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효과는 백신 포함 혈청형에 대해 50-80%이나, 국내 65세 이상 연령에서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2012년 15.4%으로 낮아 어르신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함

○ 추진경과

- ▶ 어르신 대상 국가지원 예방접종 항목확대 추진(2012.)
- ▶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 선정(2012. 11.)
- ▶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기경험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2013. 1.)
-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2013. 2.)
-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 실시(2013. 5.)
 - ※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분산접종 실시(5~6월 75세 이상, 11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 ※ 2013~2015년 따라잡기(Catch-up) 접종
-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접종 이용 제한 폐지(2014. 8.)
 - ※ 행정제도 개선과제 접수(2014. 2. 4.), 시·도 간담회(2014. 2. 14.)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 수렴
-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합동평가지표 선정(2015~2017)
- ▶ 폐렴구균 접종 미완료자 대상자관리 시스템 구축(2015. 12.)
- ▶ 대상자관리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자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연계(2017.)
- ▶ 고위험군 어르신 건강보호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2020. 6.~)

2 사업 추진실적

- ▶ 접종대상 : 65세 어르신(1955. 1. 1. ~ 12. 31. 출생자)
- ▶ 접종실적
 - 1955년 출생자 접종률 : 44.2%(307,776건)
 - ※ 2020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된 자료로 지연보고 등으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3 사업 목표

사업목적

노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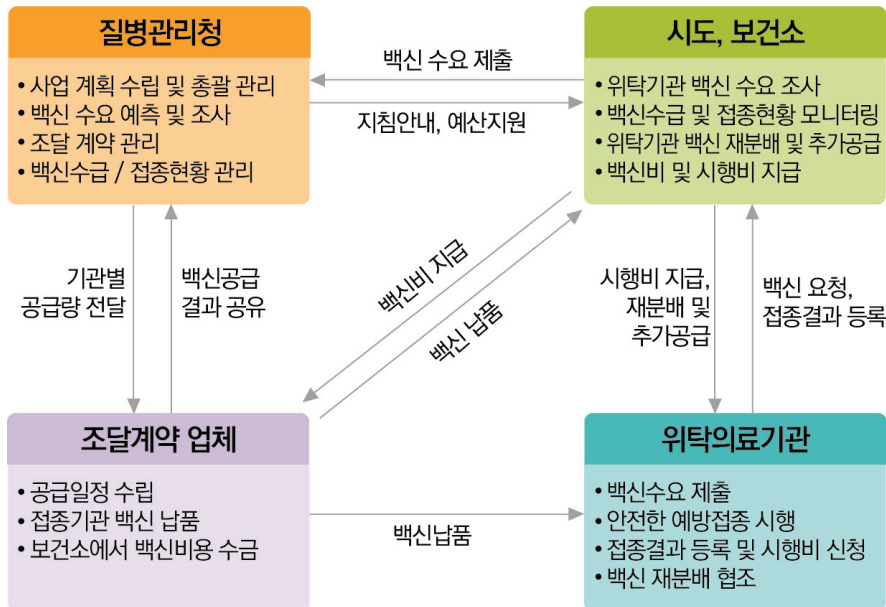
사업목표

예방접종률 향상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5px;">이상반응 발생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반응 사전 안내 • 예방접종 안전 수칙 준수 • 이상반응 감시체계 유지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70ad47;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5px;">예방접종 효과 극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질환자 담당주치의 상담안내 • 중복접종 방지 • 권장 접종간격 유지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a55a8;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5px;">안정적 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백신수급 관리 • 지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계획 수립 • 접종수요에 적합한 인력투입
---	--	--

4 사업 내용

- ▶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6. 12. 31. 이전 출생자) 중 PPSV23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적용
 -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가능, 피접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
- ▶ 접종시기 및 지원내용: 연중 무료접종가능
- ▶ 접종백신 및 횟수: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무료 접종
 -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과 동일한 사전 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 ▶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 및 위탁의료기관
- ▶ 사업체계



5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질병 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계획 수립/ 사업 관리지침 개발/ 사업 예산관리 ○ 백신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조달계약 체결/ 백신 수급 모니터링 ○ 예방접종 시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예방접종 담당자 교육자료 작성/ 교육자료 배포/ 접종 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지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시스템 이용법 안내 -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수료증, 참여확인증 • (신규 참여 의료기관) 위탁계약서, 참여확인증, 통장사본, 교육수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서류 모두 보건소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실시 확인 및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연 1회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방문점검으로 확인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 ○ 백신 수급 관리(수요조사, 사용 모니터링, 회수 및 재분배, 잔량관리 등)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
위탁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체결) 위탁계약서, 참여확인증, 통장사본, 교육수료증 ○ 피접종자 본인 확인,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안내 ○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설명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한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후 귀가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한 경우 지체없이 이상반응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실시 및 보건소 방문점검(연 1회 이상) 협조 ○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 백신 관리(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협조 등)

6 사업 참여 방법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신청(위탁계약 체결)

-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전 사업 관련 교육 이수 필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이수
 - ※ 2021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기간: 2021. 3. 2. ~
 - ※ ‘2020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을 서면으로 진행한 경우(2021. 3. 2. 이전 위탁사업 참여기관) 2021. 3. 2. 이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 ▶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 참여 의료기관
 - ①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 ②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확인증(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 별첨.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참조(p.106), 2021. 3. 2.부터 작성 가능
 - 신규 참여 의료기관
 - 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② 통장사본
 - ③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 ④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관할 보건소 등)가 변경된 경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체결
 - ※ 관할 보건소는 동일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정보에서 주소지 수정
 - ※ 의료기관 폐업 시 폐업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재계약(계약 갱신)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관리
 - 관할 보건소는 동일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정보에서 주소지 변경
 - 위탁계약 기간(5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교육이수 여부 확인 후 재계약 체결
 - ※ 위탁계약 갱신기간과 관계없이 매 2년마다 반드시 교육이수, 교육시기 도래 1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으로 안내
 - ※ 교육 미이수시 비용신청 불가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갱신 후 비용신청 가능

○ 계약해지(참여 철회)

-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철회 시 제출 서류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만 참여한 경우)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만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
 - 어린이 또는 성인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
 - ①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만 철회(다른 사업 유지):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의 어르신 폐렴구균 시행여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수정 제출
 - ② 참여 중인 국가예방접종 사업 모두 철회: ‘계약해지 신청서’ 제출
- ▶ 참여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참여 철회 같음

☞ (참고)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의료기관 정보 연계

-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 폐업 처리
- 폐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므로 예방접종 기록 등록이 누락된 내역에 대해 추가 등록(비용상환 신청) 불가
 - 폐업이후 전산등록 누락된 접종력은 비용청구 불가하므로,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 기록 등록을 완료하도록 함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위탁 계약 해지 및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해지

7 PPSV23 백신 공급 및 관리

○ 백신 구매 및 공급

- ▶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공급방식과 동일한 총량구매-현물 공급방식
 -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백신을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매
 - 백신 구매 후 분배기준, 보건소 수요량에 따라 조달계약 업체를 통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급
 - 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폐기(파손), 오접종, 중복접종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대체하여 접종 또는 반납

○ 백신 공급 절차

- ▶ 수요조사 및 확정
 - 질병관리청 역할
 - ① 백신 구매량을 확정하기 위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폐렴구균 백신 수요 조사
 - ② 시도에서 제출한 백신 수요량, 목표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량 확정
 - 보건소 역할: 지역내 접종 대상자, 2021년 접종 목표(70.0%), 전년도 공급량·접종건·잔여량·가용예산·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사업량 시·도에 제출
 - 시·도 역할: 보건소에서 제출한 백신 수요량 검토 및 결정 후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 ▶ 조달계약
 - 질병관리청 역할: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조달계약 체결 및 체결 결과를 시·도 및 보건소 공유
- ▶ 백신 공급
 - 질병관리청 역할: 분기별 보건소·위탁의료기관 구매계약량 확인, 공급가능량, 보건소 지역 내 재고 등을 고려해 공급량 결정하고 조달계약업체에서 일괄 공급

※ 백신 수입상황에 따라 공급주기 변경 가능

▶ **백신 재분배**

- 위탁의료기관 역할: 사업기간 중 보건소가 기관별 접종건, 백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
- 보건소 역할: 사업기간 중 질병관리청의 기본원칙* 및 사업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백신 재분배 실시
 - * 미접종자 대비 잔여 백신이 과다한 경우 백신 회수, 백신이 부족한 기관(또는 지역)으로 백신 공급
- 시·도 역할: 필요시 질병관리청의 기본원칙 및 사업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내 보건소 백신 재분배 실시
- 질병관리청 역할: 필요시 기본원칙 및 사업지침에 따라 시·도 및 보건소 백신 재분배 실시

○ **백신 입·출고 내역 확인**

- ▶ 의료기관 정보 우측 하단 ‘기타 예방접종사업 정보’에서 입·출고 내역 확인 가능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의료기관 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 폐렴구균 이력보기
 - ※ 2021. 3월 이후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변경할 예정이며, 추후 안내 예정

○ **위탁의료기관 폐업시 백신 처리 방법**

- 폐업(전)확인 된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 잔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할 예정

8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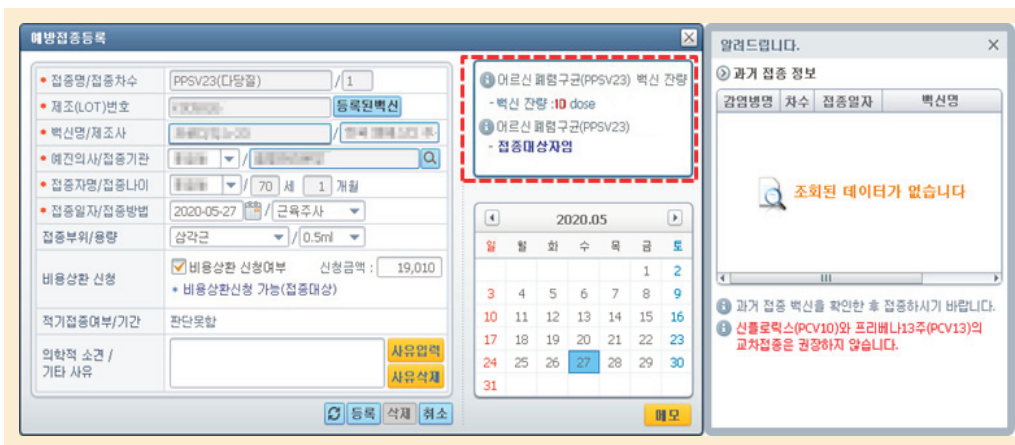
- ▶ **접종백신 및 횟수:**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에서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 이전 접종으로부터 5년경과 및 65세 이후 PPSV23 1회 접종

- ▶ 접종부위 및 방법: 상완 외측면에 피하 또는 삼각근에 근육주사
- ▶ 동시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또는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 금기사항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 ※ 가벼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백신접종 금기사항이 아님

9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시행 절차

- ▶ 피접종자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과거 접종력 확인 및 접종간격* 등을 고려하여 접종 시행 결정
 - * PPSV23 → PPSV23 5년, PCV13 → PPSV23 1년(최소 8주), PPSV23 → PCV13 1년



[그림] 피접종자의 접종 가능여부 확인

- ▶ ‘예방접종 예진표’와 ‘예방접종 후 안내문’ 배부
 -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
 - ※ 부록Ⅲ. 예방접종 후 안내문 참조(p202)

- ▶ 예진 및 주의사항 설명
 - (기존 진료환자)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 확인, 접종 후 국소 이상반응(통증, 부종 등) 및 주의사항 설명
 - (처음 의료기관 방문자)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 상담 후,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 확인, 접종 후 국소 이상반응(통증, 부종 등) 및 주의사항 설명
 - ※ 별첨. 기저질환자 확인목록 참조(p101)
- ▶ 접종실시 및 전산등록
 - 과거 접종력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실시 및 전산등록
 - ※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일 전산등록
- ▶ 이상반응 관찰
 - 접종 후 20~30분간 보건소에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
 -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리 장비 구비, 후속조치 체계마련 및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 별첨Ⅲ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조

10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 관리원칙

1. 거동불편자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2. 보건소는 거동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

- ① 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중인 고령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촉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
- ③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기관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접종
- ④ 사회복지시설 촉탁의가 개인자격인 경우와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
 - *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무료로 협조할 경우 촉탁의를 통한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
- ⑤ 사회복지시설 촉탁의는 가급적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권고

○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

- ▶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정의
 -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3조의2)
- ▶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중 촉탁의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별 사업 방식

구분	촉탁의 유무	촉탁의 소속	사업 방식
요양병원	-	-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있음	의료기관 소속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부터 백신 배정 • 촉탁의가 주도하여 예진, 접종, 등록 실시 • 예방접종 시행비는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상환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 두 기관 간의 거리·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접종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개인자격	- 신청기관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접종관리 * 촉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촉탁의의 예진/접종이 가능하나,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
	촉탁의 없음	-	-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관리*

* 보건소 접종관리: ①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 ③ ①의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이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 상환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 요양병원

-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가급적 전산시스템에 **당일 등록**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 등을 통하여 당일 입력

- 예방접종 비용상환 방식은 일반 위탁의료기관 상환방식과 동일하며,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시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사회복지시설

- 촉탁의가 위탁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일반 위탁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및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하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촉탁의가 개인자격이거나,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 후 접종기록 전산등록

○ 촉탁의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접종 의 백신 관리

-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백신 예상수요량은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 간 상호 협의하여 제출 및 배정
 - 단,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예상수요량 제출 및 배정을 권고함

○ 촉탁의 예방접종의 기본원칙

- ▶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

안전한 접종 환경: 백신 콜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 장소 확보, 응급처치세트 및 앰블런스 등의 안전장비 구비

1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 경미한 반응은 30~50% 발생
 - ※ 대부분 48시간 이내 소멸
 - 발열, 근육통, 중증도 이상의 국소반응은 1% 미만으로 나타남
 - 심각한 전신반응은 드물
 - ※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신청 등 이상반응 관련사항은 p35 참조

12 위탁의료기관 점검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 ▶ 위탁의료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전자문서) 제출
 - ※ 위탁의료기관의 점검표 작성·제출은 예방접종실적 등과 관계없이 매년 시행

▶ 자율점검표 작성·제출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버튼 클릭하여 작성 → [확인 및 서명] 버튼을 클릭 → 서명 후 저장

○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

▶ 위탁의료기관별 연 1회 이상 보건소 방문점검 실시

- 예방접종 및 상담시행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방문점검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 점검기간 내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가능
 - ※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 시 수시점검 가능

[별첨자료]

I 주요서식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95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97
〈별첨 I-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98
〈별첨 I-4〉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99
〈별첨 I-5〉 예방접종 예진표	100
〈별첨 I-6〉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101
〈별첨 I-7〉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102
〈별첨 I-8〉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102
〈별첨 I-9〉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	103
〈별첨 I-10〉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104
〈별첨 I-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5
〈별첨 I-12〉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확인증	106
〈별첨 I-13〉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107
〈별첨 I-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08
〈별첨 I-15〉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114
〈별첨 I-16〉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의료기관)	114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 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	---

제2조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사용사업체명: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제5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확인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전자(또는 서면)-00-0000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1. 의료기관명 :
-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첨 I-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결핵	BCG(피내용)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Hep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10(단백결합백신 10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CV13(단백결합백신 13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PSV23(다당질백신 23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IJEV(약독화 생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V (0.5mℓ)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민간개별구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13~18세 어린이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대표자			(서명)

<별첨 I-4>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제 2010100001 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소속

직 근 : 의사 (면허번호:1234567)

성 명 : 홍길동

소재지 : 소재지



귀하는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2020)」)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1.1.

질병관리청



〈별첨 I-6〉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뒷면)

○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군	질환명
정상면역성인	만성 심혈관 질환(고혈압 제외) ¹⁾ 만성 폐 질환 ²⁾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알코올 중독 간경변을 포함한 만성 간 질환 흡연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을 가진 자 ³⁾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비장 기능장애 및 비장제거술
면역저하자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⁴⁾ HIV 감염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백혈병, 림프종 전신적인 약성 종양 면역억제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전신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 고형 장기 이식 다발성 골수종 호지킨병 조혈모세포이식

1)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증 포함

2)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및 천식 포함

3)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나 면역저하자는 1차 다당 백신 접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차 다당 백신 접종이 권장됨

4)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별첨 I-7>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 재 지)			
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자로 수령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시행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시행여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를 철회할 경우 참여 확인증(시행여부)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별첨 I-8>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p>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중 [<input type="checkbox"/> 가다실, 또는 <input type="checkbox"/> 서바릭스]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p> <p>제2조(공급방법) “갑”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을”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 한다.</p> <p>제3조(보관 및 수송) “을”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생물학적제제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p> <p>제4조(백신비 지급) “갑”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정부 조달계약에 의해 결정)로 지급을 하며, “을”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p> <p>※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갑”은 “을”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 “갑”이 공급 요청하고 “을”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이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외 백신은 국가에서 비용상환이 불가하므로, “갑”은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을”에게 백신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p>제5조(백신공급기관 변경) “갑”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을”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p> <p>제6조(지원사업 수행) “갑”은 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협약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위 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p> <p>제7조(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운영세칙)에 따른다.</p>	
20 년 월 일	
“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 연 락 처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대 표 자 : (인)	“을” 백신공급기관 주 소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 I-10〉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 재 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정보			
항 목	시 행 여 부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항원 · 항체검사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대표자</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p>			

〈별첨 I-12〉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사업 대상	백신종류	시행여부
인플루엔자	어르신	IIV(0.5ml)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어르신	PPSV23(0.5ml)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별첨 I-13>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의료기관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대 표 자		연 락 처	
	해지사유 및 요청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본 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2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해지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div>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인증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2)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백신을 사전에 구비해둔다.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지원내용 및 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4)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5)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6)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7)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하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하고 있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진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해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5)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		
6) 예방접종 실시 전 반드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8)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한다.		
3. 접종실시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한다.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간 눌러준다.		
4. 접종 후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한다.		
5.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 보관기간:5년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은 수정한다.		
3) 예방접종기록은 가급적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6. 비용상환		
1) 국가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피접종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접종 후 전산등록을 지연하여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참여 백신의 시행정보가 변경된 경우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현행화 하여 비용상환 신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2년		
3)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견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전용 냉장고」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의 안쪽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7)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를 2~8℃유지한다.		
8)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9) 과거 2년 동안의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최소 2년 이상 보관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이 냉장고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12)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분리하여,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분 하고 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있다.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리플렛과 건강 상담 대상자용 안내문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3) 상담은 반드시 예방접종과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두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4) 상담은 예방접종과 동시에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기관이 임의로 두가지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공 불가		
5) 상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6) 상담 전 대상자에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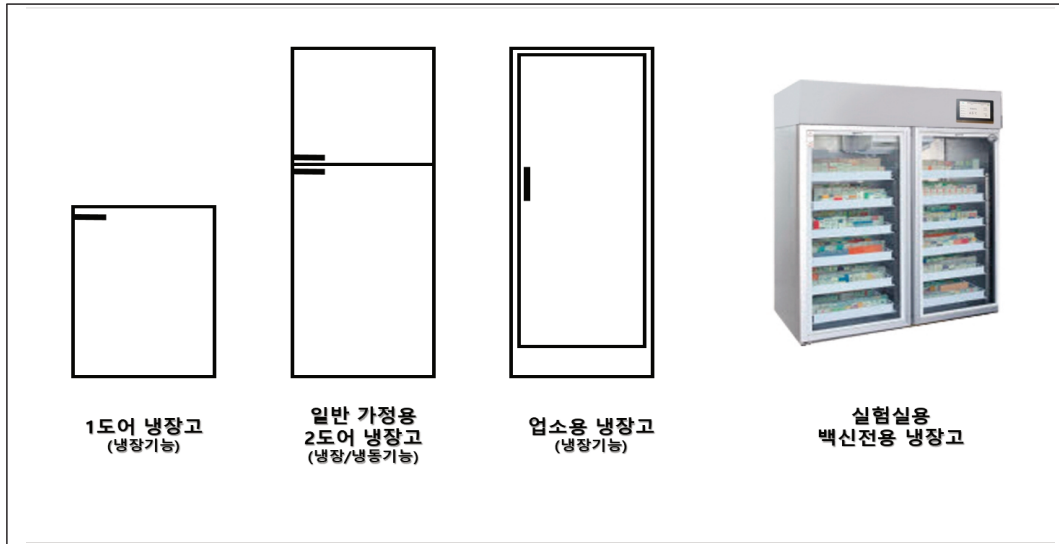
7)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의 의료인 작성 항목을 작성하고 있다.		
8) 상담흐름도(Flowchart)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9) 상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향후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0) 상담 시 사춘기 성장발달과정과 무월경·월경이상·월경통 등 여성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월경 관련 질환 등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1) 대상자가 작성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체크리스트)'를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		
12) 대상자가 상담을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력 등록 시 '상담안함' 항목을 체크하고 있다.		
13) HPV 예방접종 및 상담은 전액 무료로 시행됨을 알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일반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기준, 예방처치 일정 등)을 잘 알고 있다.		
2) B형간염 산모에게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안내 시 활용하고 있다.		
4) 사업대상 산모에게 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구득하고,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단, 예방처치 관리 일정이 5년 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관리 종료 시까지 추가보관)		
5) 보호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산모 외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6)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산모의 임신 중(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검사결과(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를 제출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산모검사 결과는 시스템 업로드		
7) 기초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 재접종, 재검사 등 권장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면역글로블린 투여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출생 후 12시간 내 HBIG 및 B형간염 백신 접종을 부위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출생 후 12시간 내 투여하는 HBIG과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분만시기(주말/심야 등)에 관계없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3)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숙아의 정의는 출생 시 체중 2Kg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대상자임을 알고 있다.		
4) 대상자 중 미숙아·저체중아에게도 출생 12시간 내에 HBIG 투여를 실시하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접종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경우 총 4회접종이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2)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대퇴부 전외측에 실시하고 있다.		
3) 접종/검사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거 내역 및 예방처치일정을 확인하여 다음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기초접종 완료 후 면역획득여부 확인을 위해 항원·항체검사는 꼭 진행되어야할 단계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항원항체 검사관련 점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대상자의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는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있다.			
2) 면역획득 확인을 위한 1차 항원·항체검사는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생후 9개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 1차 항원항체 검사 권장시기: 생후 9~15개월			
3)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에 따른 다음 일정(사업 종료/재접종/재검사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4)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 값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지를 업로드하고 있다.			
5) 감염으로 인한 사업종료 대상(보호자)에게 배포할 감염관리 안내문(보호자용)을 비치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종 실시기준 등)을 잘 알고 있다.			
2)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PPSV23) 백신은 현물공급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3)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해당 절기 사업대상 및 지원기간 등 사업 내용을 알고 있다.			
2) 어르신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별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3)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4)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인플루엔자 사업은 백신 공급 방식 및 사업시기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어르신) 국가 총량구매, (어린이, 임신부) 의료기관 자체구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20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직급:	성명:	(서명)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참고)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종류



<별첨 I-15>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월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의료기관 _____

접종명	총 등록건수	비용상환 신청건수	비용상환 심사결과				총 상환금액 (원)
			상환결정	예외인정	상환불가	미결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별첨 I-16>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의료기관)

()년도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표 시 과 목		연 락 처	
의 료 기 관 주 소			
지급내역			
구분	지급완료건수	지급금액	
합계			
※ 예방접종 비용 환수 등으로 인한 접종력 삭제 또는 접종력 수정 등으로 인해 지급 내역서의 출력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별첨자료]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방법	117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23
3.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5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7
5.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41
6.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46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가입 및 예방접종 권한 신청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IR) 신규 가입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첫 페이지의 사용자 가입신청 →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인증서, 사용자정보 등록 → 권한신청 단계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 항목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가입신청 및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 진행 가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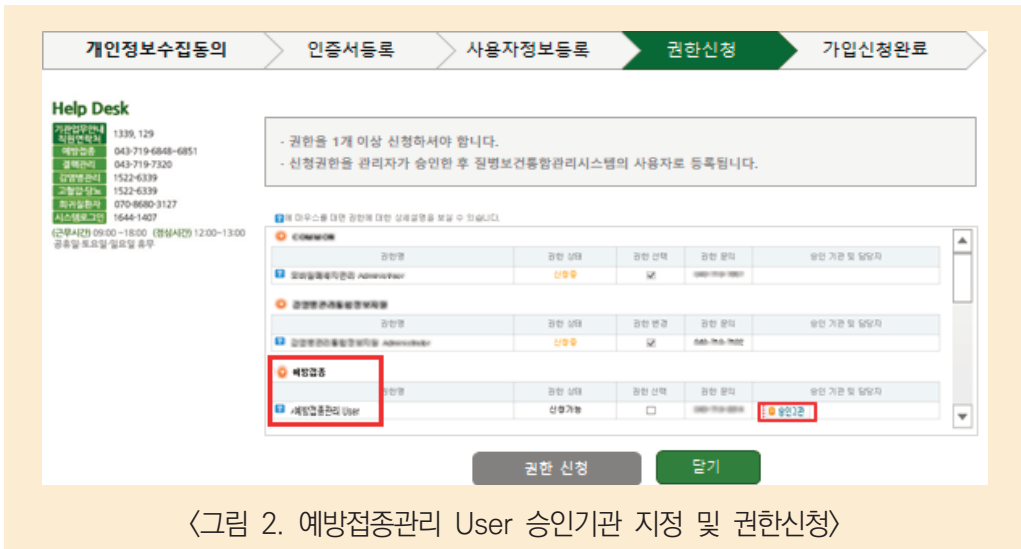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1644-1407(HelpDesk)



〈그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 가입신청〉

② 인증서 및 사용자정보 등록 후 ‘권한신청’ 단계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 항목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하고 권한 신청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되고 가입이 완료됨



〈그림 2. 예방접종관리 User 승인기관 지정 및 권한신청〉

③ 권한 승인 및 가입 완료 후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의료기관의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 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그림 3.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IR) 기존 사용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화면 우측 상단의 권한/부가정보 → 예방접종업무 권한 상태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 진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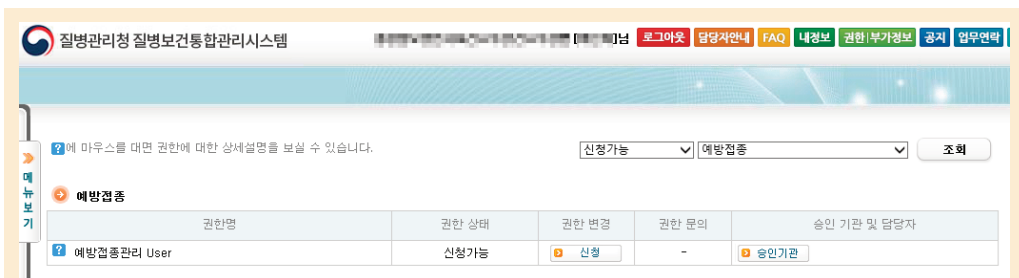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의 ‘권한/부가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림 4.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1)〉

② ‘권한 및 부가정보’ 메뉴의 권한그룹선택에서 ‘예방접종’ 선택 또는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항목’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한 후 ‘권한 신청합니다.’

*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



〈그림 5.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2)〉



〈그림 6.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3)〉

- ③ 권한승인 후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의료기관의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 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그림 7.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 예방접종관리업무 계약 신청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전자계약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 ‘계약신청관리’ 메뉴의 ‘기관정보’에서 의료기관 인증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를 등록합니다.



〈그림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기관인증서 등록〉

- 2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등록합니다.



〈그림 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계약신청〉

- 등록절차: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및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②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등록 → ③ 통장사본 이미지파일 업로드 → ④ 교육과정 이수증의 수료번호(10자리) 입력 및 검증버튼 누른 후 저장 → ⑤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 후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백신 등록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매상 협약서 사본 이미지파일 추가등록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확인증' 등록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정보 정보 확인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완료한 의료기관(서면계약기관 포함)은 다음 절차에 따라 위탁계약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단, 서면계약기관은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이후 확인 가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 확인

※ 위탁사업 정보 수정은 계약신청관리 메뉴에 문서 등록 후 관할 보건소 승인을 받아야 가능

계약정보

번호	백신명	계약일
1	BCG(피내)	
2	B형간염	
3	DTaP	
4	Td	
5	Tdap	
6	폴리오	
7	DTaP-IPV	
8	shb	

HPV 조달기관 정보 위탁계약일, 참여백신정보

HPV(4가)도매상
HPV(2가)도매상

임상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정보

계약일자

마르신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 정보

계약일자

기타 예방접종사업 정보

백신명	계약일	보건소시작일	보건소종료일
BCG(경피용)			

〈그림 10.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정보 확인〉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며, 처음 접속할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클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성

-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② 당월 비용상환내역 ③ 신생아 임시번호 접종자의 인적정보 변경내역 및 행안부 오류내역 ④ 예방접종등록 메뉴 바로가기 ⑤ 최근 6개월간의 비용상환 내역 ⑥ 공지사항 ⑦ 즐겨찾기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interface of the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It features a top navigation bar with a menu icon and the current time (1:59:28).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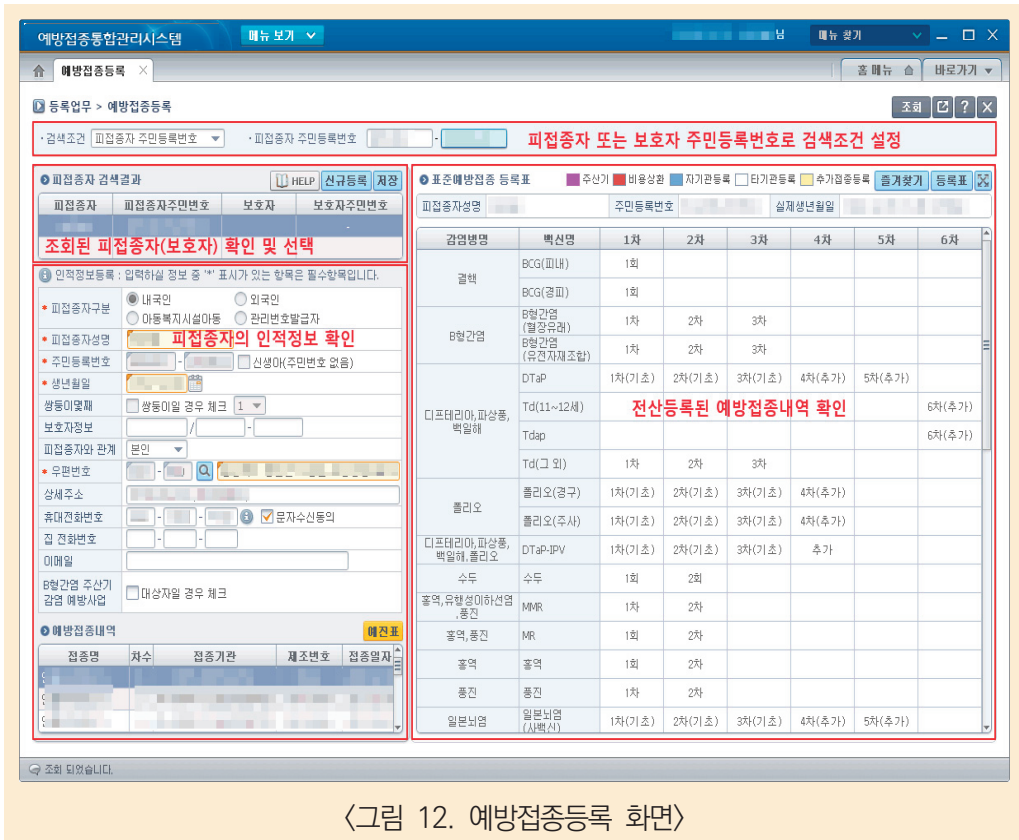
- 1. 의료기관정보**: Displays hospital information including the name, address, and various accreditation numbers (BCG, HepB, DTaP, etc.).
- 2. 2020년 11월분 비용상환 신청 지급 현황**: A table showing the status of cost reimbursement applications for November 2020. The table has columns for vaccine type, application status, review status, payment status, amount, and reimbursement status.
- 3. 인적정보 변경내역**: A table for tracking changes in personal information of vaccinees.
- 4. 예방접종등록**: A section with buttons for registration and management.
- 5. 최근 6개월간 비용상환 내역**: A bar chart showing the trend of cost reimbursement over the last six months, with data points for each month.
- 6. 공지사항 및 지침**: A list of notices and guidelines, including information about reimbursement rates and procedures.

<그림 1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홈 화면>

○ 예방접종내역 등록

① '예방접종등록'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또는 좌측의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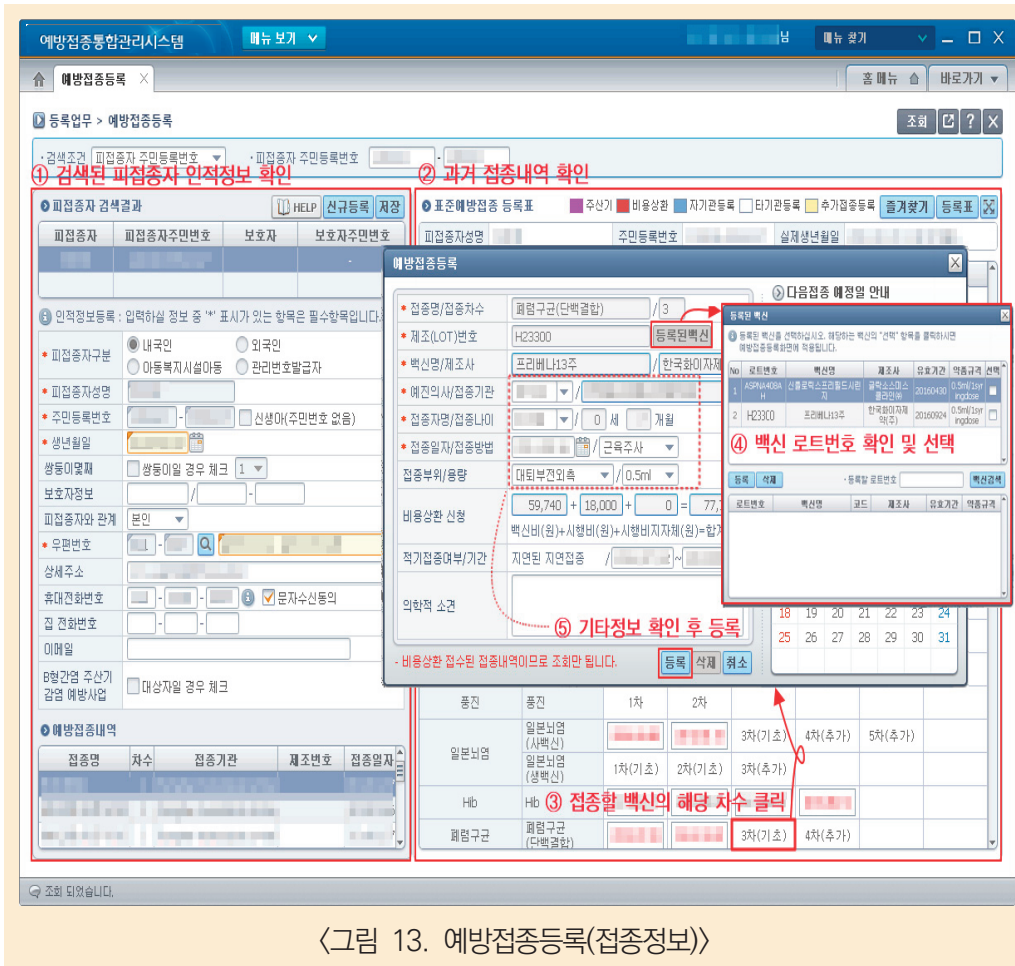


〈그림 12. 예방접종등록 화면〉

②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하며, 인적정보가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피접종자 인적정보를 조회합니다.

- ※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는 반드시 입력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보호자(모를 원칙으로 함) 인적정보를 함께 등록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적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 가능
- ※ 휴대전화번호 등록 시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할 경우 다음접종 사전 안내문자 자동 전송

- ③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등록할 백신 차수를 선택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합니다.
※ 접종 전 반드시 과거접종 내역 확인 필수
- ④ 팝업창에서 '등록된 백신'을 선택하고, 기타정보(접종일자, 접종방법, 접종부위, 용량 등)를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등록 완료시 접종일자가 표기됨).



※ 접종내역 등록 시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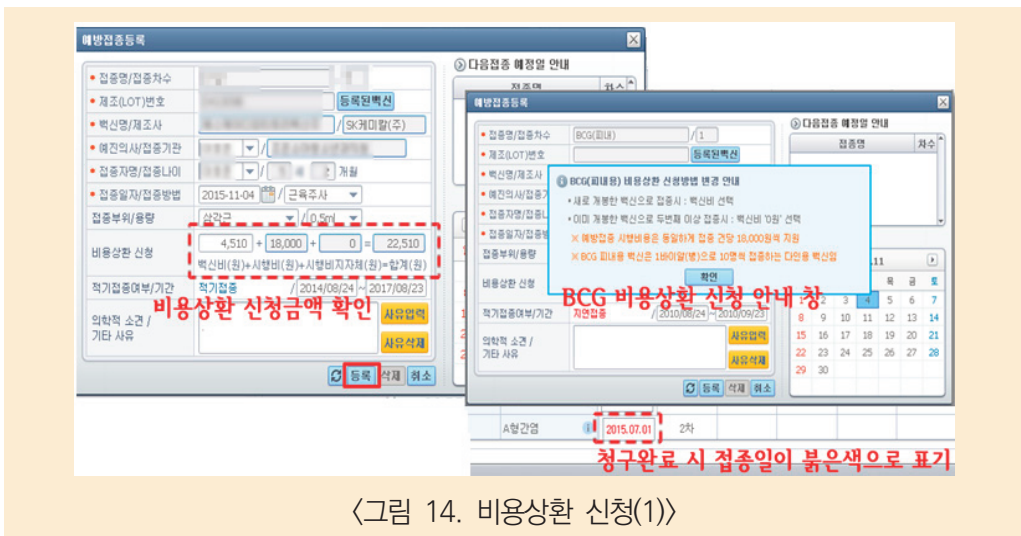
- 재접종(동일한 백신, 동일한 접종차수) 기록 등록은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DTaP 접종이 자연된 만 7세 이상 대상자가 Td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Td(그 외)'란에 등록

○ 비용상환 신청

① 접종기록 등록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비용상환 신청’ 항목의 비용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됩니다.

※ 비용상환 신청금액은 접종별로 자동입력되나, 피내용 BCG 백신(다인용)의 경우 백신을 개봉하고 첫 번째 시행한 건에 대해 백신비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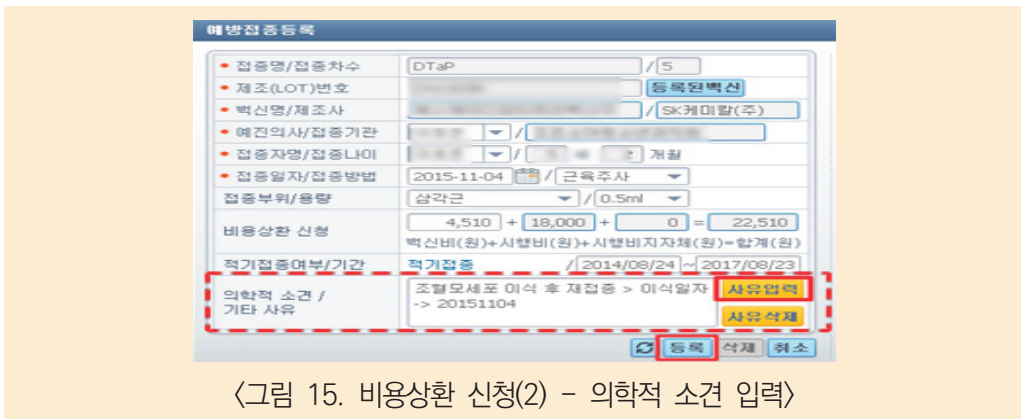
※ 비용상환 신청되면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해당 접종기록에 빨간색 날짜로 표시됨



〈그림 14. 비용상환 신청(1)〉

②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재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은 해당 접종차수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등록하며, 타당한 의학적 소견으로 재접종할 경우 ‘의학적 소견’의 사유를 선택·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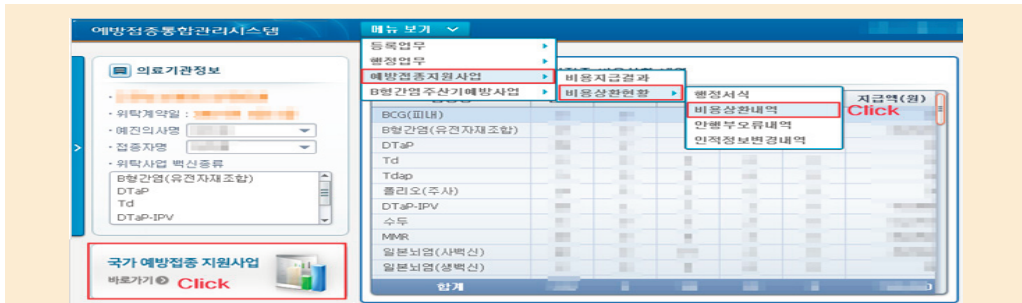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



〈그림 15. 비용상환 신청(2) - 의학적 소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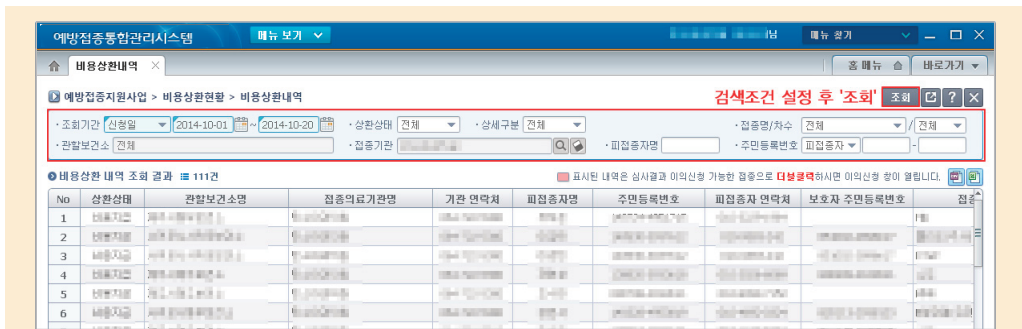
○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 1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 또는 메인화면 좌측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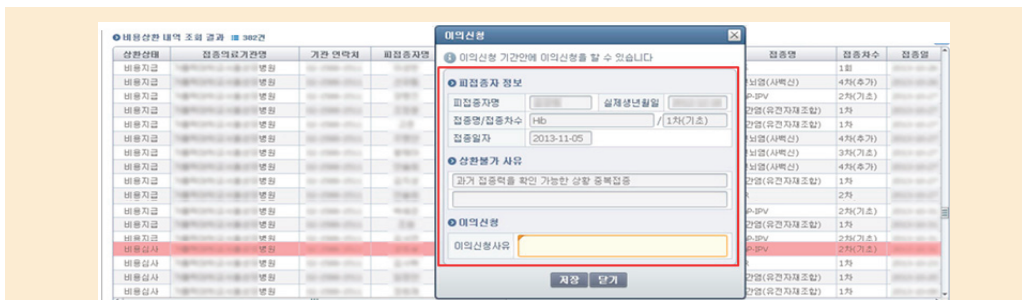
<그림 16.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1)>

- 2 '비용상환내역'에서 상환신청내역의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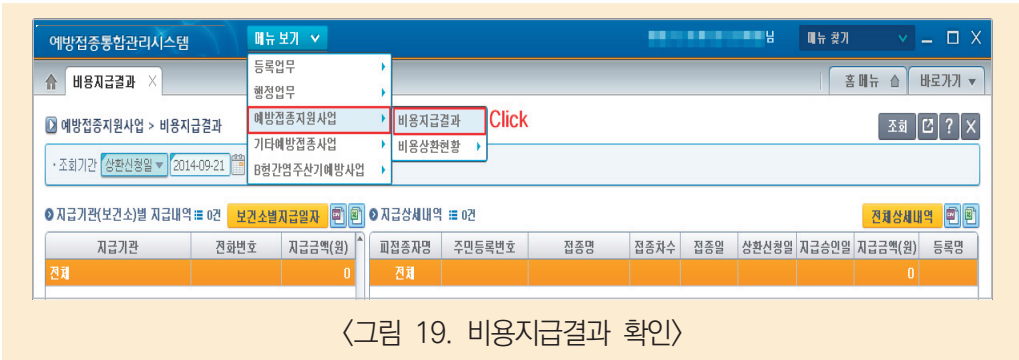
- 3 상환불가(분홍색으로 표시)내역의 이의신청은 해당 내역을 더블클릭합니다.
※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지급취소' 건은 재심사 불가)



<그림 18.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3)-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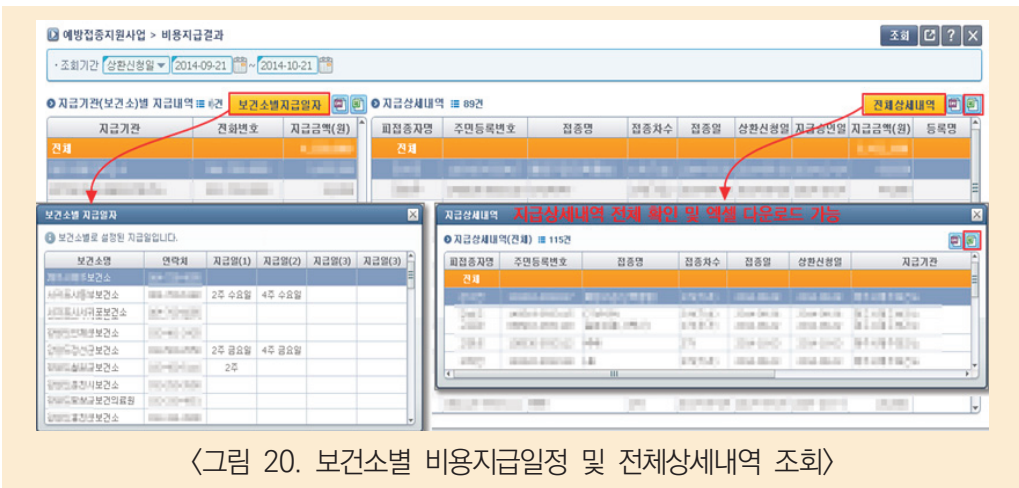
○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특정 보건소의 지급내역 조회는 조회 결과의 해당 보건소를 더블클릭합니다.
 ※ 지급승인일 :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게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그림 19. 비용지급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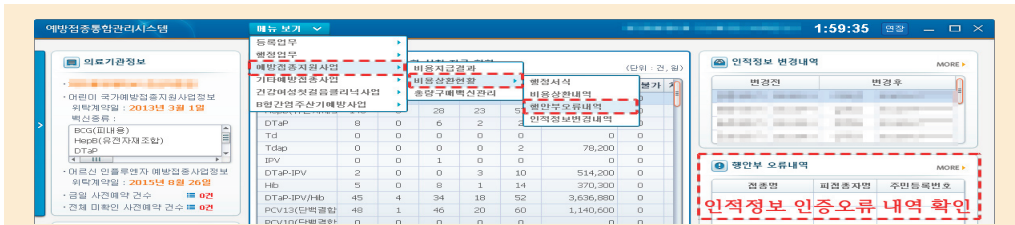
- ②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은 ‘보건소별 지급일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체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설정된 기간 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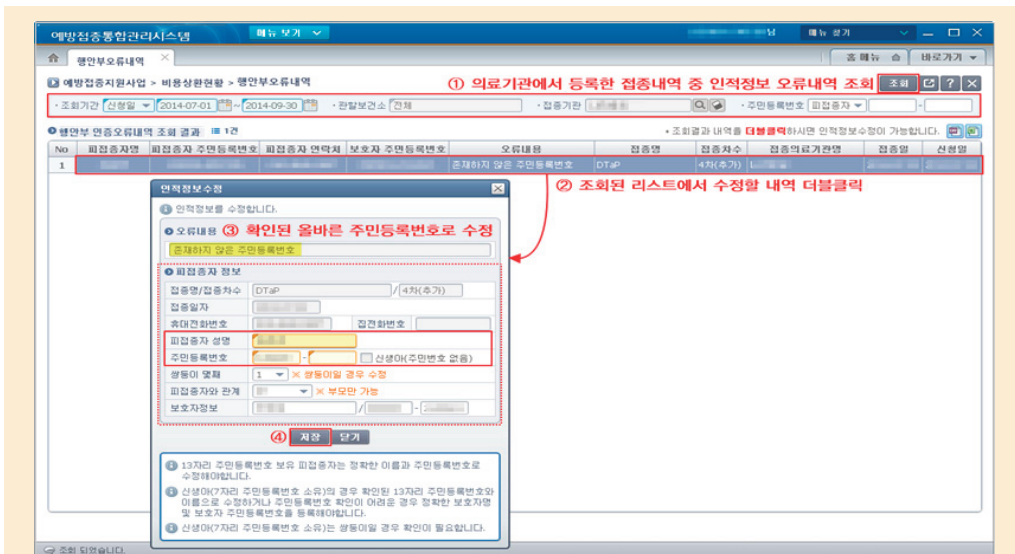
〈그림 20.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정 및 전체상세내역 조회〉

○ 주민등록번호 인증 오류내역 수정

- ▶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내역’ 또는 메인화면 우측 ‘행안부오류내역’에서 수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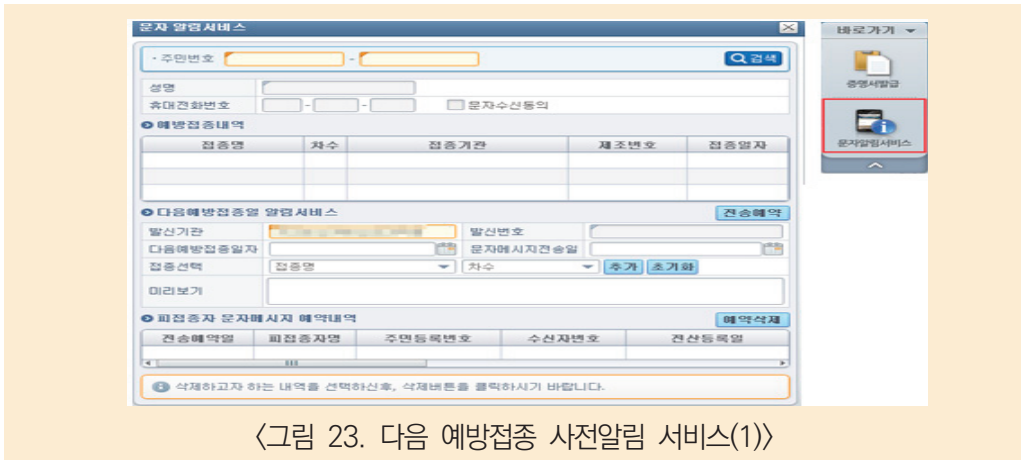
〈그림 21. 행안부 오류내역〉



〈그림 22. 오류 인적정보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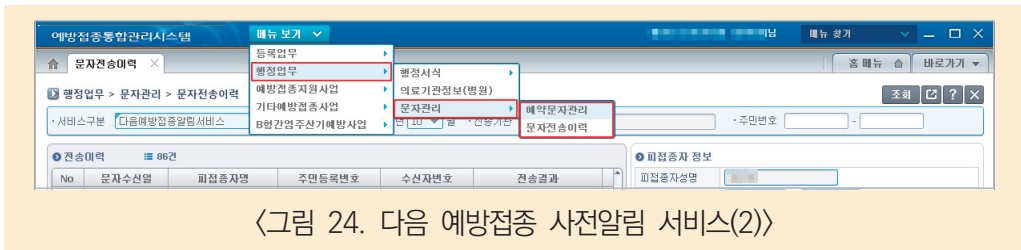
○ 다음 예방접종 문자 안내 설정

- ①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바로가기 → 문자알림서비스'에서 다음 예방접종 문자알림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인적조회 후 바로가기를 통한 문자서비스 메뉴이동 시 조회된 해당 인적에 대한 문자 알림 설정가능
 - ※ 다음 예방접종일정 미입력 시, 앞차수 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 접종당일(10:00 이후)에 접종시기임을 환기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



〈그림 23.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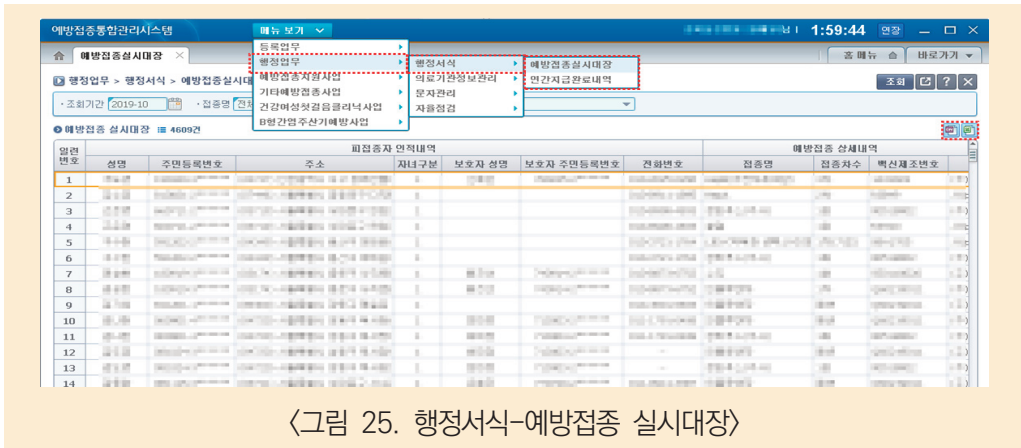
- ② 문자 발송 예약 및 전송 이력 확인은 '메뉴보기' → '행정업무' → '문자관리' → '예약문자관리', '문자전송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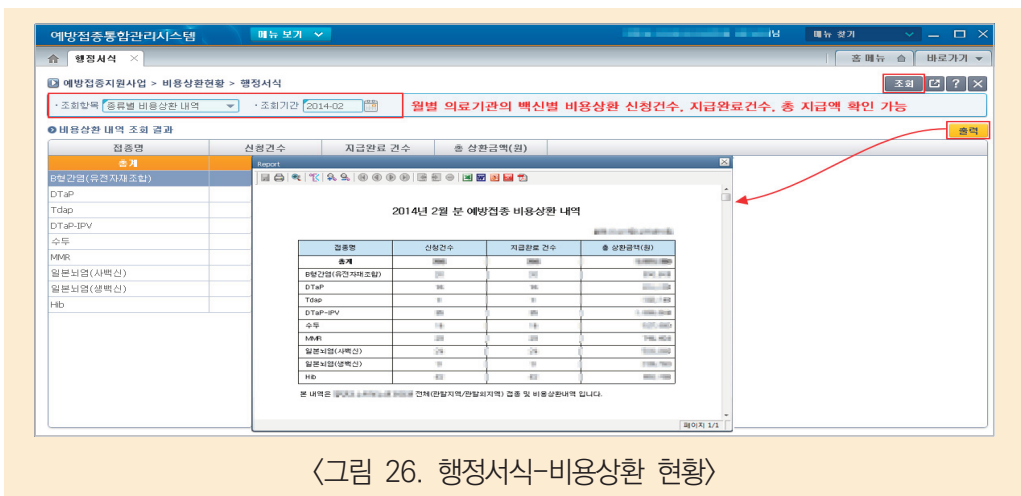
○ 행정서식

- ①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에서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다운로드하거나, 연간지급완료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25. 행정서식-예방접종 실시대장〉

- ②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정서식’에서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등 행정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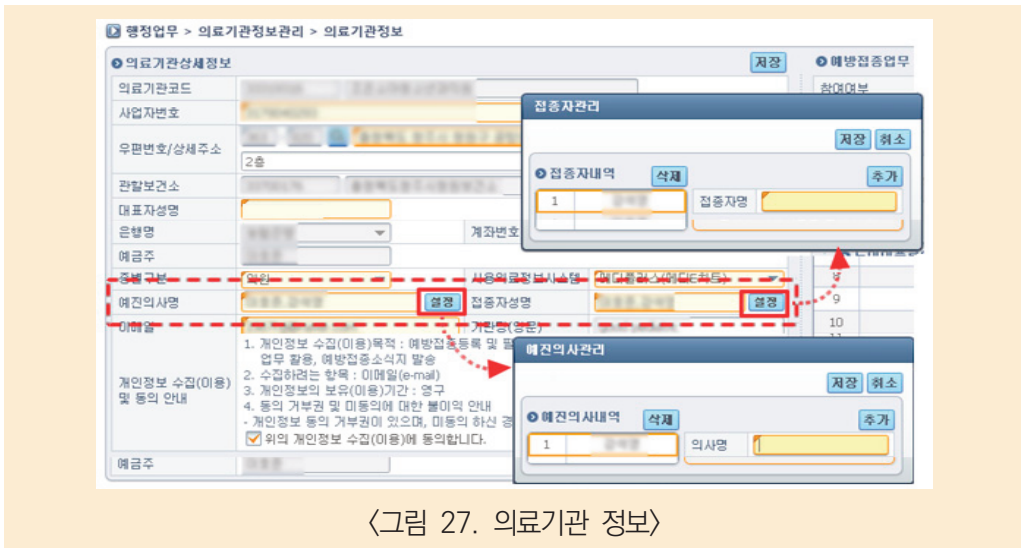


〈그림 26. 행정서식-비용상환 현황〉

○ 의료기관 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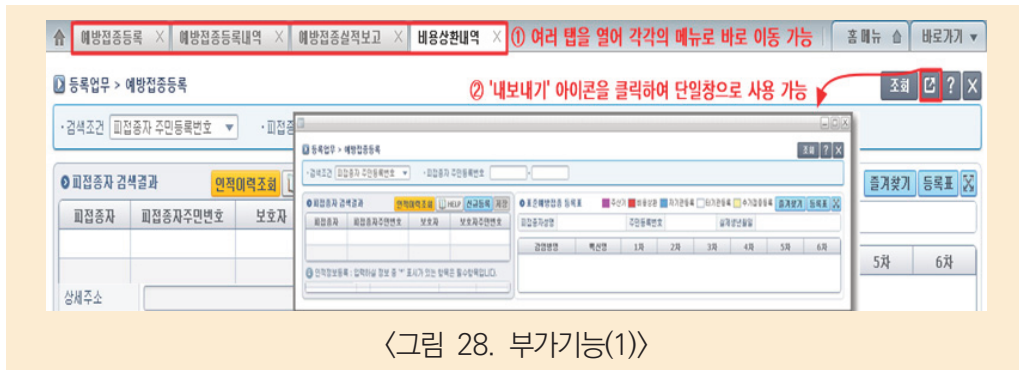
-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 등록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정보에서 예진 의사명과 접종자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 관련 사항(계좌번호, 위탁계약체결일, 위탁계약백신 등)은 계약신청관리 메뉴를 통해서만 수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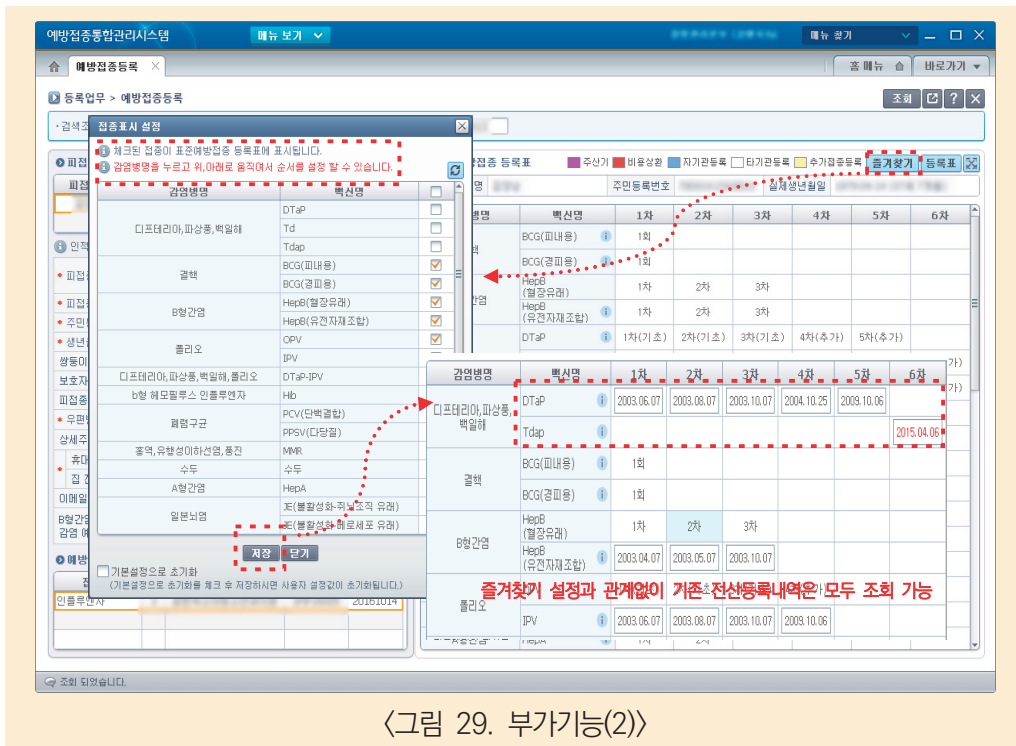


○ 부가기능

- ① 여러 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② 단일창('내보내기' 또는 'F3키')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② 실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설정하는 방법은 '예방접종등록 → 즐겨찾기'에서 백신을 선택하고, 위치를 조정하면 백신 배열 순서도 변경됩니다.
※ 즐겨찾기 기능 설정과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등록한 접종내역은 모두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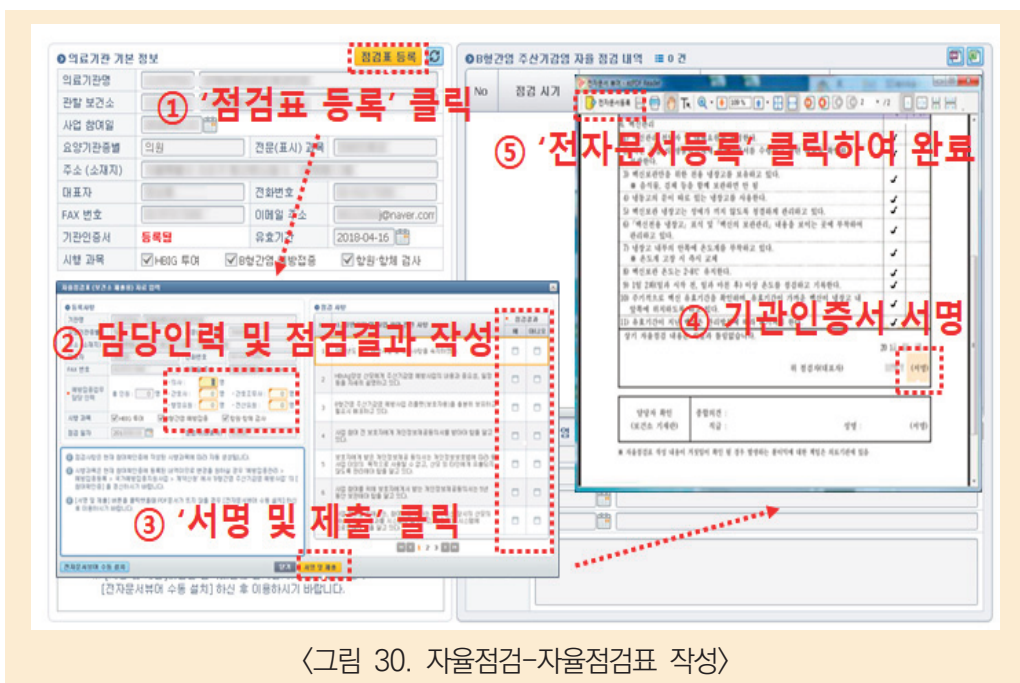
○ 자율점검

①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등록)합니다.

② 점검사항 작성 후 서명(인증서)합니다.

※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 해상도를 권장설정으로 변경 후 작성

※ 전자서명단계에서 진행불가 시 ‘계약신청관리’ 메뉴 또는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기관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 갱신한 후 재시도



〈그림 30. 자율점검-자율점검표 작성〉

③ 자율점검 등록 후 ‘조회’를 클릭하여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후 종료됩니다.

3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계약)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탭 클릭하여 신청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1. 통장사본을 업로드 (계좌정보 변경 시 재업로드)
 2. 도매상 협약서 사본을 업로드 (도매상 변경 시 재업로드)
 3. 교육 수료번호(10자리)를 입력 하고, 검증을 클릭
 4. 검증되면, 저장 버튼 클릭
 5. '확인증 등록' 버튼 눌러, 전자서명 후 등록

사업명	통장사본	HPV4가 협약서	HPV2가 협약서	서명 확인증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승인 완료	X	X	미등록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미등록	미등록	미등록	미등록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승인 완료	X	X	[승인] 승인 완료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사업	미등록	X	X	미등록

구분	과장명	수료번호	수료자명	수료일자	수료확인
기본					검증
보수 & HPV					검증

<그림 31.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매상 협약서 사본 업로드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캔한 협약서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 ※ 협약서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
 - HPV 백신은 지정된 도매상으로 비용이 지급되므로, 사업 참여 중간에 도매상 변경이 있을 경우 HPV 협약서를 다시 제출받아 도매상 정보를 수정하여 승인해야 백신 비용이 해당 도매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내역 등록

- 교육수료정보항목에 수료번호를 입력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여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이수내역을 등록합니다.

※ 신규 계약 시 기본교육 이수, 재계약시 보수교육 이수완료 필수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확인증 정보에 [확인증 등록(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 클릭하여 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하면 '승인완료'로 변경

※ 계약서 및 확인증 '승인완료' 후 사업 참여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정보 확인

- 각 사업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현황은 계약신청관리 화면 좌측 하단 내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승인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와 비용상환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승인일과 참여백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확인증 등록

이 화면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참여 최종 승인일

사업명	동장사본	HPV4가 함역시	HPV2가 함역시	사행 확인증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승인 완료	X	X	[참여] 승인 완료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미등록	미등록	미등록	미등록
아르산 인플루엔자 사업	승인 완료	X	X	[참여] 승인 완료
8항간염 주사기감을 예방사업	미등록	X	X	미등록

●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상세 정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 - 아르산인플루엔자 - 8항간염 주사기감염

● 동장사본 등록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상태: 미등록 | 등록정보: | 동장사본 확인: [선택]

등록: | 계약정보: | 동장사본 확인: [선택]

● HPV 동물상 함역시 사본 등록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HPV 4가: 미등록 | 등록정보: | 계약정보: |

HPV 2가: 미등록 | 등록정보: | 계약정보: |

● 교육 수료 정보 (수료번호 입력하여 수료확인란의 검증 버튼을 클릭 후 저장 바랍니다.)

구분	과점명	수료번호	수료자명	수료일자	수료일자
기본					[검증]
보수교육-HPV					[검증]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확인증 정보

등록상태: 미등록 | 등록정보: | HPV 확인증 확인: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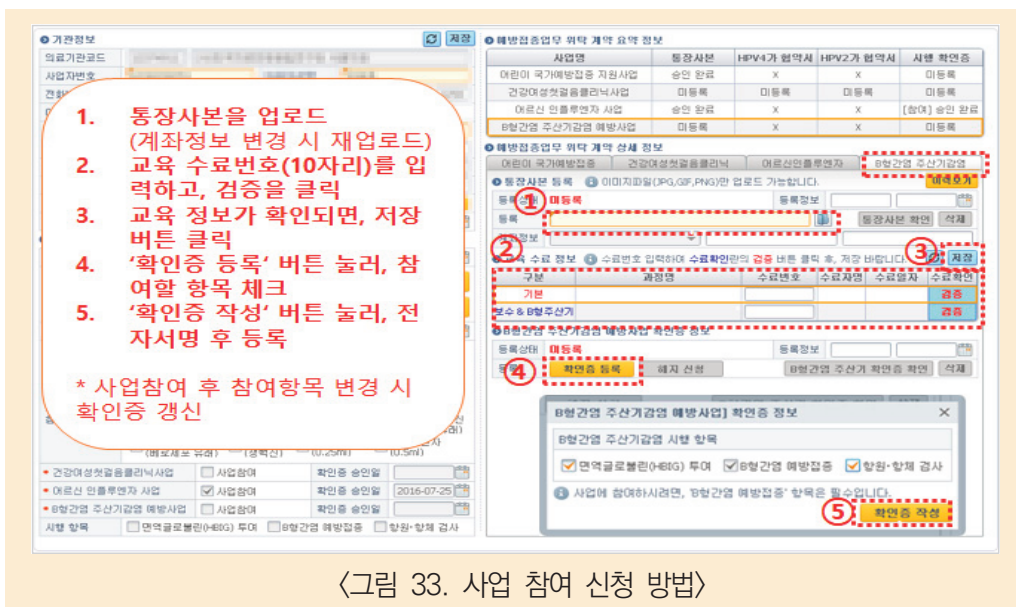
등록: [확인증 등록] | 해지 신청 | HPV 확인증 확인: [선택]

〈그림 32. 위탁계약정보 확인〉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 제출)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탭을 클릭하여 신청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 ▶ 통장사본 업로드, 교육이수내역 등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파일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여 통장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교육수료정보 항목에 수료번호 입력한 후 [검증]버튼 클릭하여 수료여부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교육이수내역 등록합니다.
 - ※ 2019년 이후 NIP 기본교육 이수내역 확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확인증 정보에 [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 클릭하여 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시 ‘승인완료’로 변경
 - ※ 계약서 및 확인증 ‘승인완료’ 후 사업 참여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그림 33.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승인 신청

▶ (신규 대상자 승인신청)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입력 및 결과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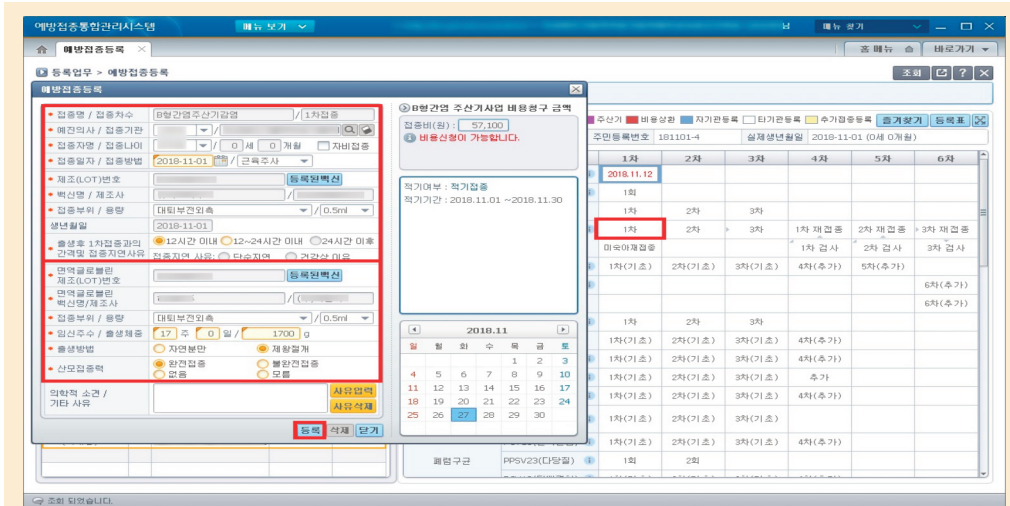
※ 대상자 승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차수 등록 가능

〈그림 34. 신규대상자 신청〉

▶ (쿠폰대상자 전환 승인신청) 2013년 이전 사업에 참여한 쿠폰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업참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관할 보건소로 대상자 전환승인 요청 후 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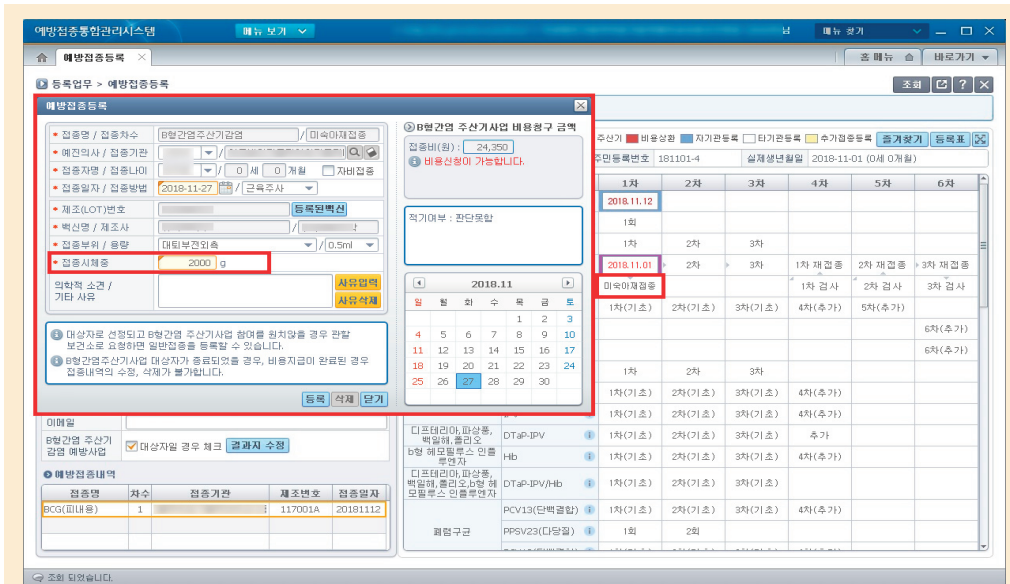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등록

- ▶ 출생 시 면역글로블린(HBIG) 및 B형간염 1차 접종



〈그림 35.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 등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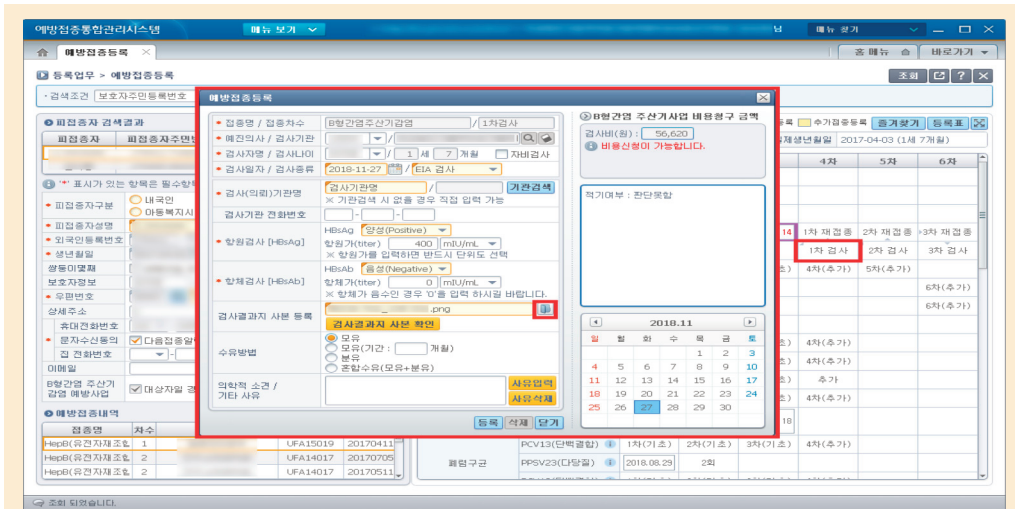
- ▶ (미숙아 접종) 미숙아 재접종 등록 시에는 피접종자의 재접종 시 체중 추가 입력
※ 37주 미만이면서 동시에 출생 몸무게가 2.0Kg 미만인 경우



〈그림 36. 미숙아 재접종 등록 화면〉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등록 및 결과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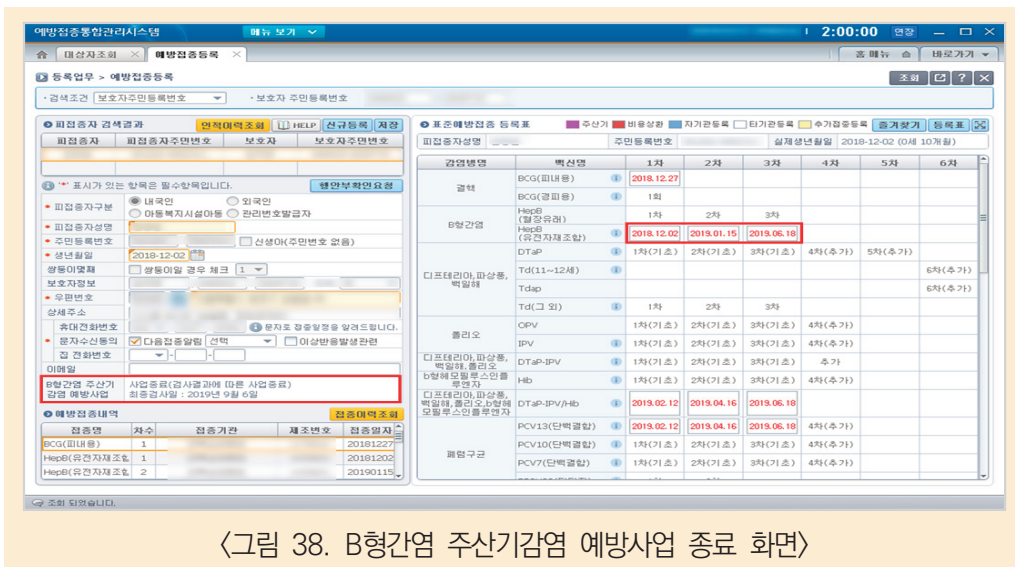
※ 2019년부터는 검사결과지 업로드 필수,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 표기



〈그림 37. 항원·항체 검사결과 등록 화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종료 시

- 예방처치일정이 종료되면 예방접종등록화면 일정표가 한 줄로 변경됩니다.
- 검사결과를 잘못 등록한 경우는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결과 삭제 요청 후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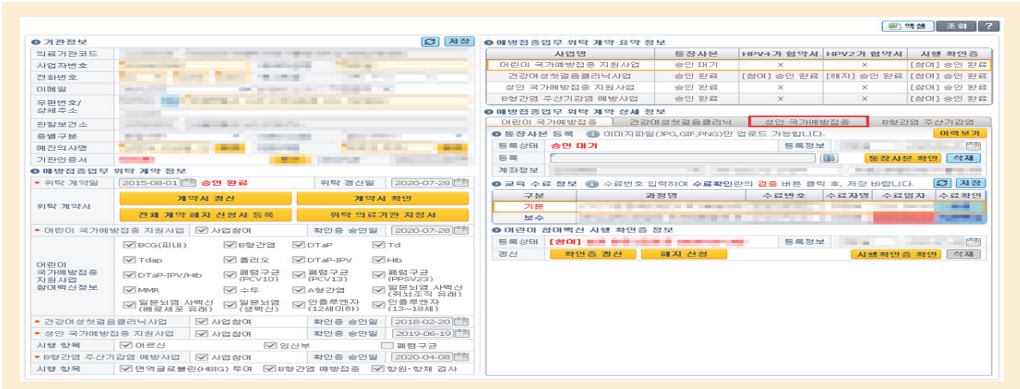


〈그림 3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종료 화면〉

5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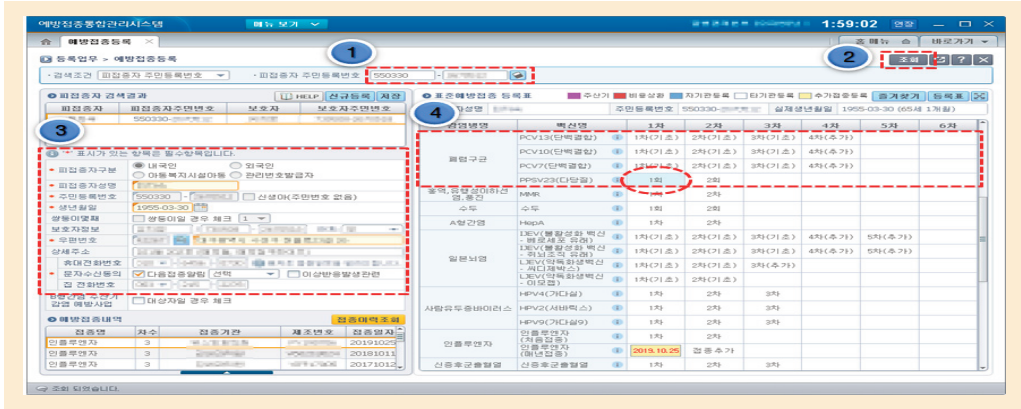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계약)**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승인 후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을 클릭하여 신청(2021.3.2.~)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 ▶ 통장사본 등록, 교육수료정보 등록, 참여확인증(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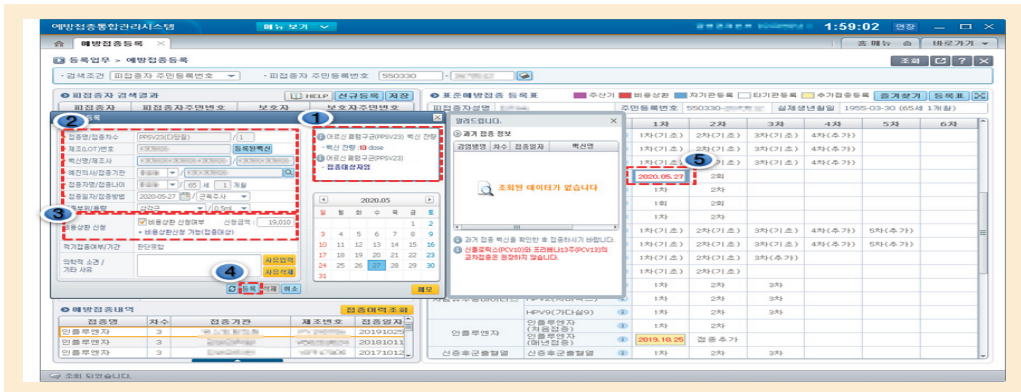
○ **접종 대상자 인적 확인**

-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선택합니다.
- 2 주민등록번호로 피접종자 인적정보를 조회하며, 인적정보가 없는 경우 인적을 신규 등록합니다.
- 3 조회된 인적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폐렴구균 (PPSV23, PCV13) 과거 접종력 확인 후, PPSV23 접종차수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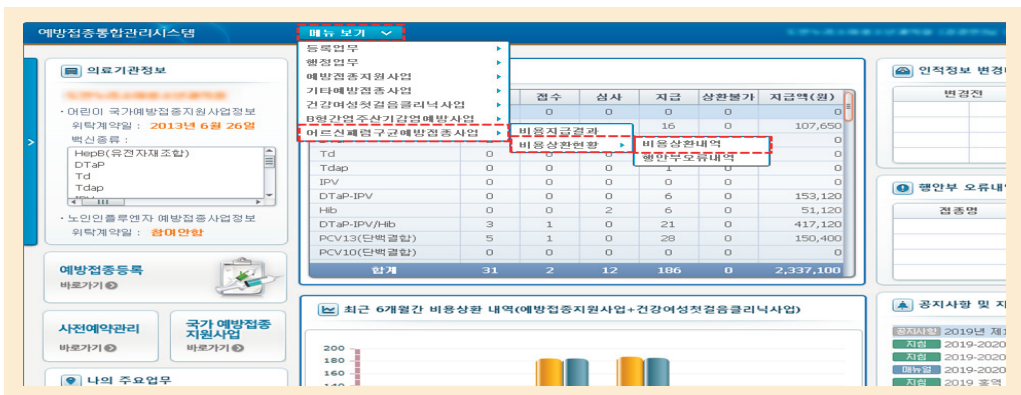
○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및 비용상환 신청 방법

- 1 PPSV23 접종차수 클릭하면 팝업창 우측 상단에 PPSV23 접종 대상자 및 백신 잔량을 확인합니다.
 - ※ 접종대상자가 아닌 경우 '접종대상자 아님' 표시(과거 접종력과 접종간격 고려)
 - ※ 백신잔량이 '0'인 경우 비용상환 신청 불가하며, 백신추가입고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2 PPSV23 접종 후, 예방접종 정보(백신정보, 접종일자, 접종방법, 예진의사 등) 접종기록을 입력합니다.
- 3 '비용상환 신청' 항목의 비용을 확인합니다.
- 4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완료합니다.
- 5 실시간에 준하여 접종 시 비용신청이 완료되면 접종일자가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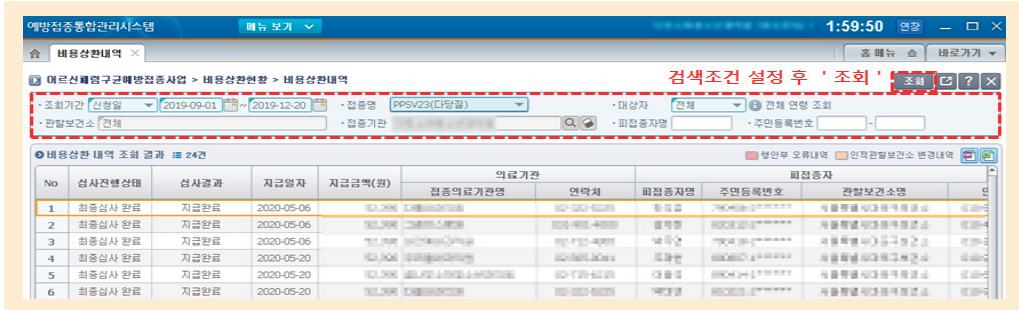


○ 비용상환 신청 내역 확인 방법

-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상단 메뉴보기 → 어르신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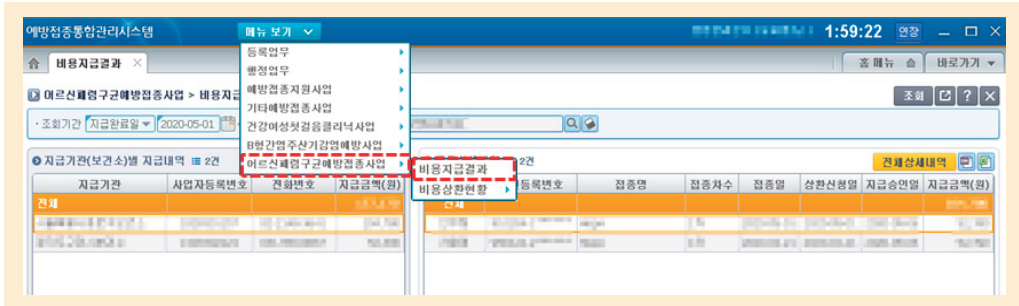
② '비용상환 내역'에서 상환 신청내역의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용지급 결과 확인 방법

① '메뉴보기 → 어르신페렴구균예방접종사업 → 비용지급결과'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지급승인일: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서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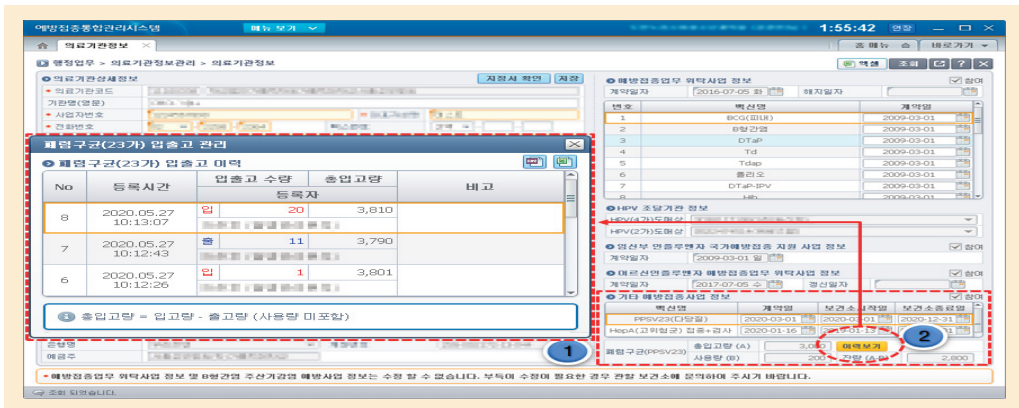
② '비용지급결과내역'에서 화면좌측의 지급보건소를 클릭하면 보건소별 지급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전체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기간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



2. PPSV23 백신 입·출고 확인 방법

-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를 선택합니다.
- ② 의료기관 정보 우측 하단 기타 예방접종사업 정보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의 입고량, 사용량, 잔량 확인 가능하며, 이력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입·출고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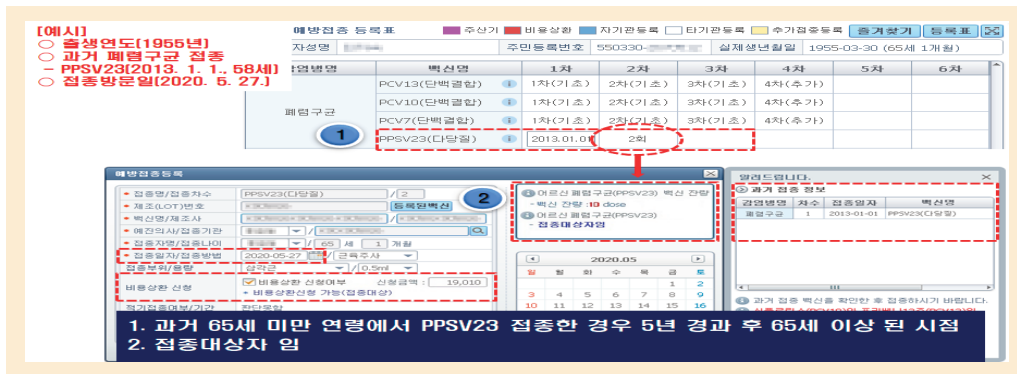


※ 2021.3. 이후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변경할 예정이며, 추후 안내 예정

☞ (참고) 과거 접종력에 따른 PPSV23 접종대상 판단 예시

■ 접종대상자임

-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 되는 경우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한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6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CV13(2016. 7. 21.)
 ○ 접종방문일(2020. 6. 27.)

예방접종종류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폐렴구균	PCV13(단백결합)	2016.07.21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10(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7(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PSV23(다당질)	1차	2차					

**1.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이고,
 2.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가 경과한 경우
 3. 접종대상자임**

3)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하고 5년 경과와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 65세 이상 되는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6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CV13(2018. 6. 28.)
 ○ PPSV23(2019. 1. 1. 58세)
 ○ 접종방문일(2020. 6. 27.)

예방접종종류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폐렴구균	PCV13(단백결합)	2018.05.29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10(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7(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PSV23(다당질)	2019.01.01	2회					

**1.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 되는 연령
 2.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이 경과된 경우
 3. 접종대상자임**

■ 접종대상자아님(접종완료)

1)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0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PSV23(2015. 7. 21., 65세)
 ○ 접종방문일(2020. 6. 27.)

예방접종종류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폐렴구균	PCV13(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10(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7(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PSV23(다당질)	2015.07.21	2회					

**1. 과거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력이 있는 경우
 2. 접종대상자 아님(접종완료자)**

■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다음 접종간격 5년 미도래
2.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 65세 미만 연령에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미도래로 2024. 1. 1. 이후 접종가능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어르신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하지 않은 경우

1.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이고,
2. 과거 PCV13 접종력이 1년(최소 8주)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접종대상자는 아님(추후접종)

6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 1. 회원가입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회원가입 및 학습자 권한신청을 합니다.
 - ※ 로그인 → 우측 상단 '권한/부가정보' 버튼 클릭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1644-1407(HelpDesk)
 - ※ 회원 가입 시 학습자 정보로 수료증이 발급되니 성명, 직군,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필요

○ 2. 로그인 하기

- ▶ 학습자 권한 승인 후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로그인(인증서) 합니다.

○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 ▶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하며, 신청한 교육과정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선택 후 ‘강의실입장’ 또는 상단 ‘수강과정’ 메뉴에서 선택한 후 학습합니다.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정보(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따라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 표시



○ 학습하기

- ▶ ‘강의실 입장’ 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 수강 도중 강의실 창을 닫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

※ 수강 중 30분 이상 차시나 탭터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 수료 확인하기

- ▶ 수강 종료 후 화면 상단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수료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하기

- ▶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게시판(묻고 답하기)에 문의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교육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043-719-8397~8399

[별첨자료]

Ⅲ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 | |
|---------------|-----|
| 1. 아나필락시스 정의 | 151 |
|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 151 |



1 아나필락시스 정의

○ 개요

- ▶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자극)에 노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내의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며, 피부반응(발진, 가려움증, 입술과 입안 부종), 호흡기계 증상(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혈관계 증상(저혈압, 실신, 가슴통증, 빠른 맥박),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복통,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 신속 대응

- 1) 상황평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하는 동안 백신 접종부위의 부종, 발적 등 발생여부 및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한다.
- 2) 도움요청: 전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내 신속히 전파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의사를 호출한다.
- 3) 응급처치: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
 -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되는 경우 10~20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여가 가능하며, 항히스타민은 발진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어 2차 약제로 사용 가능
- 4) 응급의료기관 후송: 응급처치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후송한다.

○ 사전 준비 사항

1) 응급처치 장비 및 점검사항

- 가.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탱크는 산소 충전 상태를 확인한다.
- 나. 산소마스크, 앰부백, 에어웨이는 소아용/성인용을 구분하여 준비한다.
- 다. 에피네프린과 안티히스타민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령별 용량을 확인한다.

〈표 1. 아나필락시스 치료제(체중, 연령별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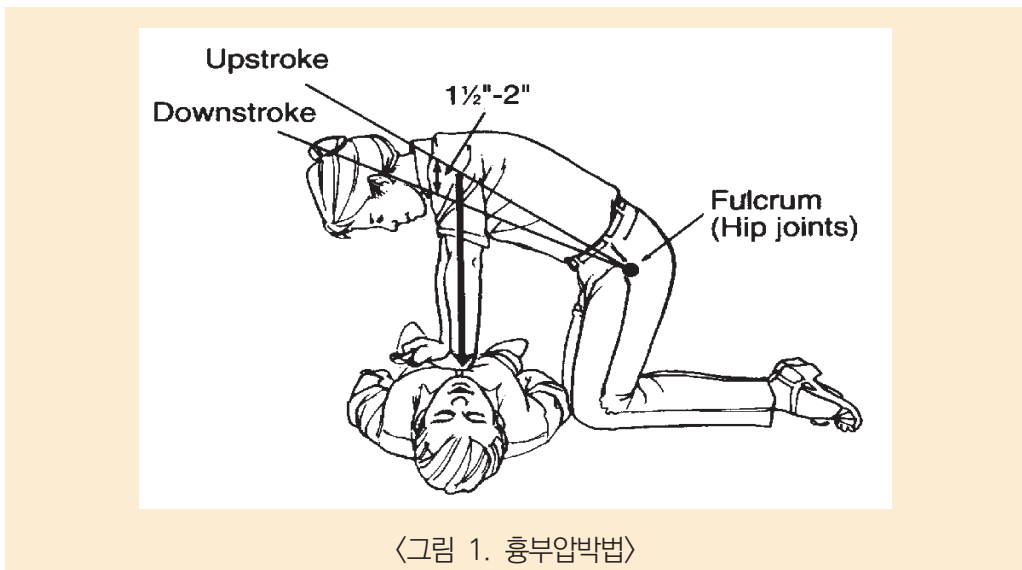
연령대	체중	에피네프린 근주 용량
1-6개월	4-7kg	0.05mg(0.05mL)
7-18개월	7-11kg	0.1mg(0.1mL)
19-36개월	11-14kg	0.15mg(0.15mL)
37-48개월	14-17kg	
49-59개월	17-19kg	0.2mg(0.2mL)
5-7세	19-23kg	
8-10세	23-35kg	0.3mg(0.3mL)
11-12세	35-45kg	0.4mg(0.4mL)
13세 이상, 성인	45kg 이상	0.5mg(0.5mL)

- 2)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2개 이상 지정(전화번호, 위치, 후송거리 등 파악)한다.
- 3) 응급처치 대응팀(의사, 간호사, 보조원)을 구성하며, 담당자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역 할
예진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 평가 ·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약제 준비 및 투여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간호관리,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필요시)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내 상황 전파, 119 신고 및 구급차 호출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상황 알림, 후송 보조
보건소 구급차 운전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후송

○ 심폐소생술(필요시)

- ▶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 의료인의 경우 맥박 확인(10초 이내): 성인 및 소아는 경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확인하고 영아(12개월 미만)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므로 위팔 동맥에서 확인
- ▶ 성인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놓고, 30회 흉부압박을 시행(분당 100회 속도, 4-5cm 깊이)
 -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 ▶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의 아래를 압박 위치에 놓고, 30회 흉부압박 시행(분당 100회 속도, 4cm 깊이)
 - 가. 소아: 한 손을 사용하여 손바닥 끝부분으로 압박
 - 나. 영아: 한 손을 사용해 두 손가락으로 압박 또는 두 손을 사용해 엄지손가락으로 압박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영아/신생아의 경우 기도를 수평으로 유지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 흉부 압박 방법

연령	압박/호흡 비율	
	1인 구조자	2인 구조자
신생아	3:1	3:1
영아(<1세)	30:2	15:2
소아	30:2	15:2
성인	30:2	30:2

[부 록]

I 관련 법령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57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160
3.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167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

1. 의료안전예방국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10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은 p109 참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은 p111 참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2020. 9. 14.,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필수·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한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제1호의 판단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③ 보건 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④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며,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한다.

⑤ 보건 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고시는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9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결핵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 BCG(피내용)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HBsAg과 anti-HBs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성인 중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성인은 우선 접종권장 대상이 된다.
 -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 ⑤ 의료기관 종사자
 -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 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무접종 해야 하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표준접종시기	접 종 간 격	백신
기초 접종	1차	생후 2개월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DTaP
	2차	생후 4개월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3차	생후 6개월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추가 접종	4차	생후 15~18개월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DTaP
	5차	만4~6세	-	DTaP
	6차	만11~12세	-	Tdap 혹은 Td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해당시설 근무 2주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1회 접종한다.

④ 폴리오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 만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쥐 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토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은 만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경구용 생백신은 만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⑩ 수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 해당 연도에 만 12세 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만 12세에 1차 접종 후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는 p84 참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2020. 9. 14.,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4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Ⅱ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1.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171
2.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171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172
4. 백신 보관 및 취급 계획 수립	174
5.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175
6. 백신 보관 온도 관리	177
7. 백신 보관 장비에서의 백신 배치 및 표시	179
8. 백신 보관 시 점검 사항	181
9. 백신 보관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	182
10.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183
11. 백신의 폐기	183
12. 백신 보관 시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치	184
13. 기타	185

*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2020.7.) 중 “5.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부분 발췌

1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 ▶ 백신 접종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은 접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 가. 백신 보관·취급·접종을 관리하는 사람과 예비인원에 대한 연락처 및 역할 분담
 - 나. 지역 보건당국의 연락처
 - 다. 백신 생산 회사 혹은 백신 공급 업체 연락처
 - 라.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 연락처
 - 마. 백신 냉장고에 사용하는 온도계의 회사 연락처
 - 바.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
 - 사. 백신 보관 온도에 대한 내용
 - 아.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백신의 위치
 - 자. 백신의 보관과 취급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 차. 백신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 카. 백신 이송과 백신을 회사나 백신 공급 업체에서 받을 때 절차에 대한 내용
 - 타.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
 - 파. 백신 접종 후 조치 및 주사기 등의 접종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
 - 하. 사용 백신에 대한 설명서

2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 ▶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의 재고관리, 현황, 보관 등 백신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백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 보통 1명을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관리 담당자의 부재 시를 대비한 대체(예비)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모든 백신이 올바르게 보관되고 취급되는지 확인도록 한다.

- ▶ 백신 관리 담당자 및 예비 담당자는 평상 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백신 관리 담당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신 주문, 백신 입고 시 검수 및 관리
 - 나. 백신 보관 장비의 내부 정리
 - 다. 백신 보관 장비 온도 설정
 - 라. 백신 보관 장비의 1일 최대/최소 온도 확인 및 기록, 보관
 - 마.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추세 관리를 위하여 최소 주 1회 온도 기록지 검토 및 분석 실시
 - 바. 백신 보관 장비 문이 꼭 닫혀 있는지 확인(냉장고 문의 패킹 확인)
 - 사. 유효기한이 도래한 백신을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주 1회 재고 확인
 - 아.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보관 장비에서 제거
 - 자.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유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비상대응
 - 차. 백신 운반 시 적정 온도 유지 및 백신 파손 방지 등 관리·감독
 - 카. 국가예방접종 업무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관리(연 2회, 참고1)
 - 타. 백신 보관 장비의 성능 적정성확인 등 유지 관리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 ▶ 백신 및 첨부된 희석액(첨부용제, 용해제)의 입고는 백신 관리 담당자 또는 예비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휴가 등 개인사정으로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백신 입고일 변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백신 입고 시 인수자는 콜드체인 유지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백신 수령 즉시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보관장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 ▶ 백신 입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가. 백신이 물에 젖었거나, 상표가 훼손된 경우, 백신 병이나 주사기가 균열이 발생한 경우 등 물리적 손상 흔적이 있는지 수송 용기와 내용물 조사
- 나.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 및 전표 내역과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확인
- 다. 유효기한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 예정인 백신이 있는지 확인
- 라. 냉동 건조(동결 건조) 백신의 경우 백신과 첨부용제 수량이 동일하게 입고되었는지 확인

마. 백신 콜드체인 온도 감지 표시라벨이 있는 백신의 경우 라벨 확인

- ▶ 백신의 보관, 취급에서 재고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백신의 재고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재고 유지 여부와 백신 첨부용제 재고량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백신과 첨부용제 주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예상 수요, 보관 용량,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수량 등이 있다. 백신은 약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주문하며, 재주문은 30일정도의 여유를 둔다.

- 백신을 주문 시 빈번한 소량 주문은 지양한다. 백신은 냉장고 용량에 50% 정도 차지하도록 한다.

- ▶ 백신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재고를 지나치게 많이 유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 재고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유효기한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여야 하므로 적정 재고량 유지, 백신과 첨부용제의 유효기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가. 병원에 새롭게 들어 온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나. 사용한 백신과 용해제의 수, 폐기된 백신과 용해제의 수, 손상이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수

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라. 우선 사용해야 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마.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수

바. 주문된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에서 반품을 할 수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수

사. 새롭게 주문을 해야 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 ▶ 또한, 유효기한이 가까운 백신과 첨부용제를 저장고의 앞쪽으로 옮기고 ‘우선 사용’이라고 표시하여 유효기한이 가장 적게 남은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유효기한이 경과한 백신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참고)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

- 백신 판매자(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 및 약국개설자)는 백신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수송자로 하여금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백신을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기관 또한 백신 구입 시 제조연월일,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를 확인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백신 보관 및 취급 계획 수립

- ▶ 일상적/비상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백신보관 및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백신과 용해제의 도착일시, 수량, 인수자 및 점검자의 이름, 도착 시의 백신과 용해제의 상태(도착 당시 백신을 보관한 용기의 온도, 백신의 손상 등), 인수한 백신의 이름, 각각의 백신의 회사이름, 백신의 종류(1인회용 백신, 다인용 백신, 프리필드 백신),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각각 제조번호에 따른 유효기간, 인수한 백신의 수, 사용, 폐기, 손상이 된 백신의 수와 남은 수가 포함이 되도록 한다.
- ▶ 백신보관 냉장고의 오작동, 정전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백신을 회수하여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보관장비에 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적정 온도 유지가 안 되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백신을 이송하여야 할 경우 아이스팩, 아이스박스, 비닐 완충제(예, 버블 랩이나 스티로폼 알갱이), 여분의 온도계 등이 필요하다.

5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 ▶ 백신 보관장비(냉장고)를 신중하게 선정, 올바르게 설치,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 하여야 한다.
 - 이런 백신 보관장비?를 사용하면 백신 효능/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환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비상시 대비하여 백신 보관장비 구입 시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보관하고, 모델명, 구입일자, 정기 유지관리 일자(예, 세척 등), 수리 또는 정비일자, 업체명과 연락처를 보관하여야 한다.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의 선택

- ▶ 백신 보관은 백신/약품 보관 전용으로 제작된 냉장고를 사용한다.
 -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는 자동 온도 기록, 내부 공기 순환 등으로 저장 위치별 일정 온도 유지,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 냉장고 문 잠금 경고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 그러나, 백신 보관 전용으로 제작된 냉장고 대안으로 백신 보관온도 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냉장/냉동 기능이 분리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
 - 1도어 냉장고(냉장고와 냉동고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문이 하나)는 냉각팬(판형증발기) 하나가 냉장고 내부의 냉동 칸에 위치하는데, 냉동고에서 나온 공기가 냉각을 위해 냉장고 안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냉장백신이 냉동손상을 입을 위험이 커지며 냉동 칸은 냉동 백신을 위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되어, 백신을 넣은 상태에서는 공간별 온도편차가 커서 백신 보관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 일시적으로 백신을 보관하는 용도일 경우라도 냉장/냉동고가 하나로 된 1도어 냉장고 보다는 냉동실이 없는 냉장고만을 사용하며, 만약 기존에 1도어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라면 냉장 칸만 사용하여 냉장 보관 백신을 보관한다.

- ▶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연중 백신 재고가 가장 많은 경우에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포함)
 - 나. 온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장고 안에 물병과 냉동고 안에 아이스팩을 보관할 만큼 충분한 공간(물병과 냉동 냉매 팩으로 안전 온도 유지)
 - 다. 백신 보관 온도를 연중 유지(일반적으로 2~8℃, 평균 5℃ 유지)
 - 라. 백신 보관용도 외 사용 금지
- ▶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신 냉장고 혹은 의료 전용 냉장고 중에는 냉장고문이 유리로 된 것이 있는데 수두백신(Varicella), 자궁경부암 백신(Human papilloma virus, HPV), 로타바이러스 백신(Rotavirus) 등 약독화 생백신은 일광에 노출되면 백신역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의 위치

- ▶ 보관 장비 외부 주변 공기순환이 잘 되어야 하므로 백신 보관 장비는 아래의 설치 조건을 권장한다.
 - 가. 환기가 잘 되는 방
 - 나. 직사광선, 외부의 온도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부근은 피해야 함
 - 다. 백신 보관 장비의 주변과 윗부분의 여유 공간 확보
 - 라. 백신 보관 장비와 벽 사이는 최소 10cm 이상의 여유 공간
 - 마. 모터 부분을 막는 덮개 등이 없을 것
 - 바. 바닥과 백신 보관 장비 밑 부분은 최소 2.5~5cm 간격을 두고 수평을 유지하며 단단히 고정 하여 설치

6 백신 보관 온도 관리

- ▶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는 백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온도를 준수하며, 일반적으로 2~8℃의 온도, 평균 5℃가 유지되어야 한다.
 - 백신별 보관 온도에 관한 사항은 백신설명서를 참조한다.
 - * 백신 전용 냉장고의 백신 보관 시 유의사항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 > '백신 보관시 유의사항' 참조
- ▶ 백신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접종하여야 한다.



〈그림 1.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잘못 보관한 백신 예시〉

○ 온도관리

- ▶ 백신의 올바른 취급과 보관을 위하여 온도계는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품목으로, 냉장고 온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올바른 온도에서 백신을 보관하기 위하여, 백신 보관 장비에 연속 자동 온도 기록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한다.
 - 일정한 간격마다 온도 변화 자동 기록, 최대/최소 온도, 설정한 온도 범위 이탈 시간 정보 및 경보 알림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 자동 온도 기록 모니터링 장치가 없을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온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디지털 온도 기록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 디지털 데이터 기록기의 경우 최저 및 최고 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
 - 그 외 일반 온도계를 이용할 경우,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는 최소 매일 2회 점검 (오전 1회, 업무 종료 전/후 1회)하고, 보관 장치의 문에 온도 기록서를 비치하여, 일일 2회의 온도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
 - * 백신온도관리대장 서식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자료실 > 각종서식 > ‘백신 온도 관리대장’ 참조
- ▶ 백신 보관 장치 노후화로 온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보관 장치의 필요성을 평가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되었던 백신을 투여 받은 환자를 파악하고 재접종 시행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온도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 연속 자동 온도 기록 모니터링 장치 또는 디지털 온도 기록기가 있는 냉장고를 구비하여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더라도, 해당 장치의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매일 2회는 수동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시스템에만 의존하여 장비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온도 이탈 문제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로는 “교정 증명서(Certificate of Traceability and Calibration)”를 갖춘 교정된 온도계를 사용하고 사용 중인 온도계는 제조업체의 제안에 따라 주기적 재교정이 필요하다.
- ▶ 백신 보관 장비에서 내부의 온도 측정 위치도 중요하다.
- ▶ 백신을 보관하기 전 온도를 안정화시킨 후 장치 내부의 여러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지점을 파악한 후 백신을 보관한다.
 - 냉점이나 열점이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 백신을 두어서는 안되며, 가장 신뢰성이 있고 일관된 온도 측정이 가능한 지점에 백신을 보관한다.
 - 특히, 냉장고 내 냉점지점에 백신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 냉장고 고장 등으로 백신을 이동할 경우, 아이스박스 내 냉매와 백신이 직접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일 이상 운영하여 안정적인 온도 조건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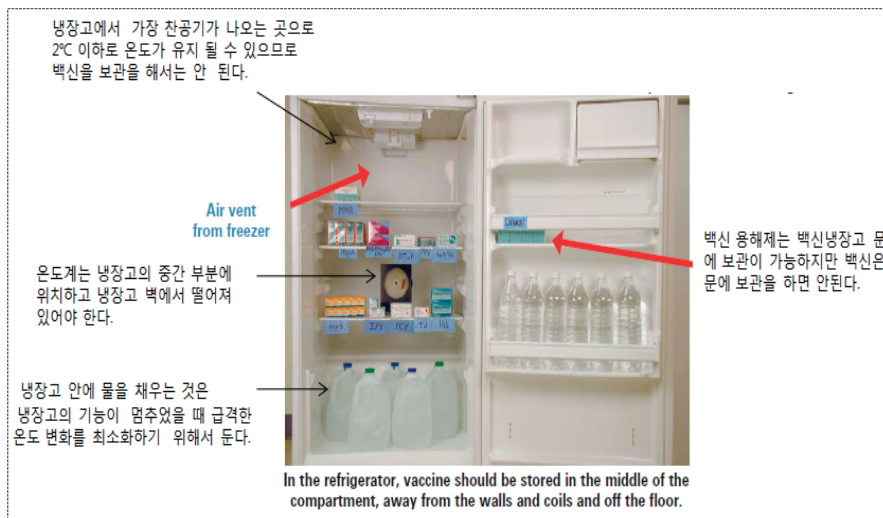
○ 온도조절

- ▶ 백신 전담 관리자나 대체(예비) 담당자만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를 조절한다.
 - 실수로 타인이 온도설정을 바꾸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고 표시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냉장고 온도 조절 장치를 조정하면 안 됩니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 (담당자 성명, 연락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상황에서는 실온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온도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온도계를 조절할 때는 진료가 많아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게 되는 날을 피하여야 한다.
- ▶ 온도조절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백신 보관 장비의 플러그가 전원에 꽂혀 있는지 확인
 - 나. 백신 보관 장비 내 온도 점검
 - 다. 온도를 재설정하고 최소 30분간 안정되게 한 후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안정화 될 때까지 30분마다 온도 재측정
 - 라. 연속 데이터 기록기(해당하는 경우)에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점검하여 온도 조절 장치의 재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 마. 냉장고 문에 도어 개스킷(접합부에 끼워 물이나 가스가 누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패킹)에 새는 것이 없는지 확인

7 백신 보관 장비에서의 백신 배치 및 표시

- ▶ 백신은 투여 시점까지 최초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하도록 하며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 보관 장비에 백신을 잘 정리하여 보관하기 위해 보관용기, 상자, 기타 덮개가 없는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
 - 백신을 담은 컨테이너 사이에 공간을 충분히 두어 백신 제품의 혼동을 피하고, 공기 순환을 원활히 하며, 불필요한 빛에 의한 노출로부터 백신을 보호하도록 한다.

- ▶ 특히, 약독화 생백신 뿐 아니라 일부 불활화 백신도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차광은 각 백신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숙지하여 보관한다.
- ▶ 희석하여 사용하는 백신의 경우 첨부된 희석액(첨부용제) 보관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첨부용제는 해당 백신과 함께 운송
 - 나.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보관
 - 다. 해당 백신과 첨부용제를 함께 보관
 - 라. 첨부용제는 동결시키지 않음
 - 마. 첨부용제의 보관 시 라벨을 부착하여 적절하지 않은 첨부용제로 백신을 희석하지 않도록 함
- ▶ 백신 및 첨부용제를 보관할 때 보관용기 등에 명확히 라벨을 부착한다.
 - 색상 코드(예, 소아용 색상과 성인용 색상 구분)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고, 백신 유형별로 연령대를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 백신/첨부용제 보관용기에 라벨을 부착하면, 잘못된 백신을 투여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첨부용제로 백신을 용해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 비슷해 보이는 백신을 인접하게 보관하는 경우 백신 접종 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백신은 가능한 인접하게 보관하지 않는다(예, DTaP, Tdap).



〈그림 2. 백신보관 냉장고에서의 적절한 백신보관 예시〉

8 백신 보관 시 점검 사항

○ 코일 및 모터 청소

- ▶ 보관 장비의 코일 및 모터에 먼지와 때가 끼면 코일의 열전달에 영향을 미쳐 장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관장비(냉장고)의 코일 및 모터에 먼지와 때가 끼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코일과 모터의 먼지, 때가 제거를 위한 청소는 전원 플러그를 뽑고 제조업체 설명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 냉장고 내부 청소

- ▶ 백신 보관 장비의 내부 청소는 세균과 곰팡이 증식을 막아 백신 접종 전 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적정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청소해야 한다.
 - 장시간의 청소로 인해 보관 장비의 내부 온도가 적정 온도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예비 보관 장비에 백신을 보관하도록 한다.
- ▶ 백신 보관 장비 안에는 얼음과 성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두꺼운 성애 층은 온도유지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동 성애제거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 자동 성애 제거기능이 없을 경우, 수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성애를 제거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유지되는 다른 보관장비에 백신을 임시로 보관하도록 한다.

○ 물받이 청소

- ▶ 냉장고 하단에 물받이가 있는 경우, 물받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세균,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소하도록 한다.

9 백신 보관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

○ 전원 보호

- ▶ 전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백신 보관 장비의 전기코드를 벽의 콘센트에 직접 꼽는다. 가능한 멀티 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실수로 전기코드 뽑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플러그 보호 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백신 보관 장비의 차단기에도 라벨을 부착하여 전기 관리 담당자가 백신 보관 장비의 전기코드를 뽑거나 전원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 장비 1대의 플러그만 콘센트에 꽂는다. 안전 스위치가 작동하거나 전원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백신 보관 장비의 콘센트에 경고 표시를 한다. 플러그를 뽑지 말라는 경고 표시를 하여 직원, 전기기사나 다른 작업자가 장치 플러그를 뽑지 않도록 한다.

○ 백신 이외의 제품의 보관

- ▶ 식품 및 음료는 백신 보관 냉장고가 아닌 별도의 장치에 보관한다.
 - 식품 및 음료를 함께 보관하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열게 되어 온도 변화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빛에 과다 노출이 될 수 있다.
 - 또한 백신이 분실되거나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백신은 식품 및 음료와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

10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백신의 유효기한

- ▶ 모든 백신과 첨부용제에는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다.
 - 유효기한은 백신이나 첨부용제의 종류 및 로트마다 다르므로 백신접종 시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 백신라벨에 연/월/일로 유효기한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일자의 마지막 시점까지 그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다회 용량 백신 바이알(Multi-dose Vial)의 사용

- ▶ 다회 용량 백신 바이알(Multi-dose Vial)을 적절하게 보관, 취급하였고 성상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바이알에 인쇄된 유효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다회 용량 백신은 사용 시 처음 개봉한 일자와 시간을 바이알에 표시한다.
- ▶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희석한 일자와 시간을 표시한다. 백신을 개봉하거나 희석하면 유효기한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제조업체 설명서를 참조하고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과 첨부용제는 보관시설에서 즉시 치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예) BCG백신(피내용, 10인용):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용제로 용해한 후 냉암소에서 보관하며 4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11 백신의 폐기

- ▶ 개봉된 백신, 파손된 바이알과 주사기는 반품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절히 폐기해야 하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
- ▶ 사용하지 않은 백신과 첨부용제를 폐기할 시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12 백신 보관 시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치

- ▶ 백신 보관 장비의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백신 관리 담당자 혹은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백신 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내용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인지 시간, 백신 냉장고의 온도, 잘못 보관한 시간을 측정 후 기록
 - 나. 백신 회사에 재사용여부 확인, 재사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
 - 다. 백신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냉동고에 있던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며, 이때에도 백신 보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 갑자기 냉장고가 멈춘 경우

- 가. 즉시 냉장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고장 원인 조사
- 나.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 온도 확인, 냉장고 멈춘 시간 등을 기록
- 다. 백신 상태를 백신 공급회사와 상의하여 재사용 여부 결정
- 라. 냉장고 온도가 유지되지만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여분의 냉장고 또는 백신 공급업체로 백신을 이송
- 마. 일시적인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의 기능이 정지 된 경우에는, 백신 냉장고 문을 열지 말고 온도 측정을 하면서 경과 관찰
- 바. 만약 백신 냉장고 온도의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방안의 온도, 멈춘 시간,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 냉장고의 온도를 기록하며, 권장 온도를 벗어난 경우는 즉시 백신을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
- 사. 백신 비상 보관 시 냉장고안의 온도, 방안의 온도, 다시 작동 시까지의 시간, 비상 보관 시의 온도와 시간 등을 기록한 후 백신회사와 백신 재사용 여부를 결정

○ 주말/휴일동안 정전이나 냉장고 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부적절한 백신 보관의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가. 발견 당시 냉장고의 온도와 시간, 방안의 온도 등을 기록

- 나. 재사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이 될 수 있는 다른 냉장고 또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
- 다. 백신 보관 기록을 토대로 백신공급업체와 상의하여 재사용여부를 결정
- 라. 대부분 백신은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약독화 생백신은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소한 문제라도 보관상의 문제는 백신을 공급한 회사와 상의 필요

13 기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또는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백신 보관관리 상태가 주요 점검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백신 취급 및 보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부 록]

Ⅲ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2021)	189
2. 백신 접종법	190
3. 각 백신간의 최소 접종간격	192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193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194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195
7.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197
8.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198
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별 허가내용	199
10.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200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201
1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202
13.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020. 10. 기준)	203
14.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206

1.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2021)





질병관리청 | KHPA 국민보건의료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1)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다섯 달 생일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백신종류 및 방법	회수	접종~1개월 이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다섯 달 생일	BCG(피내용) ¹⁾	1													
만생간염	HepB ²⁾	3		HepB 2회		HepB 3회									
디프테리아	DTap ³⁾	5	DTap 1회	DTap 2회	DTap 3회	DTap 4회									
파상풍	Tdap/Td ³⁾	1													Tdap/Td6회
백일해	IPV ⁴⁾	4			IPV 2회										IPV 4회
홍역	Hib ⁵⁾	4			HiB 2회										HiB 4회
b형헤르페스인플루엔자	PCV ⁶⁾	4			PCV 2회										PCV 4회
페링구균	PPSV ⁶⁾	-													
홍역	MMR ⁷⁾	2							MMR 1회						MMR 2회
홍역·유행성 이하선염	VAR	1							VAR 1회						
수두	HepA ⁸⁾	2								HepA 1~2회					
A형간염	JEV(불활성화 백신) ⁹⁾	5								JEV 1~2회					JEV 5회
일본뇌염	JEV(만독화 생백신) ⁹⁾	2								JEV 1회					JEV 2회
서양두창바이러스 감염증	HPV ¹⁰⁾	2													HPV 1~2회
인플루엔자	IVV ¹¹⁾	-													IVV연년 접종
포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RV 1회									
	RV5	3				RV 1회									

기타 예방접종

- 1) BCG(피내용): 195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결핵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5개월~7개월 사이에 접종한다. 1회 접종한다.
- 2) HepB(백신): 199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간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1개월~2개월 사이에 3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2회 추가 접종한다.
- 3) DTap(백신):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2개월~4개월 사이에 5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4) IPV(백신):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백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2개월~4개월 사이에 4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5) Hib(백신):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2개월~4개월 사이에 4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6) PCV(백신):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2개월~4개월 사이에 4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7) MMR(백신):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18개월~24개월 사이에 2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8) HepA(백신):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A형간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12개월~24개월 사이에 2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9) JEV(백신):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일본뇌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12개월~24개월 사이에 5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10) HPV(백신):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12개월~24개월 사이에 2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 11) IVV(백신):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예방접종이다.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12개월~24개월 사이에 2회 접종한다. 12개월 이후 1회 추가 접종한다.

백신명	백신종류	백신명	백신종류
BCG(피내용)	백신	MMR 2회	백신
HepB	백신	IVV 연년 접종	백신
DTap	백신		
Tdap/Td	백신		
IPV	백신		
Hib	백신		
PCV	백신		
PPSV	백신		
MMR	백신		
VAR	백신		
HepA	백신		
JEV(불활성화 백신)	백신		
JEV(만독화 생백신)	백신		
HPV	백신		
IVV	백신		

2. 백신 접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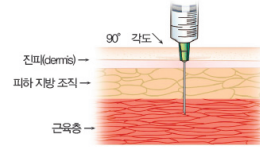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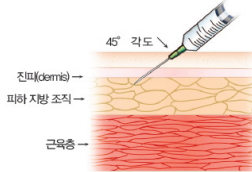
백신 접종법

2 예방접종 방법

피하주사 주사부위 :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 12개월 미만 : 대퇴부 외측
• 12개월 이상 :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근육주사 주사부위 : 대퇴부 전외측과 삼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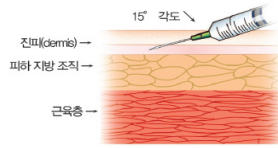


3 백신의 투여 용량 및 투여 방법 (2020. 10. 31. 기준)

백신종류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BCG(파네)	예방생백신	㈜액세스피마	피내용건조비피기백신에스에스아이주	1세 미만: 0.05ml	피내주사	삼각근부위
BCG(경피)	예방생백신	㈜한국백신	경피용 건조 BCG 백신	제품설명서	경피주사	제품설명서 참조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	불활생화백신	S(아이오사이엔수주)	해파클주	11세 미만: 0.5ml 11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해파클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DTaP	불활생화백신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타에이피백신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유박스비프리필드주			
플리오	불활생화백신	㈜한국백신	코박스플리오PF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아이피박스주			
			테트화심			
DTaP-IPV	불활생화백신	㈜보령바이오파마	인판릭스IPV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보령디타에이피 아이피브이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DTaP-IPV/hb	불활생화백신	사노피파스트(주)	핀락심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Td	불활생화백신	㈜액세스피마	다티부스터에스아이	0.5ml	근육주사	삼각근
			녹십자티다티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Tdap	불활생화백신	사노피파스트(주)	이다글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MMR	예방생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영염알비주	0.5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프리오릭스주			
일본뇌염	불활생화백신	㈜녹십자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3세 미만: 0.25ml 3세 이상: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글로박스	씨디게박스		
수두	예방생백신	보관파카	비라-열백신	0.5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스카이바리셀라주			
대상포진	예방생백신	S(아이오사이엔수주)	스카이바리셀라주	0.5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조스타박스			
정타푸스	불활생화백신	㈜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한국엠에스디(주)			
신증후군출혈열	불활생화백신	㈜녹십자	한타박스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유히브주			
Hib	불활생화백신	㈜LG화학	유히브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 영아(3세 미만) : 대퇴부전외측의 대퇴사두근
- 소아와 성인(3세 이상) : 상완의 삼각근

피내주사 주사부위 : 상완의 삼각근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A형간염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허브릭스주	19세 미만: 0.5ml 19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시노피파스퇴르(주)	어박심80U소아용주 어박심160U성인용주	16세 미만: 0.5ml(80U) 16세 미만: 0.5ml(160U)		
		한국엠에스디(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19세 미만: 0.5ml 19세 이상: 1.0ml		
패혈구균 (단백결합)	불활성화 백신	한국웨이지제약(주)	프리베니13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산틀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패혈구균 (23가다당질)	불활성화 백신	한국엠에스디(주)	프로디아크스-23 프리필드시린지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영
		한국웨이지제약(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근육주사	삼각근
HPV	불활성화 백신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0.5ml	근육주사	삼각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로타바이러스	약독화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로타백액	2.0ml	경구투여	경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로타릭스프리필드	1.5ml		
수막구균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엔비오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시노피파스퇴르(주)	메낙트라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동아제약(주)	백신플루4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오아이에스아인수(주)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0.5ml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네트라백신주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0.5ml 0.5ml		
		㈜녹십자	지씨플루워드라벨린트프리필드시린지주	0.5ml		
		㈜G화학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		
		보령제약(주)	비알플루테트라백신주	0.5ml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P주 코박스플루4가PP주	0.5ml 0.5ml		
		시노피파스퇴르(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0.5ml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		
		일양약품(주)	테라렉트프리필드시린지주	0.5ml		

발행일자 : 2020.11.13(금)

3. 각 백신간의 최소 접종간격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¹⁾

질병	백신	접종 권장시기	최소 연령	다음 접종 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 간격
B형간염	B형간염(1차)	출생시	출생시	1개월	4주
	B형간염(2차)	생후 1개월	생후 4주	5개월	8주
	B형간염(3차) ²⁾	생후 6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DTaP(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DTaP(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 ³⁾
	DTaP(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DTaP(5차)	만 4~6세	만 4세	-	-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만 11~12세	만 7세	10년	5년
폴리오(불활성화 백신)	IPV(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IPV(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IPV(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IPV(4차)	만 4~6세	만 4세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백신)	Hib(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Hib(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Hib(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Hib(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폐렴구균	단백결합(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단백결합(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단백결합(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단백결합(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23가 다당(1차)	-	만 2세	5년 ⁴⁾	5년
23가 다당(2차)	-	만 7세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1차)	생후 12~15개월 ⁵⁾	생후 12개월	3~5년	4주
	MMR(2차)	만 4~6세	생후 13개월	-	-
수두 ⁶⁾	Varicella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 ⁶⁾	4주 ⁶⁾
	불활성화 백신(1차)	생후 12~23개월	12개월	7~30일	7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2차)	생후 12~23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불활성화 백신(3차)	생후 24~35개월	18개월	3~4년	2년
	불활성화 백신(4차)	만 6세	만 5세	6년	5년
	불활성화 백신(5차)	만 12세	만 11세	-	-
	약독화 생백신(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2개월	4주
	약독화 생백신(2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3개월	-	-
A형간염	A형간염(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A형간염(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사립유두종바이러스 ⁷⁾ 감염증	HPV(1차)	만 11~12세	만 9세	2개월	4주
	HPV(2차)	만 11~12세(+2개월)	만 9세(+4주)	4개월	12주
	HPV(3차)	만 11~12세(+6개월)	만 9세(+4주)	-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⁸⁾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약독화 생백신	생후 24개월~49세	생후 24개월	1개월	4주
로타바이러스 ⁹⁾ 감염증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	-

① 혼합 백신(combination vaccines)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 백신 사용이 각 성분의 개별 접종보다 선호된다(CDC, Combination vaccines for childhood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for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MMWR Recomm Rep. 1999;48(RR-5):1-15). 혼합 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연령은 각 성분 백신 투여 최소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이다. 혼합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접종간격은 각 성분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중 가장 길다.

② B형간염 백신 3차 접종은 2차 접종 8주 이후에, 1차 접종 16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또한 3차 접종은 생후 24주 이전에 해서는 안된다.

③ DTaP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DTaP 3차 접종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하였으며, 4차 접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④ 23가 다당질 백신 2차 접종은 종종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항체 역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⑤ 홍역 유행이 있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서 발생하는 경우,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하는 백신은 표준접종일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CDC, Measles, mumps, and rubella-vaccine use and strategies for elimination of measles, rubella, and congenital rubella syndrome and control of mumps: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WR Recomm Rep. 1998;47(RR-8):1-57).

⑥ 12개월~만 13세 미만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만 13세 이상인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⑦ HPV 4가 백신은 만 9세~26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허가되어 있고 HPV 2가 백신은 만 9세~25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허가되어 있다. 3차 접종은 최소 연령은 초회 접종 최소 연령에 따라 다르며 1차 접종 및 3차 접종간의 최소 접종간격은 24주이다. 초회 접종 이후 최소 16주가 지나서 접종할 시에는 3차 접종은 반복할 필요 없다.

⑧ 4가 백신은 만 9세~13세 소아, 2가 백신은 만 9세~14세의 소아에게 6개월 간격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⑨ 만 9세 미만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에는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며, 다음 해부터는 1회 접종한다.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만 9세 미만 소아들도 유행주에 따라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⑩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초회 접종은 생후 6주에서 14주 6일까지 투여되어야 한다.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8개월 이후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하며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자료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Hanborsky J, Kroger A, Wolfe S, eds. 13th ed. Washington D.C. Public Health Foundation, 2015]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지연시 예방접종(4개월~6세)*					
접종백신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4-5차 최소 접종간격
B형간염 ¹⁾	출생시	4주	8주 (1차접종 16주 후)	-	-
DTaP ²⁾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	6개월
IPV ³⁾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 ³⁾ (마지막 접종의 최소 연령은 만4세)	-
Hib ⁴⁾	생후 6주	4주: 생후 12개월 미만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생후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후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1차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에 하고 2차 접종을 생후 15개월 미만에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전 접종을 생후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만 필요	-
PCV ⁵⁾	생후 6주	4주: 생후 12개월 미만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건강한 소아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1차 접종을 PCV13으로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단, PCV10으로 접종한 경우 8주 간격으로 접종(마지막 접종)	4주: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이전 접종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 또는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받은 고위험군	-
MMR ⁶⁾	생후 12개월	4주	-	-	-
수두	생후 12개월	-	-	-	-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⁷⁾	생후 12개월	7일	6개월	2년	5년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생후 12개월 ⁸⁾	4주	-	-	-
A형간염 ⁹⁾	생후 12개월	6개월	-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¹⁰⁾	생후 6주	4주	4주	-	-

* 지연된 예방접종이란, 권장 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을 함

- 1) B형간염: 3차 접종 최소 연령은 생후 24주임
- 2)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5차 접종은 생략
- 3)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2차와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
- 4) Hib: 만 5세 이상의 건강한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5) PCV: 만 5세 이상의 건강한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6) MMR: 2차 접종 시기는 만 4~6세지만 해당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상기 최소접종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음
- 7)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만 4~9세에 할 경우는 4차 접종을 만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종료하며, 3차 또는 4차 접종을 만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음
- 8)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국내에서는 생후 12개월부터 접종하나 국외에서는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8개월부터, 재조합 키메리 바이러스 백신은 9개월에 접종을 추천함
- 9) A형간염: 접종 간격은 제품에 따라 6~18개월이며, 접종받지 않은 만 2세 이상 소아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10)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첫 접종의 최대 연령은 14주 6일이며, 15주 0일 이후에는 접종을 시작하지 않음. 접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8개월 0일임. 로타리ks(Rotarix)는 2회, 로타텍(Rotatec)은 3회 접종함

●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접종백신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Tdap/Td ¹⁾	만 7세	4주	4주: DTaP 첫 접종을 12개월 미만에 한 경우 6개월 (마지막 접종): DTaP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이후에 한 경우	6개월: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에 한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²⁾	만 9세	경기접종 간격을 지킨다			
A형간염	-	6개월	-	-	
B형간염	-	4주	8주 및 1차 접종 최소 16주 후	-	
IPV ³⁾	-	4주	6개월	-	
MMR	-	4주	-	-	
수두 ⁴⁾	-	4주	-	-	

* 지연된 예방접종이란, 권장 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을 함

- 1) Tdap/Td: 기초접종 3회 접종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접종하는데, 가능하면 첫 접종을 Tdap 백신으로 접종
-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4가 백신은 만 9~13세 소아, 2가 백신은 9~14세의 어린이에게 6개월 간격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음.
- 3)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2차와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
- 4) 수두: 13세 이상이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접종시작연령에 따른 권장접종일정

백신	초회 접종 연령	기초 접종 횟수 및 간격	추가 접종 시기 및 횟수
Hib	생후 2~6개월	3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에 1회
	생후 12~14개월	1회 ²⁾	2개월 후에 1회
	생후 15~59 ³⁾ 개월	1회 ²⁾	-

- 1) 이전 접종 후 최소한 8주 간격
- 2)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소아들 즉,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경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아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한다(2회 접종 시 2개월 간격).
- 3) 고위험 환자 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만 5세 이상에도 접종한다.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종류와 접종당시 월령에 따른 접종일정

백신의 종류	첫 번째 접종시 월령	기초접종 ¹⁾	추가접종 ²⁾ 시기 및 횟수
PCV10	생후 2 ~ 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 ~ 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 ~ 59개월	2회	-
PCV13	생후 2 ~ 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 ~ 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 ~ 23개월	2회	-
	생후 24 ~ 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 ~ 71개월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³⁾	2회	-

- 1) 생후 12개월 미만에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은 4주, 그 이후의 최소 접종간격은 8주임. 최소 접종연령은 생후 6주임
- 2) 이전 접종으로부터 최소 8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함
- 3)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참고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들)

위험군	질환
정상면역 소아청소년	만성 심장 질환 ¹⁾ , 만성 폐 질환 ²⁾ ,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만성 간 질환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청소년	경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저하 소아청소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또는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³⁾

- 1) 특히 선천성 청색 심질환과 심부전
- 2)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환자도 포함함
- 3)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발행일자 : 2019. 12. 09.(월)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 (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결핵 (BCG)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VA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일본뇌염 (IJEV, LJE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페렴구균 (PCV, PPS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Flu)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HepA)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장티푸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지정 등 고시(별표)

7.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의료인용)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기저질환 병력이 있을 때**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안내하세요.

- **다문화 가정의 아이**

정확한 연락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엄마, 아빠 모두의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엄마의 출신 국가를 물어보시고 해당 언어로 작성된 다문화 가정용 안내서를 출력해 주세요.

- **해외 거주자 및 잦은 출입국자**

정확한 연락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부모의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반드시 '거주한 나라의 예방접종 증명서' 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자녀의 해외에서
접종기록을 전산등록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전산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 내역 입력은 중복 접종,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미접종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접종 전 전산등록자료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반드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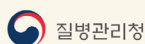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하고, 접종기록은 앞차수부터 순차적으로 등록하세요.

동일차수에 재접종한 경우(접종력 불인정에 따른 재접종 등) 재접종기록은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 ★ 출생신고전 신생아의 경우 피접종자의 어머니(母)의 인적정보를 반드시 함께 등록하세요.
- ★ 인적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병원 방문시마다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해주세요.
- ★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하여 다음접종일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사용자 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 로그인 이후 예방접종업무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8.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의료인용)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환자 및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진료 중 아이의 건강 및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중에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쉽 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Tip!

● 미접종 내역 안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접종이 완료되었는지, 혹시 미접종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미접종한 내역이 있거나 접종 시기가 된 예방접종이 있으면 접종 가능한 모든 접종을 시행하세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미등록된 경우 접종을 등록해주시거나,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아이가 감기, 설사, 중이염 등 경한 질환을 앓고 있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다음 예방접종 날짜를 미리 안내 하고 다음 방문을 예약해 주세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보호자와 약속한 다음예방접종 날짜를 예약하세요.

● 보호자가 예방접종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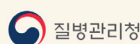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예방접종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 후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관한 안내서를 건네주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당신도 그들의 자녀의 건강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주도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가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자 : 2019. 12. 0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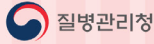




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별 허가내용

제품명	수입사	효능·효과	용법·용량
가다실	M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9~26세 여성에서의 HPV에 의한 다음의 질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 암, 질암, 항문암 -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 HPV 6, 11,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전암성 또는 이형성 병변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1-3기, 외음부 상피내 종양 2-3기, 질 상피내 종양 2-3기, 항문 상피내 종양 1-3기 • 만 9~26세 남성에서의 HPV에 의한 다음의 질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 -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 HPV 6, 11,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전암성 또는 이형성 병변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 상피내 종양 1-3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9~26세 여성 및 남성 • 1회 0.5ml(근육) • 0, 2, 6개월(3회) * 만 9~13세의 경우 2회 (0, 6개월) 접종 가능
서바릭스	G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 질병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궁경부암, 항문암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지속적 감염 * 유의성이 불확실한 비정형 편평세포(ASC-US)를 포함하는 세포학적 이상 *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IN) 1, 2, 3 * 외음부 상피내종양(VIN) 2, 3 * 질 상피내종양(VaIN) 2, 3 * 항문 상피내종양(AIN) 2, 3 •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 질병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암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지속적 감염 * 항문 상피내종양(AIN)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9~25세 여성 및 남성 • 1회 0.5ml(근육) • 0, 1, 6개월(3회) * 만 9~14세의 경우 <u>6~12개월 일정으로 2회 접종가능</u> * 2회 접종 일정에서 만약, 2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5개월 이전에 투여한 경우에는 3회 접종

10.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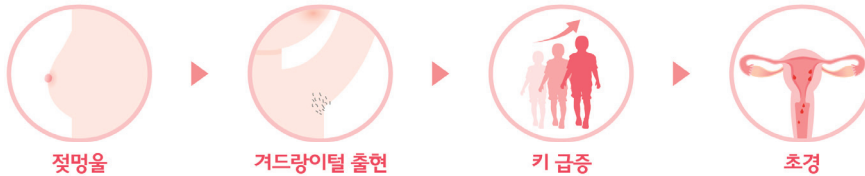
여성의 비밀스러운 성장과정으로 알려진 초경,

누구와 상의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나요?
초경은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초경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발현되며 생식능력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발달과정은 유방발달 ▶ 음모와 액와모발달 ▶ 급격한 키 성장 ▶ 초경 ▶ 배란 순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유방발육이 시작된 후 약 2~3년이 지난 후에 초경이 시작됩니다.



초경은 언제 시작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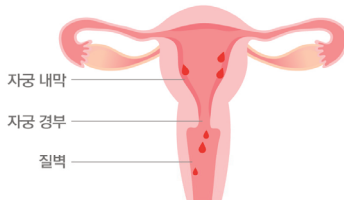
초경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만 12~13세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성징(유방, 음모 발달)이 있으나, 만 15세까지
초경이 없거나, 2차 성징이 만 13세까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성 무월경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경이후 월경은 어떤가요?

초경 후 2년까지는 약 50~80%에서 월경주기가 무배란성으로
불규칙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배란주기를
갖게 됩니다. 초경 후 2년 이내라면 기다려주세요.

비정상 출혈은 어떤 경우 인가요?

초경 후 2년이 경과했는데 월경 주기가 21일 미만 혹은 45일 이상
간격이거나, 7일 이상 지속된다면 비정상출혈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출혈이 많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경통이 있어요!

월경통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통증을 말하며, 월경을 하는 여성의 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자궁, 난소, 혹은 골반 내에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월경기간 분비되는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월경통을 일차성 월경통으로, 골반장기의 이상에 의한 월경통을
이차성 월경통으로 분류합니다.
일차성 월경통인 경우 소염진통제를 통증이 있는
기간에 복용하면 70~90%에서 호전됩니다.
월경통 관련 진통제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하며,
복용 후에도 월경통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B형간염 감염자관리 안내문 (보호자용)




B형간염 관리 안내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간 질환으로, 출산할 때 만성 B형간염 엄마에게서 아기로의 전염이 흔합니다. 대부분 출산 시 예방처치로 면역력이 생기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100명 중 3명 정도는 출생 시 B형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만성 B형간염으로 진행이 될 경우 수십 년 후에 4명중 1명은 간경화나 간세포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 ▶ B형간염은 어린시기에 감염될수록 만성화의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기에 감염된 경우 9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B형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 B형간염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I B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체액으로 전파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시에 엄마로부터 아기에 전파되거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B형간염인 사람과 성 접촉을 하거나 면도기, 주사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 기침, 대화, 수영과 같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I 아이가 B형간염에 걸린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더 진행되면 간경화, 간세포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으로 확인되면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아 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B형간염 아이와 매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가족이 B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I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B형간염은 함께 밥을 먹거나 손을 잡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조절되지 않는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나 전신 가려움증으로 피가 자주 날 경우와 출혈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도록 합니다. 또, B형간염이 있음을 담당선생님에게도 미리 알려서 상처가 생긴 경우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I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에게 아이의 B형간염을 미리 알려으로써, 주사를 맞거나 혈액을 채취할 때 아이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을 받을 때도 약물의 오남용을 막도록 합니다.

I 다른 아이들과 공동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나요?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집단생활을 통해서도 전염의 위험이 없지만, 축구, 복싱 등 상처가 생겨 피가 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상처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양치도구나 귀걸이와 같은 도구도 다른 아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①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해야 합니다.
- 접종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경미한 증상>

-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비교하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이며,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심한 증상>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이상반응이며, 예방접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 후 전신 발진 및 두드러기,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즉시 또는 수십분 내의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

- 그 밖에 평소와 다른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020. 10. 기준)

백신종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원액제조사 및 제조국		유효기간
					제조사	제조국	
BCG(피내)	(주)엑세스파마	피내용건조비저백신에스에스아이주	1.0m/vial	완제품수입	AJ Vaccines	덴마크	18개월
BCG(경피)	(주)한국백신	경피용건조비저백신	12mg/ampule	완제품수입	Japan BCG Laboratory	일본	24개월
	SK바이오사이언스(주)	해파문주	0.5m/vial	국내제조	(주)LG화학	한국	36개월
(주)LG화학		해파문프리필드시린지	1.0m/PFS	국내제조	(주)LG화학	한국	36개월
		유박스비주	0.5, 1.0m/vial	국내제조	(주)LG화학	한국	36개월
DTaP	(주)보령바이오파마	유박스비프리필드주	1.0m/PFS	국내제조	(주)LG화학	한국	36개월
폴리오(IPV)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티에피백신주	0.5m/PFS	원액수입제조	KMB	일본	24개월
	(주)한국백신	아이피박스주	0.5m/PFS	원액수입제조	Elphoven Bologcas BV	네덜란드	36개월
		코박스폴리오PF주	0.5m/PFS	원액수입제조	Elphoven Bologcas BV	네덜란드	36개월
DTaP-IPV	사노피 파스퇴르(주)	테트락심	0.5m/PFS	완제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36개월
	(주)클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0.5m/PFS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36개월
DTaP-IPV /Hib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티에피아이피브이백신	0.5m/PFS	원액수입제조	KMB/Elphoven Bologcas BV	일본/네덜란드	36개월
	사노피 파스퇴르(주)	펜탁심	0.5m/PFS	완제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36개월
Tdap	(주)클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	0.5m/PFS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36개월
	사노피 파스퇴르(주)	아다셀주	0.5m/PFS	완제품수입	Sanofi Pasteur Limited	캐나다	36개월
Td	(주)클락소스미스클라인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PFS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36개월
	(주)엑세스파마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0.5m/PFS	완제품수입	AJ Vaccines	덴마크	36개월
	(주)녹십자	녹십자디티백신프리필드시린지	0.5m/PFS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24개월

백신종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원액제조사 및 제조국		유효기간
					제조사	제조국	
MMR	한국엠에스디(주)	엠엠알II 주	0.5ml/vial	완제 품수입	MSD	미국	24개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오릭스주	0.5ml/vial	완제 품수입	GSK	벨기에	24개월
일본뇌염	(주)녹십자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0.7ml/vial	원액수입제조	KMB	일본	36개월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0.7ml/vial	원액수입제조	KMB	일본	36개월
수두	(주)글로박스	씨디.제박스	0.5ml/vial	완제 품수입	ChengduInstituteofBiologicalProductsCo.,Ltd	중국	18개월
	(주)녹십자	수두박스주	0.7ml/vial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24개월
		베리셀라주	0.5ml/vial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24개월
	(주)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버리셀라주	0.5ml/vial	국내제조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	24개월
장티푸스	보란파마	바리-엘백신	0.5ml/vial	완제 품수입	ChangchunKeygenBiologicalProductsCo.,Ltd	중국	18개월
	(주)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0.5ml/vial	원액수입제조	ATVD-TEAM	러시아	20개월
신증후군 출혈열	(주)녹십자	한타박스	0.5ml/vial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24개월
	사노피파스퇴르(주)	악티브주	0.5ml/vial	완제 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36개월
Hib	(주)LG화학	유하브주	0.5ml/vial	국내제조	(주)LG화학	한국	36개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하브릭스주	0.5ml/PFS	완제 품수입	GSK	벨기에	36개월
A형간염	사노피파스퇴르(주)	아박스80U소아용주	0.5ml/PFS	완제 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36개월
	한국엠에스디(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0.5ml/PFS	완제 품수입	MSD	미국	36개월
페렴구균 (단백결합)	한국화이자제약(주)	프리베나13주	0.5ml/PFS	완제 품수입	MSD	미국	36개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 품수입	Pfizer	미국	36개월
					GSK	벨기에	36개월



백신종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원액제조사 및 제조국		유효기간	
					제조사	제조국		
폐렴구균 (23가다당질)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 염증 (HPV)	한국엠에스디(주)	프로디아스23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MSD	미국	24개월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MSD	미국	36개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48개월	
	(주)녹십자	지세플루퀴드라벨린트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12개월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V 테트라백신주	0.5ml/PFS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12개월	
	보령제약(주)	보령플루Ⅳ-TF테트라백신주	0.5ml/PFS	원액수입제조	Sanofi Pasteur S.A	프랑스	12개월	
	(주)한국백신	비알플루텍 I 테트라백신주	0.5ml/PFS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12개월	
	인플루엔자 4가	일양약품(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0.5ml/PFS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12개월
		동아ST(주)	코박스플루4가PF주	0.5ml/PFS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12개월
		(주)LG화학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12개월
사노피파스트(주)		백시플루4가주사예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원액수입제조	Sanofi Pasteur S.A	프랑스	12개월	
SK바이오사이언스(주)	(주)LG화학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12개월	
	사노피파스트(주)	플루아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GSK	독일	12개월	
SK바이오사이언스(주)	박씨 그리프테트라	0.5ml/PFS	완제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12개월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셀 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	12개월		

14.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 백신별/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

- 예방접종 대상자는 2013년, 2016년 ~ 2018년 출생아로, 만1~3세, 6세 (생후 12, 24, 36, 72개월)까지 권장하는 예방접종률은 다음과 같음

〈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6세 백신별/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 2019 〉

(단위: 명, %)

구 분		BCG	HepB	DTaP	IPV	Hib	PCV	MMR	VAR	HepA	JE	연령시기별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완전접종률
만 6세 (2013년생)	접종자	430,109	428,678	408,100	414,286	418,695	-	417,375	430,419	-	402,567	373,865
	접종률	97.6	97.3	92.6	94.0	95.0	-	94.7	97.7	-	91.3	84.8
만 3세 (2016년생)	접종자	403,079	401,811	397,266	401,848	396,693	399,989	402,481	401,719	393,477	386,164	376,696
	접종률	97.9	97.6	96.5	97.6	96.4	97.2	97.8	97.6	95.6	93.8	91.5
만 2세 (2017년생)	접종자	354,827	353,309	347,315	353,381	348,475	350,693	353,469	352,983	-	-	341,407
	접종률	97.9	97.4	95.8	97.5	96.1	96.7	97.5	97.3	-	-	94.2
만 1세 (2018년생)	접종자	323,918	321,745	322,272	322,036	322,329	321,558	-	-	-	-	319,182
	접종률	97.9	97.3	97.4	97.3	97.4	97.2	-	-	-	-	96.5

* 만 1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3회, IPV 3회, Hib 3회, PCV 3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만 2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4회, IPV 3회, Hib 4회, PCV 4회, MMR 1회, VAR 1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만 3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4회, IPV 3회, Hib 4회, PCV 4회, MMR 1회, VAR 1회, HepA 2회 및 JE 불활성화 백신 3회 또는 약독화 생백신 2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만 6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5회, IPV 4회, Hib 4회, MMR 2회, VAR 1회 및 JE 불활성화백신 4회 또는 약독화 생백신 2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기타 상세한 현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 지식창고 → 전국 예방접종률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보건·사회·복지 → 보건 → '전국예방접종률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 록]

IV 민원상담 사례집

1. 국가예방접종사업	209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41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248
4. 이상반응 관리	251



1 국가예방접종사업

❖ 일반원칙

Q 1.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접종이 지연된 경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1.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차수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합니다. 표준예방접종간격보다 길어지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연된 예방접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받도록 합니다.

Q 2. 권장되는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일찍 접종한 경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2. 최소접종연령과 최소접종간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재접종해야 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동시접종을 못했거나, 약독화 생백신간 유지해야 할 최소접종간격(4주)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동시접종 시에는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고, 국소 반응을 구별하기 위해 주사 부위는 적어도 2.5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 최소접종간격 또는 최소접종연령에서 4일 이하의 오차는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으로 접종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간 최소접종간격(7일) 및 다른 생백신간 최소접종간격(4주)은 제외)

Q 3. 만 6세 아동으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재접종을 하려고 할 때 얼마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나요?

A 3. 불활성화 백신은 백신에 따라 이식 후 6개월~12개월에 시작하고, 약독화 생백신은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시 접종합니다. 면역학적 판단 기준은 (1) 최근 3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2) 이식편대숙주병이 없고, (3) 앞서 접종받은 불활성화 백신에 대하여 적절한 면역반응을 보인 경우입니다.

Q 4.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전에 접종한 백신을 재접종해야 하나요?

A 4. 항암치료 또는 방사능 치료 이전에 접종했던 백신은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중 면역저하상태에서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 재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이후 접종 시 MMR, 수두와 같은 약독화 생백신은 체내에서 백신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하므로 면역저하 환자 또는 치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감염우려가 있을 수 있어 치료 후 일정 기간 간격(최소 3개월)을 두어야 합니다.

Q 5. 질병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접종을 할 수 없나요?

A 5. 국소 스테로이드를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나 기관지에 분무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등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독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은 접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투여시는 불활성화 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량 스테로이드(프레드니손 2mg/k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 또는 체중이 10kg 이상 소아에서 20m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를 투여받는 사람은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하면 안되며,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고 최소 1개월 이후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합니다.

Q 6. 접종 시 아이가 움직여서 백신의 정량이 투여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6. 적정량의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경우 투여된 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면역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접종을 권장하며, 이 때 정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을 비강 투여 후에 재채기를 한 경우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 투여 후 구토한 경우는 재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Q 7. 만 1세 아동이 근육주사를 접종할 때 삼각근 접종도 가능한가요?

A 7. 연령별 주사부위는 근육량, 피하지방층 두께, 백신량, 주사기술에 근거해 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2세 연령의 경우 대퇴부 전외측이 선호되나 근육량이 적당한 경우 삼각근 접종도 가능합니다. 12개월 미만 영아에서는 가장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대퇴부 전외측이 추천되며, 만 3세 이상에서는 삼각근이 선호됩니다. 다만, 삼각근에 접종할 수 없는 경우 대체로 외측광근에 접종합니다.

사업운영 총괄

Q 1. 출생신고 전 신생아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p29 참조)

A 1.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 임시 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와 함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출생 후 1개월 이상)은 보건소에서 보호자 인적 확인 후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접종가능합니다.

※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아동번호 미발급 시설아동은 시설아동번호 발급 시까지 관리번호로 접종

※ 생후 1개월 이내 임시 신생아번호로 비용신청 가능한 접종: B형간염 1차, 피내용 BCG

Q 2. 외국인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p30 참조)

A 2.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Q 3.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3. 지자체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이동통신 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4.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p33 참조)

A 4.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공지사항’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5. 예방접종비용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A 5. 위탁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예방접종비용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환심사 후 지급합니다.

Q 6.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p14, 시스템 등록방법 p126 참조)

A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시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되며,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약 1일 소요) 후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접수, 심사 후 지급합니다.

* 백신제조번호 미등록 등 불완전 접종내역은 비용상환 신청 불가

Q 7.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p15 참조)

A 7.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기한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접종기록이 등록되지 않으면 중복접종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접종 당일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

Q 8.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A 8. 보건소의 비용상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환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 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Q 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접종력이 없고, 보호자도 기억을 못해 우선 접종을 시행하였으나, 나중에 보호자의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접종력을 확인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이전 과거 접종력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한 중복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접종 당시 과거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비용상환이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시한 중복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10.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이라는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p24, p32 참조)

A 10.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이식 후 재접종이 필요하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만 12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3년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가능

Q 11. 백혈병 등의 혈액종양 또는 고형종양으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1.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이전에 접종 받았던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면역저하 상태 동안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는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필요한 경우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재접종 등록방법은 해당 접종차수 접종일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등록이 가능하고, 의학적 소견을 선택(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 입력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세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Q 12.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이 제품명으로 구분되어 비용공고 되는데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12. 동일 백신의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목(제품명) 공개는 수급관리 정확도 제고 및 신규백신 도입 절차 명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구분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에 관계없이 동일 백신인 경우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 (예시) HepB(0.5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헤파문주, 유박스비 → 백신비 동일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 > 전자관보’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공고/공시’에서 확인 가능

백신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심사기준

1. 결핵(BCG)

Q 1. 피내용(BCG) 접종이 지연된 경우 TST 검사비용도 지원되나요?

A 1. 생후 3개월 이상 접종이 지연된 경우 결핵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가 필요하나, 검사비용은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BCG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만 5세 미만인 어린이의 TST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BCG 접종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Q 2. 피내용 BCG 예방접종 후 반흔이 없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 2. BCG에 의한 반흔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반흔 유무로 재접종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재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3. 피내용(BCG) 접종 시 바늘이 빠져 백신이 흐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3. 같은 부위에 권장 용량을 주입합니다. 접종부위를 달리할 경우 반흔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접종하고, 특별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접종 당일 재접종을 합니다.

Q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대상자의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HBIG) 투여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를 접종해야 하나요?

A 4. HBIG와 BCG 접종 간에 특별한 간격이 필요하지 않아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추어 접종합니다. 신생아에게 HBIG 투여 후 BCG 백신을 접종했을 때, BCG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간격을 두고 접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BCG백신은 항체 함유 혈액제제와 투여간격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Q 5. 해외에서 귀국한 13개월 영아로, MMR과 수두 접종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TST 검사를 해야 하나요?

A 5. MMR과 수두 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TST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접종을 실시합니다. 홍역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이론적으로 TST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MMR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홍역 백신 접종 후 최소 4주가 지난 후에 TST를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TST 시행 후 MMR 등의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특별히 지켜야할 간격은 없습니다.

Q 6. 해외에서 귀국하여 BCG 접종을 하지 않은 만 6세 아동의 접종도 지원이 되나요?

A 6. BCG 접종은 결핵 중 파종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파종결핵의 고위험군 연령대는 만 5세 미만 이외 연령에서는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며, 비용지원도 불가합니다.

2. B형간염(HepB)

Q 1. B형간염 기초접종 후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재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건강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초접종 완료 후 일률적인 항체검사를 권장하지 않아, 해당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B형간염 고위험군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은 검사가 필요하며, 해당결과에 따라 재접종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2. 미숙아의 B형간염 4회 접종비용은 상환되나요?

A 2. ① HBsAg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양성인 산모에게서 37주 미만에 태어난 2kg 미만의 미숙아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 1개월, 2개월, 6~7개월에 총 4회의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비용은 모두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② HBsAg이 음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미숙아의 1차 접종은 생후 1개월이나 생후 1개월 이전이라도 의학적으로 안정되고 체중 증가가 잘 이루어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실시합니다. B형간염 음성산모에게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4회 접종을 실시한 경우 실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출생 시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총 3회 접종 비용상환 가능).

※ 접종기록 등록 시 의학적 소견을 기입하고, 접종일자 순으로 등록(1차에 두 번 등록: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 추가등록)합니다.

Q 3. 과거 접종력이 없는 만 11세 아동에게 B형간염 접종 시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3.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만 11세 이상 연령에서는 1.0ml 백신으로 접종하고, 1.0ml 백신비용을 상환합니다.

※ 2018. 8. 24.부터 지원 적용

※ 전산등록되지 않은 접종력을 우선 확인하고, 접종력이 없는 경우 기초접종 3회 가능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Tdap)

Q 1. 만 4세 된 아이가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접종일정과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5차 접종은 생략합니다. 비용상환은 해당 접종차수(DTaP 4차)에 접종내역을 등록하고 비용상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접종은 만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 접종합니다.

Q 2. 만 9세 된 아이가 DTaP 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가능한가요?

A 2.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d 백신으로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을 완료하되, 이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반드시 접종하고 가능하면 첫 접종을 Tdap으로 접종합니다. Tdap 접종은 <Tdap-6차>에, Td 접종은 <Td(그외)>에 순차적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표준접종일정대로 해야 하고, 추가 접종시기에도 Tdap 백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 모두 사용 가능

Q 3. 만 4~6세에 DTaP 5차를 접종하지 못한 소아가 만 7세 1개월에 내원하여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3.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하고 <Tdap-6차>에 등록하며, 해당 접종은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이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표준접종일정대로 해야 하고, 추가접종시기에도 Tdap 백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없음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 모두 사용 가능

Q 4. 생후 18개월에 DTaP 4차를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추가)에 등록했습니다.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4. DTaP 4차 권장 접종시기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IPV 접종력은 4차접종의 최소접종연령(만 4세)이 준수되지 않아 유효한 접종이 아니며,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5. DTaP 3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 후 4차를 접종한 생후 18개월 아동의 경우 재접종 해야 하나요?

A 5.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DTaP 3차와 4차의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이나,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실시한 경우 재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개월 이내 접종은 무효가 되므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이 때 디프테리아, 파상풍 함유 백신은 너무 많이 접종할 경우 접종부위에 국소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 7세 이전에 총 6회를 초과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이 후 접종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6. DTaP 단독백신으로 1차 접종 후 DTaP-IPV 혼합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A 6.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접종(1~3차)은 동일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DTaP 1차 기초접종 시작을 단독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이전에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합니다. 추가접종(4차, 5차)은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제조사의 백신을 백신 수급 부족, 유통의 어려움 등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접종을 할 수 있으나 이전과 동일한 제품을 접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현재 유통되는 단독 DTaP 백신은 보령 DTaP-IPV와 교차접종 가능

Q 7. DTaP 접종을 완료한 만 10세 아동에게 Tdap을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7. DTaP 접종을 완료한 만 10세 아동에게 Tdap을 접종 한 경우 유효접종으로 간주되어 비용상환 가능하며, 만 11~12세 Tdap 백신은 생략 가능합니다.

Q 8. DTaP 기초접종(3차)을 완료한 만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8.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만 6세 Tdap 백신을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비용상환 가능하며, 향후 만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Q 9. DTaP 기초접종(3차)을 미완료한 만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9.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만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이른 접종으로 비용상환 불가하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DTaP 백신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이후 만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Q 10. 영유아시기에 DTaP 접종을 완료한 만 10세 아동에게 DTaP 접종을 했습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0. DTaP 기초 및 추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10세 아동에게 DTaP를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은 가능하며, 만 11~12세 Tdap 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만 11~12세 Tdap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Q 11. 만 8세에 Td 백신으로 기초 3회를 0, 1,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 아동이 만 11세에 Tdap백신 접종을 해도 되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A 11. 1만 11~12세 접종은 Tdap 백신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권장접종간격(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6차 추가접종시기에 Tdap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4. 폴리오(IPV)

Q 1. 국외에서 OPV로 기초(1~3차)접종을 완료한 만 6세 아동입니다.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한 경우 4차 접종은 생략하나요?

A 1. 3차 접종 시기와 상관없이 나머지 접종을 IPV로 실시하여 총 4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OPV(Oral Polio Vaccine)와 IPV(Inactivated Polio Vaccine)간 교차접종 가능

Q 2. 생후 2개월에 폴리오 1차 접종 후 다음 접종이 지연된 만 4세 아동이 2차와 3차를 4주 간격으로 접종한 경우 재접종해야 하나요? 비용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A 2. 만 4세 이후에 폴리오 3차 접종 시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의 간격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만 4세 이상에서 3차 접종 시 2차 접종과 유지해야 할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로, 이보다 이르게 3차 접종을 시행하였다면 4차 접종이 필요하고, 이 경우 4차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만 4세 이상에서 폴리오 3차 접종을 할 경우 2차 접종과의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임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Q 1. 만 6세 아동이 Hib 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다면 접종권장연령(생후 2~59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1. 일반적으로 만 5세(생후 60개월) 이상의 소아에서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 Hib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어 접종이 필요 없으며 그에 따라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단, 침습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 5세 이상 소아가 Hib 접종력이 없다면 1~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침습 Hib 감염의 고위험군: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아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 가능(2회 접종 시 2개월 간격)

Q 2. DTaP와 폴리오는 2차까지, Hib 백신은 3차까지 접종한 생후 15개월 아동이 Hib 4차를 5가백신(DTaP-IPV/Hib)로 접종해도 되나요?

A 2. 권장하지 않습니다. 5가백신(DTaP-IPV/Hib)은 기초접종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어있으므로 Hib 4차접종시에는 해당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6. 폐렴구균(PCV, PPSV)

Q 1.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0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A 1. 일반적으로 건강한 만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에게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만 5세 이상이라도 과거 접종력이 없으면 폐렴구균(단백결합)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2. 생후 24~59개월 연령에서 폐렴구균 1차 접종을 10가 백신으로 시작한 경우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장되는데 생후 58~59개월에 10가 백신으로 1차 접종한 아동의 2차시기에 60개월이 도래한 경우 2차 접종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2. 일반적으로 건강한 만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에서는 폐렴구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폐렴구균 1차 접종을 10가 백신으로 하고 2차시기에 만 5세(생후 60개월)가 넘었다면 2차 접종은 불필요하며, 비용상환에서 제외 됩니다.

Q 3.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3세 소아입니다. 이전에 폐렴구균 백신을 4회 모두 접종하였고 폐렴구균 다당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3.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은 이전에 10가 또는 13가 단백질결합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2세 이상에서 다당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4. 이전에 폐렴구균 10가 백신으로 접종하였는데 3차 접종을 13가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만약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다음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실시하나요?

A 4. 폐렴구균 10가 백신과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기초 및 추가접종 시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을 한 이후 접종은 두 가지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종하되, 접종 횟수가 많은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우발적인 교차접종 발생 시 접종력을 인정하여 비용상환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과거 접종력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Q 1. MMR 2차 접종을 받은 소아가 가와사끼병으로 1주 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았습니다. MMR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MMR 백신을 투여하고 2주안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면역글로불린 주사 후 최소 11개월 뒤에 MMR 백신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재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2. 유행 상황이 아닌데 MMR 1차 접종을 생후 11개월에 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MMR 1차 최소접종연령(생후 12개월)을 미준수한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최소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 시 이미 실시한 접종은 무효로 간주하고 다시 접종해야 하며 재접종은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3. 국내 일부 지역에서 홍역 유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후 12개월 이전이라도 MMR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3. 홍역 유행상황 시 해당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6~11개월 영아는 MMR 가속접종이 가능하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속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후 12개월 이후 권장되는 접종일정에 따라 2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 유행지역 방문 예정자는 비용지원 대상 제외

8. 수두(VAR)

Q 1. 수두 접종이 지연된 경우 비용상환 기준은?

A 1.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접종력이 없는 만 12세 이하 아동은 1회 접종이 필요하고,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과거 수두병력 및 접종력이 없는 만 13세 이상 아동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9. 일본뇌염(JEV)

Q 1. 일본뇌염 1차를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하고 2차 시기에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을 원하는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1.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효과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한 경우는 2차 접종도 표준접종일정에 맞춰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발생 시 접종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불활성화 백신 1차란에 전산등록 필요)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 만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0.7ml 백신이 없어 0.4ml 백신 2vial을 사용하여 접종할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식약처 사용허가 권장기준에 따라 만 3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0.7ml 백신을 사용하여 권장용량(0.5ml)을 접종합니다. 0.4ml 백신으로 접종 시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Q 3.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를 만 9세에 접종한 경우 5차 접종을 해야 하나요? 비용지원은 되나요?

A 3.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5차 접종은 필요하지만, 최소접종간격(5년)을 고려하여 접종해야 하므로 5차 시기 연령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용지원은 제외됩니다.

Q 4.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지연하여 만 4세에 접종한 아동이 만 6세에 4차를 접종한 경우 해당 접종력이 인정되나요?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만 4~9세에 실시한 경우 다음 접종은 만 12세에 실시합니다. 만약 이르게 접종했다면 해당 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며,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재접종은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만 12세에 실시하고, 이때 시행된 접종인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Q** 5.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이 이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데, 기존에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한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5.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볼 때,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 2차 접종 후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교차접종 되었을 때 강한 기왕반응이 관찰되었고, 문제가 되는 이상반응도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접종은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을 사용하여 나머지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Q** 6. 중국에서 약독화 생백신 1차를 생후 11개월에 접종한 경우 재접종을 생후 12개월에 해야 하나요?
- A** 6. WHO에서 약독화 생백신은 8개월부터, 재조합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은 9개월부터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후 12개월에 접종을 추천하지만 중국에서 접종한 생후 11개월 접종은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하며, 다음 접종은 2차 접종 권장시기에 접종하도록 합니다.

10. A형간염(HepA)

- Q** 1. 2011년 출생아의 조혈모세포 이식 후 A형간염 예방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A** 1. A형간염 백신은 2012. 1. 1.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생은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2. 중국에서 약독화 생백신으로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을 국내 유통 중인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이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A** 2.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A형간염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1회 접종이 권고되므로 중국에서 약독화 생백신으로 1회 접종을 한 경우 A형간염 접종 완료자로 판단합니다.
- ※ 위 사례 보호자에게 더 이상의 A형간염 접종이 불필요함을 설명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모 기능 또는 의학적 소견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접종관리를 합니다.

11. 인플루엔자(Flu)

Q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1.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1회 접종력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는 2회 접종이 필요하며, 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소아와 9세 이상의 소아는 매 절기 1회 접종합니다. 사업시기동안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한 내역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주에 따라 접종기준이 바뀔 수 있고, 사업시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으로 인플루엔자 출장접종이 가능한가요?

A 2.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보관의 문제와 불충분한 예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미흡,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의 대처문제 등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접종 주체와 관계없이 기관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 수행하는 형태의 단체 예방접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Q 3.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처음 하는 만 8세 11개월 아동입니다. 2차 접종시기에 만 9세가 되는데 2차 접종을 해야 하나요?

A 3. 2회 접종이 필요한 만 8세 아동에서 1차 접종 후 2차 접종할 시기에 만 9세가 되더라도 2차 접종을 해야 하므로,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2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및 상담비)

1. 사업참여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공급

Q 1.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업로드 했는데, 보건소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확인증’을 모두 등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계약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백신 공급 협약서만 업로드한 경우 보건소 화면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Q 2. (의료기관) 최초 계약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공급 협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백신공급기관이 변경된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2. 백신 공급처 변경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변경된 협약서를 제출(업로드)하면 변경신청이 완료 됩니다. 보건소 승인이후부터 변경정보가 반영되므로, 승인이 지연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계약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접종할 경우 선택하여 계약 체결 가능한가요?

A 3. 가능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는 HPV 2가와 HPV 4가로 각각 제출(업로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두 가지 백신 모두 접종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협약서를 추가 제출(업로드)하고, 보건소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Q 4. (의료기관) HPV 백신 접종력 등록 시 백신정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미 비용이 지급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4. 접종내역을 삭제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비용지급 심사가 진행된 접종에 대한 수정/삭제는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 가능하니, 해당 보건소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5. (의료기관) 상담비 지급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5.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 상담비지급결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6. (의료기관) 건강상담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은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상담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A 6. 건강상담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R688), 특정내역구분(MT002)에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 대상자 코드(F012)가 기재된 항목에 대한 심사결과정보를 받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접종정보 등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정보를 우선 확인하시고,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시 상담코드 기재여부(코드 누락 시 질병관리청에서 확인불가, 코드기재 후 재청구 필요), ② 상담동의여부 등록정보, ③ 상담비 및 접종비 청구시점(청구시점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는 상담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④ 접종비 지급결과(실시기준 미준수 등으로 비용상환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불가), ⑤ 진료일(요양개시일)과 접종일자 재확인 등

2. HPV 예방접종 실시

Q 1. 왜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을 권장하나요?

A 1. HPV 백신은 성인 연령에서보다 어린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면역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성 접촉이 발생하기 전에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시작 연령이 만 13~14세(백신별로 다름) 이상인 경우 면역력 획득을 위해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Q 2. 만 12세에 HPV 2가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5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았 습니다. 2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HPV 2가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접종력이 유효하며 2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2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HPV 4가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간격이 5개월일 경우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하므로 2차 접종 비용은 상환불가하며, 접종이 완료되는 3차시기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

Q 3. 만 11세에 4개월 간격을 두고 HPV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3. HPV 2가 백신은 만 14세까지 1차 접종 후 최소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HPV 4가 백신은 만 13세까지 1차 접종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총 2회의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와 2차 접종간 최소접종간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는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3차 접종시기가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4. HPV 1차 접종을 2가 백신으로 접종한 아동이 2차를 4가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2차 접종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A 4 두 가지 HPV 백신을 교차해 사용한 경우의 안전성, 면역원성, 효과 등에 관한 연구데이터는 제한적이므로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교차 접종이 된 경우 해당 접종력을 인정하여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하지만, 보호자에게 교차접종 발생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Q 5. HPV 1차 접종 후 1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5.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초회 접종 연령에 따라 2차 또는 3차 접종을 실시하여 완료합니다.

3.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관련

Q 1.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대상자에게 건강상담 또는 HPV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A 1. 위탁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상담과 HPV 예방접종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 본인이 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방접종서비스만 제공 가능

Q 2.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건강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강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 점검표에 건강상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경우 건강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시 등록 화면 하단에 '건강상담 동의안함'에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또한 건강상담을 시행하지 않은 건에 대한 건강상담비용(진료비) 청구는 불가하므로 주의합니다.

Q 3.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HPV 예방접종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3.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4. 의료급여자(1종/2종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건강상담비용(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나요?

A 4.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은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른 진료 행위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 시 요구되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건강상담비용(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자의 보험자부담금 청구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안내



4. 상담비 진찰료 산정방법 등

▶ 일반사항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보훈 대상자 포함여부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이외 의료급여, 보훈 포함
2	외래 및 입원 시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라 예방접종과 진찰·상담이 실시된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각각의 본인부담률 적용

▶ 수가산정 관련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야간·공휴 가산 적용 여부	현행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야간·공휴·토요 가산 적용함
2	같은 날 동일 의사에게 여성청소년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 따른 진찰·상담에 대한 진찰료 1회만 산정 ※ 다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 질환을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 가능 (분리청구)
3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선택 진료 추가비용 산정 여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날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산정 가능(분리 청구)
4	예외인정 대상(예: 면역저하자에게 3회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의 경우 진찰료도 3회 산정 가능한지 여부	표준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
5	HPV 예방접종 시행일 외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하는 경우 진찰료 인정 여부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는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청구관련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함																				
2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내역은?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 대상자) 기재함																				
3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된 본인 일부 부담금은?	<p>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p> <p><건강보험, 의원 외래 작성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양급여비용총액 2</th> <th>요양급여비용총액 1</th> <th>본인일부 부담금</th> <th>청구액</th> <th>특정내역구분</th> </tr> </thead> <tbody> <tr> <td>주1)15,310</td> <td>15,310</td> <td>주2)4,500</td> <td>주3)10,810</td> <td>MT002 F012</td> </tr> </tbody> </table> <p>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5,31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X 30%(외래 본인부담률) = 4,500원(100원미만 절사)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p> <p><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원 외래 작성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양급여비용총액 2</th> <th>요양급여비용총액 1</th> <th>본인일부 부담금</th> <th>청구액</th> <th>특정내역구분</th> </tr> </thead> <tbody> <tr> <td>주1)15,310</td> <td>15,310</td> <td>주2)1,000</td> <td>주3)14,310</td> <td>MT002 F012</td> </tr> </tbody> </table> <p>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기재 = 2종 수급권자 그밖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 1,000원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 = 15,310원-1,000원 = 14,310원</p>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주1)15,310	15,310	주2)4,500	주3)10,810	MT002 F012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주1)15,310	15,310	주2)1,000	주3)14,310	MT002 F012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주1)15,310	15,310	주2)4,500	주3)10,810	MT002 F012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주1)15,310	15,310	주2)1,000	주3)14,310	MT002 F012																		
4	HPV 예방접종 시행 당일 진찰·상담 외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	<p>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정내역구분</th> <th>특정내역</th> </tr> </thead> <tbody> <tr> <td>예방접종</td> <td>MT002</td> <td>F012</td> </tr> <tr> <td>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td> <td>MT001</td> <td>R</td> </tr> </tbody> </table>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	MT001	R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	MT001	R																				

5. 이상반응 관련

Q 1. HPV 백신은 안전한가요?

A 1. HPV 백신은 전 세계 74개국(2019. 8. 기준)에서 국가예방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 7월까지 2억 7천 건 이상 접종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수집된 이상반응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HPV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여전히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Q 2. HPV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 HPV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타 영유아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HPV 백신의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 부종, 발적, 두드러기 같은 국소 반응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반응이 있으며, 이런 증상은 보통 2~3일 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매우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후 2020. 11. 30. 기준, 약 170만 접종 건 중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발열 등의 증상(116건, 0.007%) 발생,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 0건), 이는 건강상태가 좋은날 접종하기, 접종 후 반드시 20~30분간 접종기관에 앉거나 누워 경과 관찰하기 등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HPV 백신은 타 백신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빈도가 높은 편

Q 3.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던데 사실인가요?

A 3.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3년 자국에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 등의 이상사례에 대해 접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2014년 2월, 7월). 또한 일본 이외에 HPV 백신을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성 문제없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여전히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음).

* 백신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난소부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온라인 이슈 등은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며, 세계보건기구 및 해당 국가들(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그 사례들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

Q 4.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A 4.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감시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Q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등록에서 사업 참여여부 체크 후 산모의 B형간염 검사결과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대상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 및 저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 검사결과지 입력 후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 등록, 산모검사결과지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완료

Q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2. 산전 진찰기관 또는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음에도 산모가 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만 지원 가능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는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 자비부담

Q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3.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이 필요합니다.

※ 2014년 이전 사업참여자 중 예방처치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쿠폰발급자)의 경우 비용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전산등록 전환 승인 처리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불가

※ 구독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독한 기관에서 5년간 보관(단, 관리중 대상자는 관리종료 시까지 보관필요)

Q 4. 대상자가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하나요?

A 4. 출생 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당해연도 비용지원 대상자라면 중간 참여 가능합니다. 중간참여자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전산등록내역 기준 다음 예방처치일정부터 동 사업에서 지원됩니다.

* 신규대상자 신청 시 필요정보 및 서류: 사업대상자 분만정보(임신기간, 분만방법, 출생체중 등), 해당아 임신 당시 산모 검사결과지,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전산등록방법(보건소):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등록]에서 인적정보 조회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필수정보 입력 저장

Q 5. 출생신고가 지연된 신생아의 경우 예방접종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A 5.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정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7자리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경우 다음 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심사가 제한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번호가 3개월 이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시관리번호 등으로 인적정보 보완이 안 될 경우 대상자 추적관리 필요(대상자 추적불가 시 '신생아번호관리' 메뉴에서 사유등록 후 비용지급 처리 가능)

Q 6.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6.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단, 항원·항체 검사에 한하여 위탁의료기관 이용가능).

Q 7. 항원·항체 검사를 EIA, CIA, ECL 등 권장하는 정량검사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7. 사업에서 권장하는 항원·항체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항원 또는 항체 검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시행한 경우는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8. 기초 1~3회 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1차 재접종을 실시한 아동입니다. 2차 항원·항체 검사를 하지 못하고 2차 재접종을 시행하였는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8.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에 따른 진행순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 불가합니다. 1차 재접종 후 반드시 2차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9. (의료기관) 항원·항체검사 결과 항체가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입력 하였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데 결과 등록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9. 항원·항체 검사결과가 항원(음성)/항체(양성) 또는 항원(양성)/항체(음성)인 경우는 전산등록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어 의료기관 등록화면에서는 접종력만 확인 가능합니다.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정보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10. ‘예방접종등록’ 화면 접종일에 보라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인적정보 하단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란은 공란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맞나요?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

A 10.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수첩(쿠폰) 대상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접종/검사 미완료된 수첩(쿠폰) 대상자의 산모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하고, 보건소에서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내 [대상자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완료’ 체크 후 ‘대상자승인’ 버튼 클릭하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이후 검사 및 재접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으로는 더 이상 비용지원 불가

Q 11. (의료기관) 산모의 인적정보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없나요?

A 11. 산모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검사결과지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산등록정보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12. (의료기관) 2013년 이전 출생아로 과거 쿠폰지원 대상자입니다.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12. 2008년 이후 대상자의 경우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비용지원을 위해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득 후,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로 '전환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하 PPSV23), 폐렴구균 13가 단백질합 백신(이하 PCV13)

접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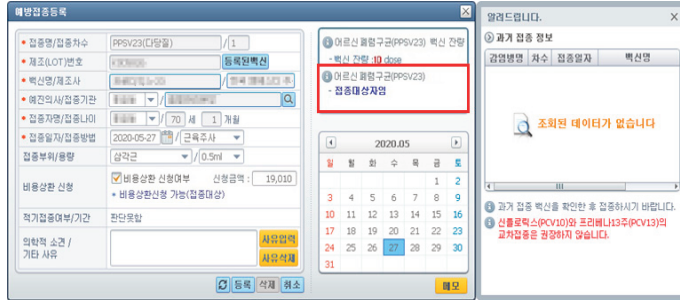
Q 1. 외국인도 지원가능한가요?

A 1. 네, 지원됩니다. 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하며, 피접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2. 참여의료기관인데, 접종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2.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3. 접종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3.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에 접종이력이 있을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접종력을 이전해야 되므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으로 연락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시행

Q 4.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력이 있을 경우 PPSV23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 4. 네,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연령에서 이전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회 재접종합니다.

Q 5.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하였는데, 5년 뒤에 추가접종 해야 되나요?

A 5.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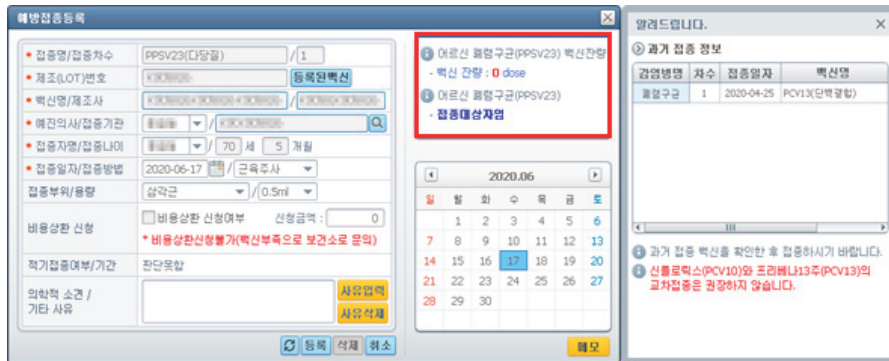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2017) p.266

Q 6.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하였는데, 추가로 PCV13 접종이 필요한 경우 접종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A 6. PPSV23 접종일로부터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며, 접종비용은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7. 접종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했는데, 비용상환 신청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7. 백신잔량이 '0dose'인 경우 비용상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록은 우선 등록하신 후, 관할 보건소에 재분배 요청합니다. 재분배 후 의료기관에서는 기존 접종기록을 삭제하고, 접종정보(실제 접종일 등록, 제조번호 등)를 재등록시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Q 8. 폐렴구균 백신 과거 접종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과거 접종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제로 접종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나요?

A 8. 이전 접종력을 모를 경우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국소반응은 첫 번째 접종보다 두 번째 접종 후에 더 흔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국소반응 발생 후 5일 이내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Q 9. 과거에 PCV13을 접종받았다고 하는데,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PPSV23 접종이 가능한가요?

A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에 의거하여 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기록은 등록되어야 하나, 성인 예방접종의 경우 전산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피접종자가 PCV13을 접종했다고 할 경우 접종일로부터 1년 후(최소 8주) PPSV23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접종력이 전산등록 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 필요

Q 10.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PCV13 접종을 고려해야 되나요?

A 10.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를 삽입한 환자의 경우 PCV13 접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공급

Q 11. 백신이 파손되거나 비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품이 가능한가요?

A 11.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로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 교육 및 위탁계약

Q 12. 2020년 사업 시행 시 서면 교육자료로 수료하였는데, 온라인 콘텐츠로 다시 수강해야 되나요?

A 12. 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전자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온라인 교육(2021.3.2.~)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후 '성인 국가 예방접종사업' 탭에 교육수료번호 입력하시고 참여확인증을 작성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승인처리 되면 사업에 참여됩니다.

Q 13. 2020년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3월까지의 사업을 할 수 없나요?

A 13. 아닙니다. 지속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기존방식으로 접종하시면 됩니다.

Q 14. 기존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인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참여확인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기타사업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A 14. 보건소에서 참여확인증 승인처리가 되면 '기타사업'의 사업기간이 자동으로 종료 처리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교육이수

- Q** 1. (보건소) 계약체결 전 위탁의료기관 교육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A** 1.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체결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의 기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 이내의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함
- Q** 2. (의료기관) 계약 체결 후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 건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한 비용상환 참여일 기준
- Q** 3. 기존에 사업 참여를 하였으나 폐업하여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 A** 3.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폐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연계를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예방접종업무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기존 관할 보건소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전한 지역 관할 보건소와 다시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 이내의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함
- Q** 4.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적이 없는 일부 백신에 대한 접종을 중단하여 위탁계약 참여백신 정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 4.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항목이 변경된 경우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확인증 수정 및 제출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

Q 5.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반드시 의사가 이수하여야 하나요?

A 5.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 및 위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Q 6. (의료기관)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NIP사업 관련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6. 교육과정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소속구분으로 이수가능합니다.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나의정보”에서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탈퇴 후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탈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에 로그인 후 “내정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권한에 대한 승인 상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상단의 권한부가정보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관리USER(학습자) 권한 승인요청 관련은 ☎ 043-719-8397로 문의

Q 7. (의료기관) 사업 참여 전 보건소 주최 사업 설명회 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7. 당해년도 기본교육 수료 시 보수교육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Q 8. (의료기관) 봉직의로 있던 의료기관에서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 기본교육을 수강 하였습니다. 개업하여 의료기관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교육을 재수강하여야 하나요?

A 8. 소속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교육 수료 시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1. 등록 및 시스템 운영(위탁의료기관 이용안내)

Q 1. 위탁의료기관의 요양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내정보'에서 회원 탈퇴 후 변경된 소속기관으로 신규 가입하여 필요한 업무권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요양기관 정보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Q 2. 의료기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 부가정보관리' 또는 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Q 3. 예방접종관리에 대한 권한 신청 시 “권한정보가 부적합 합니다.” 등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kdca.go.kr' 추가 후 재신청합니다.

Q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예방접종관리'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A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입완료 후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의' → '권한/부가정보관리' 예방접종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권한이 승인되면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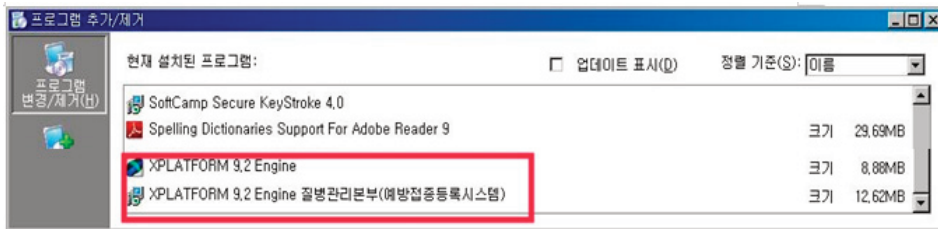
Q 5.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5. 의료정보업체에 질병관리청으로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하신 후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에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기록(비용사업) 연계가 가능한 업체명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전능아이티, 병원과컴퓨터,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소프트, 메디컴코리아, 엠디소프트, 금우뱅킹소프트, 포닥터, 케이컴, 서전정보개발, 나은소프트, 대일전산, 메트로소프트, 엔지테크, 지누스, 자인컴, 메딕스, 이헬스플러스, 뉴마테크, 지센커뮤니케이션,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Q 6. Active X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6. Active X 설치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XPLAFORM 9.2 Engine’, ‘XPLAFORM 9.2 Engine 질병관리청(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삭제합니다.



Q 7.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형식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A 7.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맞는지 보호자에게 재확인하고,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7~8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8.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8.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차트프로그램) 또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 9.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9. 실제 태어난 날짜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는 출생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정보수정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Q 10. “행정안전부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여 등록(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정보가 변경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확인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주민등록번호오류), 보호자에게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주민등록등본 등)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7~8399)로 연락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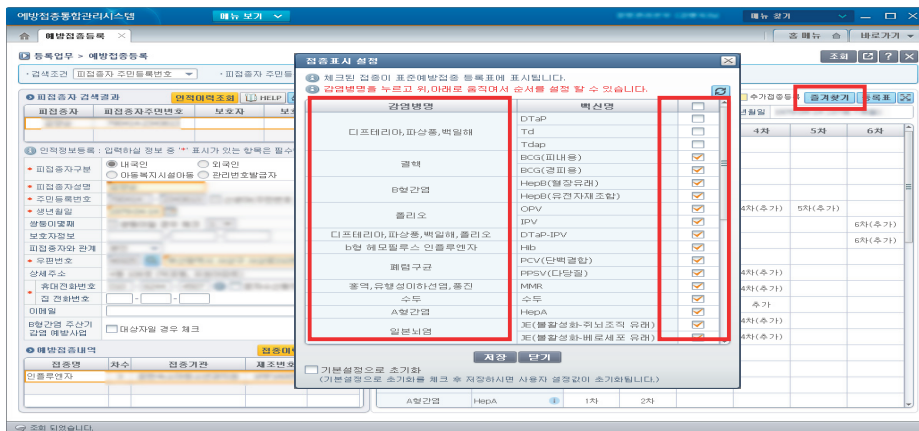
Q 11. 접종내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재접종한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11. 동일백신, 동일차수에 중복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접종차수 접종일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내역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접종정보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접종일 박스가 노란색으로 변경됨

Q 1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표준예방접종 등록표’는 의료기관에서 자주 등록하는 접종만 따로 설정할 수는 없나요?

A 12. 현재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록 화면 오른쪽 상단의 ‘즐거찾기’를 클릭하여 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을 선택하거나 감염병 명을 Drag&Drop하여 순서를 변경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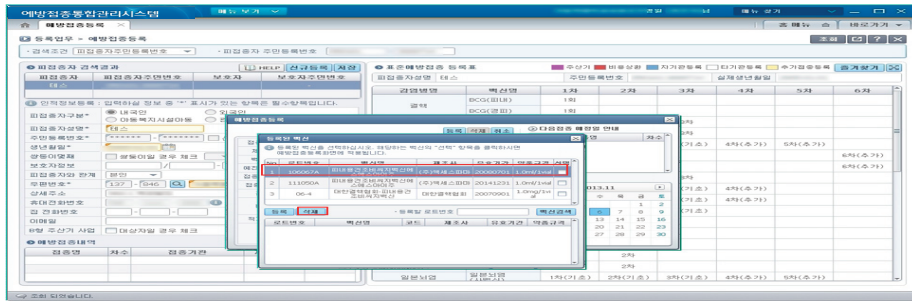


Q 13.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13.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Q 14. 접종내역 등록 시 매번 백신제조번호를 검색해야 하나요?

A 14. 자주 사용하는 백신제조번호를 설정(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화면의 차수 선택 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등록된백신' 검색 후 조회목록에서 해당 백신의 제조번호를 선택 후 '등록'해 상단 목록에 추가합니다.



Q 15. 출생신고 전 임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주민등록번호로 어떻게 통합관리 하나요?

A 15. 보호자의 주민번호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조회합니다. 신생아(주민번호없음)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활성화되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저장하면 주민번호 정보로 통합됩니다.

※ 임시 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중복 접종내역이 존재하는 경우는 통합이 불가하므로 중복등록내역을 우선 처리 후 통합

※ 신생아번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과(☎ 043-719-8397~8399)로 인적 및 접종정보 통합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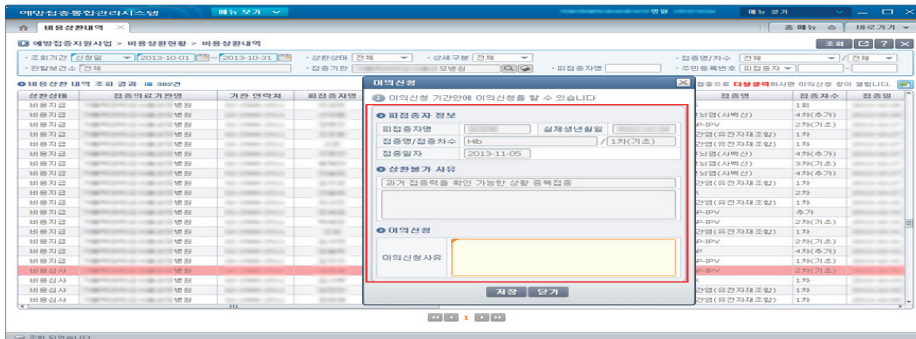


Q 16. 과거 접종력을 조회하였는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6.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기록이 등록된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B형간염 고위험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등)는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7.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7. ‘비용상환내역’ 메뉴에서 비용상환 신청건 중 상환불가로 심사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완료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Q 18. 의료기관이 폐업된 경우에는 과거 비용신청 된 내역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18. 폐업된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어 과거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을 요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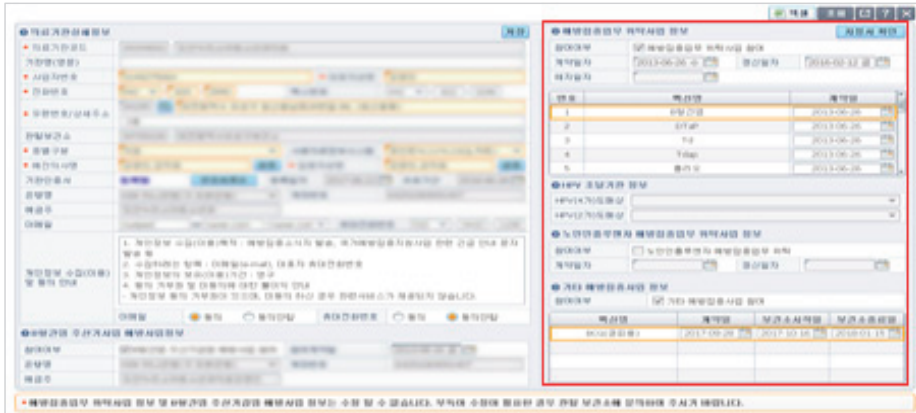
Q 19.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행정안전부 오류내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내역’에서 내역 조회 후 수정하고자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내용을 수정 후 ‘수정’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Q 20. 예방접종 위탁계약현황 등 기관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0. ‘질병보건통합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탁계약정보 외 기관정보(예진의사, 접종자, 전자서명용 기관인증서 등) 직접 수정 가능



Q 21. 비용상환 지급계좌번호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1.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지급계좌정보를 수정하려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통장사본을 새로 등록하고, 관할 보건소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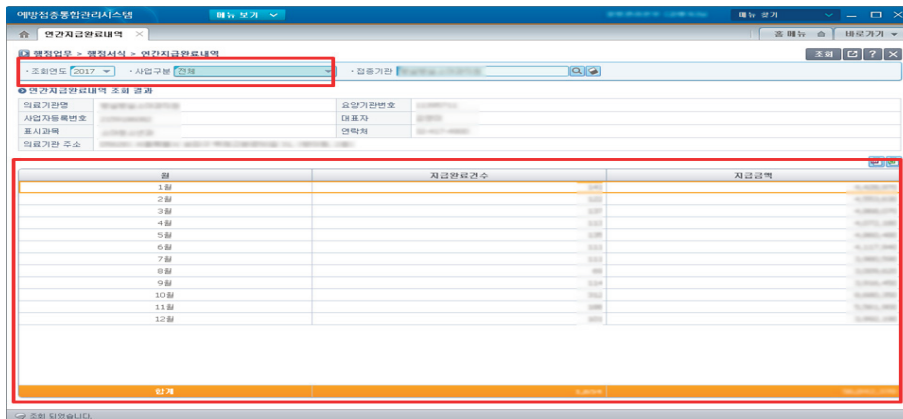


Q 22. 갑자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창이 열리지않습니다. 제어판에서 ‘XPLATFORM 9.2 Engine’을 삭제 후 수동설치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재설치해도 동일합니다.

A 22. ‘도구’ → ‘ActiveX 필터링’에 체크되어있는 경우 체크를 해지하고, ‘팝업차단’에서 팝업차단 끄기로 설정합니다. ‘호환성보기설정’ → ‘kdca.go.kr’ 추가한 후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설정 후에도 동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관리과로 문의바랍니다.

Q 23. 1년간 비용상환 지급받은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어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A 2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 → ‘연간지급완료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Q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등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A 1. 심평원에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기관인증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두 명 이상 중복 사용이 불가(즉, 하나의 공인인증서에 하나의 ID만 사용 가능) 하니 이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Q 2. 교육사이트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실명 인증 오류, 공인인증서 변경 등)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Help desk(☎1644-1407)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3. 요양기관번호는 동일하나 소속(요양)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변경 하나요?

A 3. 사업자등록증에 요양기관번호를 기재하여 질병관리청 시스템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로 팩스(Fax 043-719-7069)를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 (☎ 043-719-7059)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Q 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입니다.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수강종료 과정에서 '수료'로 확인되는데 관할 보건소에서는 병원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 누리집 오른쪽 상단의 '나의정보'를 클릭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IP 사업 교육은 의사 대상 교육이므로 간호사 등 기타 직군이 수료한 경우 미수료 또는 미인정으로 처리

Q 5. 의사선생님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본인의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후 동 ID로 의사분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사분이 교육 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 위탁계약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시행 의사 1인 이상이 반드시 본인의 ID로 회원가입 후, 직접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접종시행 의사가 아닌 분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6. 다음 강의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6.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① Explorer 버전이 10.이하일 경우 11.이상 업데이트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②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Google Chrome'인 경우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를 'explore'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Q 7.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고 진도율도 100%인데 '수강종료과정(수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A 7. 해당 과정의 '학습하기'를 클릭한 후 'e 강의실'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강의실 입장]버튼을 클릭합니다. 목차 화면 중, 마지막 회차의 강의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 로딩이 끝나면 동영상 강의창을 닫은 후, 'e 강의실' 화면을 닫으면 됩니다.

※ 수강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과로 문의

Q 8. 예방접종 교육과정 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A 8. PDF파일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포털사이트에서 PDF 뷰어(Adobe Reader)를 다운받아 설치하기 바랍니다.

Q 9. 교육수료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9.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수강과정' 메뉴의 '수강종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료증 출력 메뉴의 '수강종료 과정'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Q** 10.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되어 기존 수강내역을 현재 이전한 소속기관의 ID로 이관했습니다. NIP사업 계약을 위해 수료증을 출력했는데 이전 의료기관 주소로 출력됩니다.
- A** 10. 수료증의 의료기관명과 기관주소는 수료 당시의 기관명과 주소로 인쇄되며, 해당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한 경우는 보건소 교육시스템 관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의료기관에서 수료한 기본교육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Q** 11. 기존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수료했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니 해당 교육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A** 11.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교육을 수료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에 등록된 아이디가 달라 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로 문의하여 교육내역 이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반응 관리

Q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A 1. 이상반응 신고를 받게 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에서 신고합니다.

Q 2. 피해보상 신청 기준이 있나요?

A 2.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3.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결정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3.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할 보건소에 이를 보상 신청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신속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피해조사결과가 및 피해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질병관리청은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상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76, 8377)로 문의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보건소용)

- 창 간 : 2009년 1월
- 인 쇄 : 2020년 12월
- 발 행 : 2020년 12월
- 발 행 인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 편 집 인 : 의료안전예방국장 양동교
- 편집위원 : 예방접종관리과
- 자문위원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 편 집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주 소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팩 스 : 043) 719-8379
- 누 리 집 : <https://is.kdca.go.kr> nip01@korea.kr

ISBN : 978-89-6838-867-5(95510)



Vaccination for tomorrow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Tel. 043)719-8397~8399 Fax. 043)719-8379
<https://is.kdca.go.kr>

비매품/무료

95510



9 788968 388699

ISBN 978-89-6838-869-9 (PDF)